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74-10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ONTENTS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 1
-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13
-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우수 및 부적절사례) ····· 39

Ⅰ. 서 론 ····· 43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 45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 47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 49
4.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05~2009) ····· 51
5.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10~) ····· 54

Ⅱ. 2014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 61

1. 2014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방향 ····· 63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 65
3.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 106

Ⅲ.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 113
영역 1. 보육환경 ····· 115
영역 2. 운영관리 ····· 151
영역 3. 보육과정 ····· 188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 230
영역 5. 건강과 영양 ····· 259
영역 6. 안전 ····· 301
* 우수 및 부적절사례 ····· 337

Ⅳ. 부 록 ····· 343
부록 1. 「자체점검보고서」 안내 및 보고서 작성 요령 ····· 345
부록 2. 「자체점검보고서」 예시(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367
부록 3. 문서 자료집 ····· 395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신청단계 - 상시 자체점검	〈변경〉 1) 신청 단계 : 상시 자체점검, 신청 신청 단계에서는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자체점검 및 신청이 이루어진다.	1) 신청 단계 : 상시 자체점검, 신청 〈삭제〉 가. 상시 자체점검 ○ 자체점검 준비 및 실시(부록 참조)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우수한 영역과 미흡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실천해 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신청단계 - 신청	〈변경〉 나. 신청 ○ 시기 ---------- (중 략) ---------- ○ 진행 : 기수별 모집(2013년 신규인증 1~9기, 재인증 1~11기)	다. 신청 ○ 시기 ---------- (중 략) ---------- ○ 진행 : 기수별 모집(2014년 신규인증 1~10기, 재인증 1~12기)
1단계 - 기본사항 확인	○ 기본사항 • 필수항목 : 9항목 ---------- (하 략) ---------- 〈신설〉 • 기본항목 : 2항목 ---------- (하 략) ---------- 〈신설〉	○ 기본사항 • 필수항목 : 9항목 ---------- (중 략) ---------- ※ 어린이집·보육실의 설치기준에서 '인가 공간의 용도 무단 전용' 여부 확인 • 기본항목 : 2항목 ---------- (중 략) ---------- ※ 기본사항 항목은 [영유아보육법]과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함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단계 - 현장관찰 실시	〈변경〉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중 략) ---------- ※ 현장관찰일에 현원·출석(정원의 1/3 이상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석)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 취소됨 ---------- (중 략) ---------- ②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① 원아명단 ② 어린이집 실내외 배치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 (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놀이시설 설치검사 필증 등 ⑤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⑥ 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⑦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직무 및 승급교육대상자 확인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경력 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⑧ 평가인증지표 각 영역 개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문서 * ① ② ③은 제출하며 항목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예 : 재정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한다.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중 략) ---------- ※ 현장관찰일에 현원·출석(정원의 1/3 이상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석)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이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 예정(심의 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 (중 략) ---------- ②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① 원아명단(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별 출력)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 (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 (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놀이시설 설치검사 필증,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등 ⑤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⑥ 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⑦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확인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경력 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⑧ 평가인증지표 각 영역 개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문서 ※ ①, ②, ③은 제출하며 항목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예 : 재정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한다(99인 이하 어린이집 2개반, 100인이상 어린이집 3개반).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단계 - 현장관찰 실시	〈신설〉 ---------- (중 략) ---------- ◎ 현장관찰 후 상호확인 • 현장관찰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 확인한 후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서명한다. 〈신설〉 ※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 사례, 평가인증 관련 문서 구비 등 〈신설〉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찰반을 선정할 수 있음(영유아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 1반씩 포함됨) - 99인 이하 어린이집 : 무작위로 3개반 추첨 후, 원장이 2개반 최종 선정 - 100인 이상 어린이집 : 무작위로 4개반 추첨 후, 원장이 3개반 최종 선정 ---------- (중 략) ---------- ◎ 현장관찰 후 상호확인 • 현장관찰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 상호확인한 후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서명한다. ※ 작성완료 후 문서공유(복사본 제공) ※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 사례, 평가인증 관련 문서 구비 등 ※ 상호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심의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되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인증을 통과하더라도 추후 인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2단계 - 현장 관찰자	〈변경〉 • 1,2차 전형 합격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현장관찰자 교육(3차 전형)을 이수하여야만 최종 선발되어 현장관찰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 **현장관찰자 교육 참여 시, 또는 교육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장관찰자 활동을 포기하는 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교육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1, 2차 전형 합격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현장관찰자 교육(3차 전형)을 이수하여야만 최종 선발되어 현장관찰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 **현장관찰자 교육 참여 시, 또는 교육 수료 후 3개월 이내에 현장관찰자 활동을 포기하는 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교육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3단계
-
심의</td>
<td>〈신설〉

〈추가〉
<table><tr><td>자체 점검 보고서, 기본 사항 확인서, 현장 관찰 보고서 등</td><td>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table><tr><th>우수사례</th></tr><tr><td>• 1급 교사 비율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이상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또는 취사부 임용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39인 이하) 취사부 임용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td></tr></table></td></tr></table>
〈신설〉</td>
<td>◎ 심의기준
<table><tr><th>심의 자료</th><th>심의기준</th></tr><tr><td>(1단계) 심의 필수 확인 항목</td><td>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불인증” 결정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사례가 심의 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td></tr></table>
<table><tr><td>(2단계) 자체 점검 보고서, 기본 사항 확인서, 현장 관찰 보고서 등</td><td>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table><tr><th>우수사례</th></tr><tr><td>• 1급 교사 비율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또는 취사부 임용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39인 이하) 취사부 임용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td></tr></table></td></tr></table>
※ 각 기수별로 심의 종료~결과발표 직전 최종 심의를 실시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최종심의는 1단계만 실시)</td>
</tr>
<tr>
<td>3단계
-
부적절 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td>
<td>〈변경〉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 부적절사례가 발견된 어린이집에 대해 심의 기간까지 개선된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 참여취소 된다.</td>
<td>◎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 심의기간까지 부적절사례에 대한 개선 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3단계
-
부적절
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td><td>
<table>
<tr><th>업무주체</th><th>주요업무</th><th>상세내용</th></tr>
<tr><td>어린이집</td><td>현장관찰</td><td>• 부적절사례 발생</td></tr>
<tr><td>시·군·구</td><td>부적절
사례
개선 확인</td><td>• 부적절사례 확인 및 개선결과 시·도 통보
• 부적절사례 미개선시 참여취소 사전통보 및 시·도 통보</td></tr>
<tr><td>시·도</td><td>부적절
사례
개선 결과
통보</td><td>• 부적절사례 개선결과 최종 확인 및 통보</td></tr>
<tr><td>보건
복지부
(한국보육
진흥원)</td><td>부적절
사례
개선결과
확인</td><td>• 부적절사례 개선결과 확인
• 참여취소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td></tr>
</table>
</td><td>
<table>
<tr><th>업무주체</th><th>주요업무</th><th>상세내용</th></tr>
<tr><td>어린이집</td><td>현장관찰</td><td>• 부적절사례 발생</td></tr>
<tr><td>시·군·구</td><td>부적절
사례
개선 확인</td><td>• 부적절사례 확인 및 개선 결과 시·도 통보
• 부적절사례 미개선 어린이집 명단 시·도 통보</td></tr>
<tr><td>시·도</td><td>부적절
사례
개선 결과
통보</td><td>• 부적절사례 개선 결과 최종 확인 및 통보</td></tr>
<tr><td>보건
복지부
(한국보육
진흥원)</td><td>부적절
사례
개선 결과
확인</td><td>• 부적절사례 개선 결과 확인 (단, 부적절사례 미개선 시 심의 회부 등 관련 조치</td></tr>
</table>
</td></tr>
<tr><td>3단계
-
인증결정</td><td>〈변경〉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인증과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 (중 략) ----------
• 불 인 증 :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설〉</td><td>◎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심의 필수확인 항목” 발생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인증과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 (중 략) ----------
• 불 인 증 : 신규인증 재참여 및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불인증
※ 다만, 해당 시설이 여타 “심의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참여변동사항 중 ① 소재지 변경 또는 ② 정원·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③ 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될 때에는 시설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 “5) 재참여 관리”의 절차 및 수수료를 따름(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어린이집)</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3단계
-
인증결정</td><td>
<table>
<tr><th>인증
결과</th><th>총 점</th><th>영역별 점수</th></tr>
<tr><td>인 증</td><td>기준 점수 이상</td><td>기준 점수 이상</td></tr>
<tr><td rowspan="2">인증유보
(신규인증)
불인증
(재인증)</td><td>기준 점수 이상</td><td>기준 점수 미달</td></tr>
<tr><td>기준 점수 미달</td><td>기준 점수 이상</td></tr>
<tr><td>기준 점수 미달</td><td>기준 점수 미달</td></tr>
</table>
〈신설〉
</td><td>
<u>* 재인증 참여과정 중(참여확정월 이후~결과발표 직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 실시 기준이 적용됨</u>
<table>
<tr><th>인증
결과</th><th>총 점</th><th>영역별 점수</th></tr>
<tr><td>인 증</td><td>기준 점수 이상</td><td>기준 점수 이상</td></tr>
<tr><td rowspan="2">인증유보
(신규인증)
불인증
(재인증)</td><td>기준 점수 이상</td><td>기준 점수 미달</td></tr>
<tr><td>기준 점수 미달</td><td>기준 점수 이상</td></tr>
<tr><td>기준 점수 미달</td><td>기준 점수 미달</td></tr>
</table>
<u>※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인증결과가 인증유보인 경우 재참여 과정에 참여 가능함</u>
</td></tr>
<tr><td>3단계
-
인증결과
발표</td><td>
〈변경〉
●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 인증결과 발표 전 참여어린이집에서는 <u>질문지를</u> 작성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방법
●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인증 결과 확인 ⇨ [질문지 작성] 클릭
● 어린이집용 질문지는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어린이집용 질문지 입력을 완료해야 인증결과 발표 시 인증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경〉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 <u>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재인증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정해진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u>
</td><td>
●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 인증결과 발표 전 참여어린이집에서는 <u>질문지 및 참여변동사항 확인서를</u> 작성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방법
●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인증 결과 확인 ⇨ [질문지 작성] 클릭
● 어린이집용 질문지는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어린이집용 <u>질문지, 참여변동사항 확인서 입력을</u> 완료해야 인증결과 발표 시 인증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 <u>인증은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매월 1일 → 15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참여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한다('11~13년 인증어린이집 한함).</u>
</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단계 - 인증결과 발표	〈신설〉 ◎ 인증서 및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해당 인증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부한다. 〈신설〉	※ 재인증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정해진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재인증 재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래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재인증 재평가의 경우, 재평가 과정 진행 중에는 인증이 유효함) ◎ 인증서 및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해당 인증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부한다. ※ 2014년 참여기수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발급된 현판 사용)
재참여 관리	〈변경〉 ◎ 재관찰/재심의 •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신설〉 •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를 재확인	◎ 재관찰/재심의 •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관찰이 진행된다. ※ 단, 참여변동사항이 발생(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수사례·부적절사례를 재확인한다.
참여 변동 사항 확인	〈신설〉 6) 참여취소 가.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 ①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참여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6) 참여변동사항 확인 가. 인증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여 변동 사항 확인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 〈삭제〉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좌동〉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아래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참여 취소)	• 아동학대 사실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① 〈좌동〉 ② 〈좌동〉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삭제〉 : 기존 인증이 취소되므로 재인증 참여 과정은 자동으로 중단됨
	②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삭제〉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정원 또는 유형이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 되어 다른 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 정원 또는 유형이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 되어 다른 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삭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여 변동 사항 확인	③ 평가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 사례가 심의 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	〈삭제〉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이동〉 : "심의 필수확인 항목"으로 이동
	④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
	〈신설〉	나.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한다. •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불인증"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의 경우 전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참여
변동
사항
확인</td>
<td>〈변경〉
나. 참여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참여취소 확정 및 조치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참여취소 사항을 통보

〈그림 II-5〉 참여취소 절차 업무 흐름도

◎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행정처분 범위
<table>
<tr><th>구분</th><th>참여확정</th><th>참여과정 중</th><th>인증 이후</th></tr>
<tr><td>필수항목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 가입,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td><td>•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참여가능</td><td>• 필수항목미 준수 사례 발견 시 참여취소</td><td>-</td></tr>
</table>
</td>
<td>다.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참여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참여 어린이집
-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변동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심의 종료 이후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참여확정일 ~ 심의 실시 전까지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기수별 결과발표 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변동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반영

〈삭제〉

◎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행정처분 범위
<table>
<tr><th>구분</th><th>참여확정</th><th>참여과정 중</th><th>인증 이후</th></tr>
<tr><td>필수항목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 가입,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td><td>〈좌동〉</td><td>• 필수항목 미 준수 사례 발견 시 심의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참여 변동 사항 확인</td><td>
<table>
<tr><th>구분</th><th>참여확정</th><th>참여과정 중</th><th>인증 이후</th></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반환명령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 참여 가능</td><td>• 발생 시 반환명령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취소</td><td>• 발생 시 반환명령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 가능</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취소</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과징금 납부를 완료한 어린이집 참여 가능</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취소</td><td>-</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6조</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 가능</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취소</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7조</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 가능</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취소</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8조</td><td>• 행정처분 시 행일부터 1년 경과 후 참여 가능</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취소</td><td>• 발생 시 행정처분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참여확정</th><th>참여과정 중</th><th>인증 이후</th></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td><td>〈좌동〉</td><td>•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좌동〉</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td><td>〈좌동〉</td><td>•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좌동〉</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td><td>〈좌동〉</td><td>•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6조</td><td>〈좌동〉</td><td>•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좌동〉</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7조</td><td>〈좌동〉</td><td>•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좌동〉</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8조</td><td>〈좌동〉</td><td>•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좌동〉</td></tr>
</table>
</td></tr>
<tr><td>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td><td>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인증유지 가능</td><td>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좌동〉</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신설〉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인증 취소) 〈변경〉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의 경우, 전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사유에서 제외 〈좌동〉 ① 〈좌동〉 ②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추후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는 해당안됨) ③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실시 ---------- (중 략) ---------- •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재인증 과정에 참여중이면서 재인증 현장관찰을 받기 이전인 경우에는 확인방문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재인증 현장관찰 결과로 갈음한다. 〈신설〉	◎ 확인방문 실시 ---------- (중 략) ---------- 〈삭제〉 • 확인방문은 현장관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 재인증 참여과정 중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보육환경			
평정 기준	〈변경〉 ※ 보육환경 영역은 모든 보육실과 해당 공간이 평정 대상이 되며 이때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점수를 평정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을 인가 공간 내에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미흡한 수준'으로 평정된다. ※ 보육환경 영역의 평가는 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의 추가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설〉	◎ 모든 보육실 및 해당 공간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인가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실, 교사실, 자료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미흡한 수준'으로 평정한다. ◎ '보육활동 자료' 평가 시, 활동 자료의 다양성 및 충분성은 각 흥미영역에 구비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정한다(예 : 음률영역에 비치된 자료는 음률활동 자료로 인정).	내용 보완
장 1-1 활동영역의 배치	〈변경〉 • 장애유형에 따라 뇌병변 장애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조 장비들이 많아 보육실이 협소하거나, 발달장애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각 보육실 내에 모든 활동영역을 구성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전체 어린이집에 걸쳐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개별 발달 수준, 특성에 적합하게 활동영역을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장애유형에 따라 뇌병변 장애 및 발달장애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조 장비들이 많아 보육실이 협소하거나 각 보육실내에 모든 활동영역을 구성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전체 어린이집에 걸쳐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개별 발달 수준, 특성에 적합하게 활동영역을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내용 보완
장 1-3 옥외 놀이터와 놀이기구	• 인근 놀이터의 인정범위 - 놀이터 관리 주체가 있는 인근 놀이터 : 관리 주체의 사용승낙서 구비 〈신설〉	• 인근놀이터의 인정범위 - 놀이터 관리주체가 있는 인근놀이터 :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구비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확인 안 함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1-5 신체활동 자료	〈신설〉	※ 소근육활동 자료는 탐색영역 또는 수·조작영역에 비치 가능	내용 보완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 어린이집 내에 교사용 책상이나 교사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한다. 이 때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책상은 교사 개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신설〉 〈변경〉 ★ 미흡한 수준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에 교재, 교구 등을 보관하는 경우 〈신설〉	• 어린이집 내에 교사용 책상이나 교사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한다. 이때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책상은 교사 개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 교사용 책상 또는 개인 사물함은 교사가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마련하여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미흡한 수준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 1칸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에 교재, 교구 등을 보관하는 경우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
2. 운영관리			
평정 기준	〈변경〉 ※ 운영관리 영역은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하며, 이때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점수를 평정한다. ※ 운영관리 영역의 평가는 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의 추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내용 보완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 생활기록부에는 신체발달상황, 전염병 예방접종 기록이 누적 관리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 생활기록부에는 신체발달상황, 전염병 예방접종 기록이 누적 관리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생활기록부는 법정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단, 필요에 의해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은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가능하나, 법정 서식에 있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로 인정 안 됨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 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 어린이집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 어린이집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례회의 진행 시 모든 흥미영역에서의 놀이나 활동, 실내의 공간, 일과의 모든 시간에서 일부 장애 영유아가 나타내는 반응이나 행동을 고루 포함해야 함	
장 2-7 보육 교직원의 교육	•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재교육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이 언제 재교육을 받는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신설〉	•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재교육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이 언제 재교육을 받는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 모든 보육교직원이 재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내용 보완
장 2-9 어린이 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변경〉 •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가정통신문, 게시판, 전화,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있다. 이때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을 포함하여 이 중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경〉 • 어린이집에서는 연 2회 이상 일대일 부모상담, 전화상담, 수시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원아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가정통신문, 게시판, 전화,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있다. 이때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을 포함하여 이 중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개별면담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능한 많은 부모들이 개별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보완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2-9 어린이 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신설〉	※ 현장관찰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계획은 포함되지 않음) 예) 8월이 현장관찰월인 경우, 작년도 8월~당해연도 7월의 실시기록 확인	
	〈변경〉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적인 방법(알림장,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등)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연 2회 이상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여 장애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적인 방법(알림장,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등)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연 2회 이상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여 장애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부모 개별면담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기준 변경
	〈신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실시하나, 면담 내용에 개별 장애 영유아 발달 상황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실시하나, 면담 내용에 개별 장애 영유아 발달 상황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부모 개별면담에 전체 원아 부모의 30% 미만이 참석한 경우 등	세부 사례 보완
	〈신설〉	궁금해요 **Q. 스마트 알림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두 출력해두어야 하나요?** A. 본 항목에서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평정하므로 스마트 알림장은 별도의 문서 출력 없이 알림장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2-9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신설〉	궁금해요 **Q. 스마트 알림장에 대화수첩과 가정통신문 기능이 있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정 가능한가요?** A. 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 알림장의 기능 및 내용에 따라 평정됩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2-10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 어린이집의 여러 행사나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한다. 〈신설〉	• 어린이집의 여러 행사나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한다. ※ 현장관찰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계획은 포함되지 않음) 예) 8월이 현장관찰월인 경우, 작년도 8월~당해연도 7월의 실시기록 확인	내용 보완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배우고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관한 정보(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개최 일정, 비용 등)를 안내하여 희망하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배우고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관한 정보(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개최 일정, 비용 등)를 안내하여 희망하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정보 안내 뿐 아니라 참여 의사 등을 파악(수요조사)하여 부모가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내용 보완
장 2-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변경〉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기준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2-11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변경〉 ★★★ 우수한 수준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가 부모에게 적절하게 안내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설〉	★★★ 우수한 수준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가 부모에게 적절하게 안내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기준 변경
	〈변경〉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나 부모에게 안내되지 않는 경우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가 연 1회만 이루어진 경우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의가 개최되나 그 결과가 부모에게 안내되지 않는 경우	기준 변경
3. 보육과정			
평정 기준	〈변경〉 ※ 보육과정 영역은 선정된 반의 관찰일 보육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 관찰월 3개월 전부터의 문서를 전체 반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이때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점수를 평정한다. ※ 보육과정 영역의 평가는 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의 추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선정된 반의 관찰 당일 보육활동을 직접 관찰한다. ◎ 문서는 현장관찰월 3개월 전부터의 현장관찰월까지 전체 반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3-1 보육 계획안의 수립	〈변경〉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에 활동 목표가 없는 경우 - 월별 주제만 기록되어 있고 활동 계획은 없는 경우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삭제〉 • 월별 주제만 기록되어 있고 활동 계획은 없는 경우	세부 사례 보완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신설〉	궁금해요 **Q. 일일보육계획안을 보육일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활동에 대해 실행 및 평가를 기록해야 하나요?** A. 일일보육계획안을 보육일지로 사용하는 경우, 일과 진행 후 일일 보육내용에 대한 실행 및 평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행 및 평가는 주요 활동 및 일과 진행 중 나타난 특별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단, 계획된 활동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부록 참조	세부 사례 보완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변경〉 • 오후시간대에 24개월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특별활동이 실시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 영유아에게 별도의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오후시간대는 낮잠을 자고난 시간 이후임(단,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는 점심시간 이후도 가능)	• 오후시간대에 24개월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특별활동이 실시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 영유아에게 별도의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오후시간대 :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신설〉	궁금해요 **Q.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 비용을 수납하지 않으면 부모동의서가 없어도 되나요?** A. 특별활동 비용을 학부모가 납부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였을지라도,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한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4. 상호작용과 교수법			
평정 기준	〈변경〉 ※ 선정된 관찰반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 전체를 통해 평정하게 되고 점수 평정 시 낮은 수준의 보육실(내용, 대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이 욕을 하거나 체벌을 주고 벌을 세우는 등 치명적 사례가 관찰될 경우에는 관찰반이 아니더라도 평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의 평가는 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의 추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선정된 관찰반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 전체를 통해 평정한다. ※ 단, 보육교직원의 욕설, 체벌, 벌세우기, 타임아웃 등 치명적 사례가 관찰될 경우에는 관찰반이 아니더라도 평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의 보육실(내용, 대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내용 보완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변경〉 • 종일반 장애 영유아는 일과에 반드시 낮잠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낮잠 시간은 일과 중에 실행하며 기록하여 관리한다.	• 종일반 장애 영유아에게는 일과 중에 반드시 낮잠 시간을 마련하여 적절한 수면을 포함한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낮잠 시간은 일과 중에 실행하며 기록하여 관리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신설〉	• 영유아의 생체리듬은 오전 9시부터 상승하다가 11시가 지나게 되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효율적인 오후 활동과 하루 일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낮잠이 필요하다(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2002).	
	〈변경〉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에게 낮잠 시간을 매일 마련하여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그들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종일반 장애 영유아에게 낮잠 시간을 매일 마련하여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그들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세부 사례 보완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의 낮잠 시간을 매일 마련하고 있지만,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거나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한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종일반 장애 영유아의 낮잠 시간을 매일 마련하고 있지만,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거나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한 경우이다.	내용 보완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낮잠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한 낮잠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낮잠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인데도 낮잠 시간을 일과에 매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낮잠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 중 일부 장애 영유아가 낮잠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낮잠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모두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한 낮잠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낮잠이 필요한 종일반 장애 영유아인데도 낮잠 시간을 일과에 매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낮잠이 필요한 종일반 장애 영유아 중 일부 장애 영유아에게 낮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신설〉	궁금해요 **Q. 일부 종일반 장애 영유아의 경우,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종일반 장애 영유아에게 낮잠(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반드시 낮잠을 자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장애 영유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4-3 자연 스러운 배변 경험	〈신설〉	궁금해요 **Q. 장애 영유아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교사가 따라가서 도와줘야 하나요?** A. 장애 영유아가 화장실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교사가 매번 함께 가기 힘들다면, 장애 영유아가 화장실 사용 후 물 내리기, 손 씻기, 옷 입기 등을 바르게 하였는지 교사가 확인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신설〉	궁금해요 **Q.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에게 꼭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는 표현에는 관심 기울이기, 눈 맞추기, 의사 존중하기, 온화한 표정으로 맞이하기 등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의 높임이 아니라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충분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4-8 자유 놀이에 교사 참여	★ 미흡한 수준 • 교사가 자유놀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 등 〈신설〉	★ 미흡한 수준 • 교사가 자유놀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 • 일과 중 자유놀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세부 사례 보완
5. 건강과 영양			
평정 기준	〈변경〉 ※ 건강과 영양 영역은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하며, 이때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점수를 평정한다. ※ 건강과 영양 영역의 평가는 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의 추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인가공간이 아닌 장소에 조리실,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미흡한 수준'으로 평정한다.	내용 보완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변경〉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보육실(예 : 바닥, 교구장, 책상, 의자 등) 중 한 반이라도 청결하지 못한 경우 〈신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보육실 중 한 반이라도 청결하지 못한 경우 - 바닥이 먼지뭉치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교구바구니가 먼지와 찌든 때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천정과 벽면이 거미줄과 먼지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창틀과 벽걸이형 선풍기가 먼지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않은 경우 등	세부 사례 보완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변경〉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실내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가 탁한 경우 • 썬팅지, 커튼 등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 자연채광이 미흡한 경우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실내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가 탁한 경우 • 썬팅지(한지), 커튼(블라인드) 등이 창문을 절반 이상 가리고 있어 자연채광이 미흡한 경우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 필요한 영역에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설〉	• 필요한 영역에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 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장 5-3 놀잇감의 청결	〈변경〉 • 특히 장애 영유아가 입에 넣기 쉬운 놀잇감은 청결하지 못하면 구강염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매일 세척한다.	• 특히 장애 영유아는 놀잇감을 입으로 탐색하려는 발달 특성이 있으므로 더욱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놀잇감이 청결하지 못하면 구강염 등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입에 넣고 빨기 쉬운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하도록 한다.	내용 보완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변경〉 • 기저귀를 가는 공간에는 기저귀, 옷가지, 물휴지, 일회용 위생장갑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 사용한 기저귀나 일회용 위생 장갑,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평정기준: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비품 구비, 기저귀 가는 공간의 청결, 기저귀 갈이용 비품의 구비 및 사용 후 처리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신설〉	• 기저귀를 가는 공간에는 기저귀, 옷가지, 물휴지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기저귀 갈이 시, 일회용 위생장갑 사용보다 손 씻기(또는 손세정제 사용) 권장 •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평정기준: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변기 사용 후 신속한 후속처리 포함), 비품 구비, 기저귀 가는 공간의 청결, 기저귀 갈이용 비품의 구비 및 사용 후 처리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여러 명의 장애 영유아가 연달아 변기를 사용한 후 한꺼번에 물을 내리는 경우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신설〉	궁금해요 **Q. 배변훈련 단계의 장애 영유아가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이때에도 기저귀 갈이대에 눕혀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나요?** A.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서서 기저귀 갈이를 해도 무방합니다만 화장실이나 기저귀 갈이대 등 지정된 공간에서 기저귀 갈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공간이 아닌 일반 공간에서 기저귀 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결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흡한 수준'으로 평정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5-5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 조리실 바닥, 벽 및 천장 등 전반적인 조리실 공간에 대한 청결관리 및 환기가 매일 잘 이루어진다. 〈신설〉	• 조리실 바닥, 벽 및 천장 등 전반적인 조리실 공간에 대한 청결관리 및 환기가 매일 잘 이루어진다.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조리실은 평정 대상에 포함함	기준 변경
	〈변경〉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조리실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과 위생관리에서 세 가지 이상이 미흡한 경우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인가 공간 내에 조리실이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조리실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과 위생관리에서 세 가지 이상이 미흡한 경우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인가 공간 내에 조리실이 없거나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어린이집에서 바람직한 식자재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모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소비기한, 식품구입날짜 등을 표기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한다. ※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음식(수입식품 포함) 〈신설〉 〈변경〉 ★ 미흡한 수준 ---------- (중 략) ---------- 또는 어린이집의 인가 공간 내에 조리실이 없어서(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식자재나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에서 바람직한 식자재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모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소비기한, 식품구입날짜 등을 표기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한다. ※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음식(수입식품 포함)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예 : 공공기관용, 사회복지관용, 유치원용 등)는 평정 대상에 포함됨 ★ 미흡한 수준 ---------- (중 략) ---------- 또는 어린이집의 인가 공간 내에 조리실이 없거나(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관찰이 불가능하여 식자재나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준 변경 기준 변경 세부 사례 보완
장 5-7 장애 영유아와 보육 교사의 청결유지	〈신설〉	궁금해요 **Q. 보육실과 화장실의 거리가 멀어 장애 영유아들의 손 씻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손 씻기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점심식사 및 간식 전, 실외활동 후, 화장실 사용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5-7 장애 영유아와 보육 교사의 청결유지	〈신설〉	궁금해요 **Q. 여러 명의 장애 영유아에게 연속하여 기저귀 갈이를 하거나 약을 먹일 때 매번 손을 씻어야 하나요?** A. 장애 영유아에게 투약하기 전, 기저귀 갈이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매번 손을 씻어야 하며, 손 씻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손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손세정제를 사용할 경우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신설〉	궁금해요 **Q. 스마트 알림장을 이용하여 부모님께 투약의뢰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관찰을 위해 모두 출력해두어야 하나요?** A. 스마트 알림장을 이용하여 투약의뢰 및 보고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PC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5-11 장애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건강관리	•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한다. - 장애 영유아건강검진 시기와 관련하여 재원아의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별 작년에 실시한 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관찰일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입소 원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한다. 〈삭제〉	기준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5-11 장애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건강관리	〈신설〉	- 모든 원아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확인 서류를 구비하도록 한다. ※ 신규입소 원아의 경우에도 반드시 건강검진 확인 서류가 필요함(건강검진 예정 서류는 포함되지 않음)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모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에게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항목에 준하여 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안내(예 : 가정통신문 등)하는 경우이다.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모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삭제〉	기준 변경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일부 보육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 건강검진 서류가 전체 영유아의 절반 미만으로 누락된 경우 •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장애 영유아의 부모에게 장애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항목에 준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등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일부 보육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 건강검진 서류가 전체 영유아의 절반 미만으로 누락된 경우 등 〈삭제〉	기준 변경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변경〉 • 사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식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식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 기록은 각 원의 상황에 맞게 작성(평가인증 문서자료집 참조) 〈신설〉 〈변경〉 ★★★ 우수한 수준 ---------- (중 략) ---------- 또한 급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및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 기록은 각 원의 상황에 맞게 작성(부록 참조) ※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 제공 또는 수유 시에도 제공 기록 필요 ★★★ 우수한 수준 ---------- (중 략) ---------- 또한 급식(이유식, 수유 포함)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변경〉 ※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된 간식명(과일 및 채소명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 〈신설〉 • 간식은 장애 영유아의 신체적 요구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회 제공해야 한다. 〈신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중 략) ---------- 또한 간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신설〉	※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및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된 간식명(과일 및 채소명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 ※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의 경우에도 제공 기록 필요 • 간식은 장애 영유아의 신체적 요구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회 제공해야 한다. ※ 어린이집 일과 운영(예 : 등하원시간)으로 인해 다수 장애 영유아들이 간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간식시간 조정 등의 조치 필요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중 략) ---------- 또한 간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신설〉 • 간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	- 제공된 과일 또는 채소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예 : 제철 과일, 야채스틱 등) 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어린이집 일과 운영(예 : 등하원시간 등)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장애 영유아가 간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등 • 간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	
6. 안전			
평정 기준	〈변경〉 ※ 안전 영역은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하며, 이때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점수를 평정한다. ※ 안전 영역의 평가는 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의 추가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내용 보완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신설〉 〈변경〉 •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창문의 하단이 낮거나 창문 아래에 장애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중 략) ---------- • 보육실 내 설치된 정수기의 온수는 장애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장애 영유아가 하루일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므로 보다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창문의 하단이 120cm 이하로 낮거나, 창문 아래에 책상, 교구장 등 장애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중 략) ---------- • 보육실 내 설치된 정수기의 온수는 장애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 보완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신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영역에 전선이나 줄이 늘어져 있는 경우 〈변경〉 • ○○영역의 장애 영유아 손닿는 전기 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 • 블라인드 줄이 장애 영유아의 목에 감길 정도로 늘어진 경우 • 커튼 줄이 장애 영유아의 발이 걸려 넘어질 정도로 늘어진 경우 • 전기콘센트가 깨져 날카로운 경우 등 〈신설〉	• 보육실 내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온수는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예 : 온수의 양 또는 온도 조절, 잠금장치 설치 등) 등을 통해 조절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삭제〉 • ○○영역의 장애 영유아 손이 닿는 전기콘센트(또는 이동식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 〈삭제〉 • 전기콘센트(또는 이동식콘센트)가 깨져 날카로운 경우 • 블라인드 줄이 장애 영유아의 목에 감길 정도로 늘어진 경우 • ○○영역 교구장 위에 카세트 전선이 50cm 이상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잡아당겨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영역 바닥에 이동식콘센트 전선이 50cm 이상 길게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풍기 줄이 고정되지 않고 벽면에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잡아당길 위험이 있는 경우 • (2층 이상) 지면으로부터 120cm 이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창문 보호대가 없는 경우 • 책장, 교구장 등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 보육실 내 설치된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나 안전 조치가 없는 경우 등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6-2 실내 시설의 안전관리	〈변경〉 •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창문의 하단이 낮거나 창문 아래에 장애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창문의 하단이 120cm 이하로 낮거나, 창문 아래에 책상, 교구장 등 장애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내용 보완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내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는 경우이다. ---------- (하 략) ---------- 〈신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내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는 경우이다. ---------- (중 략) ---------- • 어린이집 현관문의 개폐관리가 미흡한 경우 • 장애 영유아 손이 닿는 전기콘센트(또는 이동식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 • 전기콘센트(또는 이동식콘센트)가 깨져 날카로운 경우 • 블라인드 줄이 장애 영유아의 목에 감길 정도로 늘어진 경우 • 교구장 위에 카세트 전선이 50cm 이상 길게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잡아당겨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바닥에 이동식콘센트 전선이 50cm 이상 길게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풍기 줄이 고정되지 않고 벽면에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잡아당길 위험이 있는 경우 • (2층 이상) 지면으로부터 120cm 이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창문 보호대가 없는 경우 • 책장, 교구장 등의 모서리가 날카로운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6-2 실내 시설의 안전관리		경우 • 보육실 문(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없는 경우 • 문턱이 돌출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화장실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나 안전 조치가 없는 경우 등	
장 6-3 실외 시설의 안전관리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외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하 략) ---------- 〈신설〉 〈신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외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중 략) ---------- • 옥외놀이터의 미끄럼틀이 파손된 경우 • 울타리의 끝이 갈라져 날카로운 경우 • 나무 재질의 그네 기둥이 벗겨져 가시가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 • 옥외놀이터의 고무호스가 장애 영유아의 발이 걸려 넘어질 정도로 길게 늘어진 경우 • 장애 영유아 접근이 가능한 곳에 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어린이집 실외놀이터에 장미를 심으면 안되나요?** A. 장미, 탱자나무 등 가시가 있는 식물은 장애 영유아의 손이나 눈에 닿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미 등이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장애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세부 사례 보완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신설〉 • 장애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에 있는 모든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중 략) ---------- 〈신설〉 • 실내외 놀잇감에 파손 등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후 즉시 수리한다.	• 놀잇감은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에 몰입하거나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장애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에 있는 모든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중 략) ---------- •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도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실내외 놀잇감에 파손 등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후 즉시 수리한다.	내용 보완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 실내외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신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 실내외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역할영역의 음식모형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 쌓기영역의 플라스틱 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 모형 자동차의 바퀴가 빠져 철심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조개껍데기가 깨져 날카로운 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실외놀이터의 탈것(자동차) 손잡이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 실외놀이터의 모래놀이용 삽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 놀잇감을 넣어둔 바구니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등	세부 사례 보완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장애 영유아의 손닿는 곳에 성인용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삭제〉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 장애 영유아 손닿는 서랍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등 〈신설〉	• 사물함 위 장애 영유아 손이 닿는 곳에 투약용 약이 놓여 있는 경우 • 교사용 장 안에 교사용 가위, 칼이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등 • 장애 영아반 탐색영역 교구장에 놓여 있는 화분 안에 3.5cm 이하의 돌멩이가 들어있는 경우 • 화장실에 장애 영유아 손이 닿는 곳에 대걸레, 고무장갑이 놓여있는 경우 • 옥외놀이터 화단에 성인용 모종삽이 놓여 있는 경우 등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신설〉	궁금해요 **Q. 장애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 중 「장애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방법」이 왜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 시 어린이집과 지정된 보호자 간에 영유아의 인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백한 인계절차와 관련 규칙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계절차는 「장애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 "통학차량 이용 장애 영유아"의 경우 - 차량교사는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기다리는 보호자에 직접 인계한다.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 앞이라도 장애 영유아를 혼자 내리지 않는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궁금해요 • "보호자가 직접 등하원 시키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 등하원 시 장애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어린이집 교사가 서로에게 직접 인계한다.	
장 6-8 어린이집 의 안전한 차량 운행	•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차량 내 비치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가 관리 대상임	내용 보완
	•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에 따라 보호장구를 필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설〉	•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에 따라 보호장구를 필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준 변경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탑승하는 장애 영아 수만큼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 〈신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탑승하는 장애 영아 수만큼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 장애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어 있으나, 일부 제품이 장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기준 변경
	〈변경〉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차량의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차량에 운전자 외에 다른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차량의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차량에 운전자 외에 다른	기준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성인이 동승하지 않거나, 장애 영아가 탑승하지만 영아용 보호장구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차량을 운행하나 현장관찰 시 차량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신설〉	성인이 동승하지 않거나, 장애 영아가 탑승하지만 영아용 보호장구가 전혀 없는 경우(모든 보호장구가 장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또는 차량을 운행하나 현장관찰 시 차량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궁금해요 **Q. 등하원용 차량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등하원용 차량은 등하원용으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소유 차량, 지입 및 대여 차량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행하지는 않지만 관찰 당일 또는 부모가 원할 경우만 운행하는 차량도 관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6-9 비상 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소화기 내용물이 굳어 있거나,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비상구를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설〉	•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삭제〉 - 소화기 · 각 층마다 최소 1개씩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한다. · 소방약제가 충분하고,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한다. ※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가 관리 대상임 - 유도등 · 비상 시 어린이집 내 모든 유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장 6-9 비상 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 유도표지는 유도등에 포함되지 않음 - 비상구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 등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경〉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비상구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주출입구, 비상구) 중 일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 비상구나 비상대피로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주출입구, 비상구) 중 일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세부 사례 보완
	〈신설〉	• 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에 유도표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설〉	궁금해요 **Q. 매달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도, 비상 시 대피요령이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A. 대피요령은 화재, 재난, 응급 상황 등 비상사태 전반을 대비한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방(대피)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대피 과정의 일부 사례일 뿐 대피 요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 시 대피요령은 별도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장 6-10 안전 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변경〉 • 어린이집에서는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소방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내용 보완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우수 및 부적절사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우수사례			
1급 교사 비율	- 대상 : 종일제 보육교사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기준시점 : 현장관찰 해당 월의 시작일~현장관찰일까지 지속적인 근무여부 ※ 출산휴가를 비롯한 출산 관련 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 〈신설〉 ※ 원장이 교사 겸직(담임)할 경우, 1급 보육교사로 인정(단, 가정어린이집에 한함) ※ 휴원기간 동안의 경력, 재입사 전의 현 어린이집 근무경력 제외 ※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원장이 교사 겸직(담임)할 경우 1급 보육교사로 인정(단, 가정어린이집에 한함)	- 대상 : 종일제 보육교사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기준시점 : 현장관찰 해당 월의 시작일~현장관찰일까지 지속적인 근무여부 〈삭제〉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는 대상에서 제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특수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 ※ 산전 후 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담임)할 경우, 1급 보육교사로 인정 〈삭제〉 ※ 휴원기간 동안의 경력, 재입사 전의 현 어린이집 근무경력 제외 〈삭제〉	내용 보완
1년 이상 근무 교사가 전체 교사의 70% 이상	- 대상 : 종일제 보육교사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경력산정시점 : 현장관찰월 기준 ※ 출산휴가를 비롯한 출산 관련 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 〈신설〉 ※ 원장이 교사 겸직(담임)할 경우, 1년 이상 교사로 인정(단, 가정어린이집에 한함)	- 대상 : 종일제 보육교사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경력산정시점 : 현장관찰월 기준 〈삭제〉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는 대상에서 제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특수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 ※ 산전 후 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담임)할 경우, 1년 이상 보육교사로 인정 〈삭제〉	내용 보완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놀이시설
설치검사
(40인
이상)</td><td>〈변경〉
- 증빙자료 :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정기 시설 검사)
- 놀이시설 설치검사 항목 : 고정식 놀이기구, 모래놀이와 같이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포함
※ 대체놀이터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재정을 부담하여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인정

〈신설〉</td><td>- 증빙자료 :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정기 시설 검사)
- 놀이시설 설치검사 항목 : 고정식 놀이기구, 모래놀이와 같이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포함
※ 대체놀이터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관리주체가 되어 재정을 부담하여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인정

여기서 잠깐!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후 어린이집 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변경된 어린이집 명으로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을 재발급받아 준비하기 바랍니다.</td><td>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td></tr>
<tr><td>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운영</td><td>〈신설〉</td><td>- 대상 :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맞벌이 부모
- 증빙자료 : 부와 모 모두의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맞벌이 부모 명단
- 기준시점 :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 ~ 현장관찰일까지
- 확인항목 : 체크리스트 4항목 중 3항목 이상 해당 시 인정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r>
<tr><td>① 보육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를 받은 경험 없음</td><td>부모 확인</td></tr>
<tr><td>② 토요일 또는 휴일 보육 실시 여부</td><td>부모·문서 확인</td></tr>
<tr><td>③ 17시 이후 하원아동 대상 별도 프로그램 운영(17시 이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특별활동 실시 시, 미참여 아동 별도 프로그램 진행여부 포함)</td><td rowspan="2">문서 확인</td></tr>
<tr><td>④ 맞벌이 부모 대상 별도 교육자료 제공</td></tr>
</table>
※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은 입소순위 시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
※ 맞벌이 부모 명단 중 10% 무작위 선정 후 유선으로 부모 확인(최대 5명)</td><td>항목
신설</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적절사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유무 ※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교사용 식자재, 수입식품도 포함됨) 〈신설〉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유무 ※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교사용 식자재, 수입식품도 포함됨) ※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기준 변경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증빙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미등록 영유아가 재원하는 경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된 반과 다른반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경우 •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서로 다른 연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설〉	- 증빙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미등록 영유아가 재원하는 경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된 반과 다른반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경우 •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서로 다른 연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퇴소한 원아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세부 사례 보완

Ⅰ. 서 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4.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05~2009)
5.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10~)

I
서 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추진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해 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집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 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을 받은 영유아는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등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 잠재력이 결정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육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 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및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보육정책이 공급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심이었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보육정책은

수요자,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어린이집 선택기준과 정보 제공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평가인증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2009년까지 제1차 시행이 완료되어 2010년부터 제2차 평가인증이 시작되었다. 1차 시행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인증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평가인증 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참여과정 중 교사나 부모의 협조 또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도 인증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인증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영역에서 서비스 수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평가인증제도의 시행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소정의 목적을 거두고 있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인 아이사랑 플랜의 보육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전인적으로 성장·발달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부모는 아이 기르는 어려움보다는 보람과 기쁨이 더 크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3대 전략과 6대 추진과제[1)]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로 평가인증제도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이러한 보육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때 제도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될 것이다. 이제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평가인증의 시행은 영유아를 둔 부모는 물론, 국민 누구나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

1) 3대 전략은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확대, 신뢰회복이며, 6대 추진과제는 부모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확립임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1) 보육의 질

보육의 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으며, 대개 구조적인 질, 과정적인 질, 서비스의 질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Donabedian, 1980; Munton, Mooney, & Rowland, 1995). 첫째, 구조적인 질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육의 질로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 학급의 크기, 교사의 교육 및 훈련수준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학급의 크기 등은 보육예산 변화에 따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보육의 과정적 질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과정적인 질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교사와 아동 간·부모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활동 등을 의미한다(McCartney, 2004; Whitebook, Howes, & Phillips, 1990). 어린이집의 과정적 질은 아동의 학습준비도, 인지, 학습, 사회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양육자, 즉 보육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은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기능에 주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인식되어 아동의 보육경험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Vandell, 2004). 셋째, 서비스의 질은 새롭게 보육의 질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육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다. 즉, 부모를 고객으로 보고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주 이용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서비스로서의 보육의 질을 평가하여 기관의 질을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육서비스를 측정할 때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 기관의 배치 및 분포, 기관의 이용가능성, 운영시간, 부모의 자유로운 기관 선택권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개념의 질적 수준 적용이 미비하나 향후 저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 크기, 교사의 학력과 경력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 뿐 아니라 발달에 적합한 활동, 따뜻하고 민감한 보육, 교사의 행동 등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과정적 변인 및 서비스로서의 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육의 질적 수준과 아동발달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아동발달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준다. 어린이집은 가정과는 구분되지만 아동이 오랜 시간 생활하며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서, 어린이집의 질은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하향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경험하는 양질의 보육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보육의 질과 관련된 아동발달의 결과로는 사회성, 창의성, 놀이, 문제해결력, 자아통제력, 언어 및 인지 발달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언어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urchinal et al., 2000), 양질의 취학 전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성과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ney, 1984;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또한 아동의 학습지향적 특성과

학습준비도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후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liam & Zigler, 2004). 일반적으로 우수한 취학전 프로그램은 모든 계층의 영유아에게 이로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Karoly & Bigelow, 2005), 영유아기의 건전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orney, Mitchell, & Warner, 2006).

국내에서도 보육의 질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은 아동의 놀이행동(강진아, 1998), 사회적 행동(최지현·박혜원, 2000)과 사회적 능력(전춘애·이미숙, 2002), 적응행동(현온강·태진, 2000)과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수한 보육의 질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영유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경험을 하는 경우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이렇게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좋은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을 근거로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보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국가 미래 인적자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2년여에 걸쳐 개발·준비되었고, 2005년 시범운영 실시 후 2006년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확대·실시되었다. 2009년까지 1차 시행시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제2차 시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관련 연구용역 실시(2002. 4.~12.)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제30조〕 (2004. 1.)

- 평가인증사업 한국여성개발원 위탁(2004. 10.)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2005. 1.~12.)
- 평가인증사업 육아정책개발센터 위탁(2006. 1.)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실시(2006. 1.~2008. 9.)
-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방안 시행(2008. 10.~2010. 1.)
  - 자체점검기간(4~5개월 → 3~4개월)을 단축, 전체 소요기간 6~7개월로 축소
  - 평가인증지표 유형구분의 기준을 21인에서 40인으로 변경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진행(2009. 3.~2009. 12.)
- 평가인증사업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위탁(2010. 1.~)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2010. 2.~)
-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 시행(2010. 8.~)
  - 자체점검기간(1개월), 전체 소요기간 4개월 진행
-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관리 강화(2012.)
  - 확인점검 시범 실시(2012.)
  - 확인점검 본격 실시(2013.)
-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방안 시행(2013.)
  - 자체점검 과정을 상시화하여 전체 소요기간을 6개월 → 4개월로 단축
  -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을 4항목 → 9항목으로 확대하여 참여자격 기준 강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2013. 9.)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개발 및 의견수렴 진행 중(2014. 2. 현재)

4.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05~2009)

1)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은 아래와 같이 29,084개소가 신청하여 20,402개소가 통과하였다〈표 1〉.

▌표 1▐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2005～2009)

단위 :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참여신청	1,089	4,420	6,359	7,776	9,440	29,084
인증통과	650	2,804	4,181	5,464	7,303	20,402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도 이후 2009년까지의 1차 시행시기를 종료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81.8%에 해당하는 29,084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그 중 참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일부 포기탈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57.4%인 20,402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인증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 2〉.

▌표 2▐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현황(2005～2009)

기준일 : 2009. 12. 31. 단위 : 개소, %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합계
전체어린이집	1,917	1,470	370	17,359	66	14,368	35,550
인증통과 어린이집	1,670	1,386	203	8,730	22	8,391	20,402
인증율(%)	87.1	94.3	54.9	50.3	33.3	58.4	63.05

2) 평가인증 효과 연구결과

2005년 평가인증 실시 이후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인식, 효과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한 어린이집의 88.8%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4.0%가 질적 수준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평가인증 참여 과정을 통한 교사의 변화로는 1순위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2순위 '직무에 대한 애정과 만족도 향상'을 꼽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영유아를 위한 환경이 개선된 점'과 '교사 자신을 계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꼽아 평가인증제도가 영유아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에 만족(93.0%)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에 효과적(96.0%)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참여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된 인증통과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 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2)]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사와 원장의 자부심과 교사 효능감을 높이며 아동모집 등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를 몇 가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질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미인증어린이집에 비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인증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부심

---

2)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증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인 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 간에 교사 효능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 원장의 약 40%, 응답 보육교사의 60%가 평가인증통과가 보육아동 모집 등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한 다른 연구[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가인증 참여 이전과 참여 이후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관찰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승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환경개선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점수가 사전관찰 75.3점에서 평가인증 시 89.6점으로,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78.1점에서 평가인증 시 90.6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각 지표의 하위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는 평가인증 인식과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략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 가졌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평가인증 참여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향은, 2008), 참여기관의 87.8%가 참여 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유희정·김은설·최혜선, 2007). 임난희(2009)는 평가인증 후 교사의 전문성, 교재교구의 질과 양, 실내 공간의 청결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이혜숙(2008), 김동례·이현경(2008)은 평가인증제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참여 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들도 평가인증 후에 어린이집 활동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이미숙, 2008), 여러 측면에서 평가인증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 점,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고려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은 향후 평가인증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과 분석(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5.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10~)

1)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방안 연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육아정책개발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평가인증제도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와 평가 결과에 근거한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추진방안, 이를 기초로 한 제2차 평가인증 추진방안 제시로 이루어졌다.

국내외 문헌, 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과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연구 결과로 제시된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평가인증지표는 공청회, 유관기관 자문회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2010. 2월)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제1차 시행과 비교하여 달라진 2차 평가인증의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 3〉.

▌표 3▐ 1차 및 2차 평가인증의 특징 비교

구분	1차 평가인증		2차 평가인증
참여대상	- 신규인가 1년 미만 참여 제한	⇨	- 신규인가 1년 미만 참여 가능
평가 인증 지표	• 40인 이상 7영역 80항목 • 39인 이하 5영역 60항목 • 장애아전담 7영역 85항목	⇨	- 지표항목 축소 • 40인 이상 6영역 70항목 • 39인 이하 5영역 55항목 • 장애아전담 6영역 75항목
			- 지표의 적절성 보완 • 평정 기준 상향 조절 • 비중 조절
법적기준 강화	- 필수항목 확인(3항목)	⇨	- 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확인(11항목)
합리적 운영	- 소요기간 : 6~7개월		- 소요기간 : 6개월
	- 인증결정 반영비율 • 자체점검보고서 25% • 현장관찰보고서 50% •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	- 인증결정 반영비율 • 자체점검보고서 10% • 기본사항확인서(신설) 10% • 현장관찰보고서 55% •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통과점수	- 73.33점	⇨	- 75점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 방문지원, 교육 등	⇨	- 인증어린이집 컨설팅 제도 도입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지표를 확정하는데 토대가 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대상 확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는 시행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상 어린이집의 안정성이 미흡하고 평정근거의 참고가 되는 기록이 부족한 신규인가 후 1년 미만 어린이집의 진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평가인증지표 내용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존의 신규인가 후 1년 미만이라는 참여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나. 평가인증지표의 적절성 보완

먼저 평가인증지표 항목의 영역별 비중 균형을 위하여 40인 이상, 장애아전담[4] 지표의 운영관리 영역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을 통합하고, 전체 문항을 축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유사항목을 통합하고, 달성도 높은 항목의 기준을 다소 상향조정 하였으며, 1차 시행 시 반영하지 못했던 교수법에 관한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다.

둘째, 보육대상의 연령 또는 특성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인증 지침서를 기술함에 있어 연령별, 특성별 기술이 필요한 항목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지표의 기준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질적 수준 개선을 도모하고,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 항목의 지침을 기술하고,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지표 이해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 평가인증 과정의 합리적 운영

평가인증 과정의 소요기간을 자체점검 3개월을 포함하여 6개월로 단축하였다. 또한 자체점검보고서 및 현장관찰보고서의 인증결정 시 반영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인증의 객관성을

4) 장애아전담은 2012년 8월 장애아전문으로 명칭 변경됨

높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적사항 준수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하고, 기준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인증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즉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조력, 지원 등을 지자체에서 담당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인증 과정 중 지자체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였다.

라.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평가인증 과정을 진행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첫째, 어린이집이 최초 인가 후 운영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전반을 점검하면서 표준보육과정 활용,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법적 사항 준수 등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평가인증 통과 후에도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5] 컨설팅을 통해 인증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인증 통과 후 인증어린이집에 취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인증어린이집이 인증의 질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증의 질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절차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5) 보육정보센터는 2013년 12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됨

2)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2010~)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된 2010~2013년까지의 현황 및 운영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2010년부터 시작된 2차 평가인증은 신규인증과 재인증 과정으로 나누어 기수별로 진행되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참여신청한 어린이집은 신규인증과 재인증을 모두 포함하여 총 53,435개소이며 이중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38,114개소이다. 2013년 12월말 기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0,955개소로 이는 전체 어린이집 43,776개소 대비 70.7%에 해당한다. 각 년도별 신청 및 통과, 유지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4, 5〉.

▌표 4▐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통과 현황

기준일 : 2013. 12. 31. 단위 : 개소

구분	총 진행 기수		신청 어린이집 수 (신규인증, 재인증 포함)	인증통과 어린이집 수 (신규인증, 재인증 포함)
	신규인증	재인증		
2010년	1~9기	1기	9,000	6,899
2011년	1~9기	1~9기	12,993	11,331
2012년	1~9기	1~9기	13,533	11,506
2013년	1~9기	1~11기	17,909	8,378 ('13. 12. 기준 신규인증 1~6기, 재인증 1~7기까지 포함)

▌표 5▐ 평가인증 인증유지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현황

기준일 : 2013. 12. 31. 단위 : 개소, %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합계
전체 어린이집	2,338	1,439	619	23,632	129	15,619	43,776
인증유지 어린이집	2,141	1,270	362	16,217	46	10,919	30,955
인증유지율(%)	91.6	88.3	58.5	68.6	35.7	69.9	70.7

※ 전국 어린이집 43,776개소 대비 인증유지 30,955개소('13. 12월 말 기준)

나. 평가인증제도 운영 경과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시행평가와 제도 보완을 위해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된 2010년부터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자문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제시한 개선 사항과 학계·공무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되었다.

2차 평가인증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1차 시행에서 나타난 평가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재인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평가인증과정을 신규인증과 재인증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과정의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평가인증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 법적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기본사항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이를 지자체에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향상을 모색하였으며, 자체점검보고서의 비중을 축소하고(25% → 10%) 현장관찰보고서의 비율을 상향조정(50% → 55%) 하는 등 인증결정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2차 평가인증지표는 1차 시행 대비 지표 수준을 고려하여 인증통과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

2011년 중반부터 평가인증지표의 일부 개정, 우수사례 기준변경, 현장관찰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내용이 2012년에도 지속되었다. 2011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문서자료집'을 발간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평가인증 문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관찰 운영에서는 현장관찰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현장관찰자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존중 및 현장관찰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관찰 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해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확인을 함으로써 원활한 현장관찰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확인점검 제도를 시범 적용하여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2013년에는 그간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체점검' 과정을 상시화하여 자체점검을 완료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평가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참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본사항항목 중 법적 관련 필수 항목을 기존 4항목에서 9항목으로 확대하여 참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셋째,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관찰을 위해 현장관찰 전에 2주간의 현장관찰 주간을 공지하고,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현장관찰자의 파견인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넷째, 인증유보된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 중 재인증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을 폐지하여 인증기간 동안 질유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2013년부터 확인점검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끝으로 2013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의거(2013. 8. 5. 시행)하여 부모의 알 권리와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사랑보육포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를 시행하고 있다.

Ⅱ. 2014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1. 2014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방향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3.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Ⅱ

2014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1. 2014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방향

보육환경 변화로 인하여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이에 3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앞서 2014년도에는 이러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어린이집 책무성 부여 및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체계와 지표를 일부 개선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참여취소 절차를 폐지하고 현재 참여취소 사유를 참여변동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인증 과정에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 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내용은 심의 과정 중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하며, 참여변동사항에 해당 될 경우 '불인증'처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참여변동사항 중 소재지 또는 운영형태 변경, 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에서 희망 시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였다.

둘째, 우수사례 항목에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즉,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모확인 및 문서를 통해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중 지침(보육사업안내)과 상이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평정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건강검진 인정기간을 기존 '관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 1회 실시'로 보육사업안내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중 성인용 식품(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지표평정 및 부적절사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평가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하였다.

넷째, 보육일지 등 표준서식 및 작성지침(안)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의 과도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실제 보육현장에서 서류 작성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부담이 컸던 바, 평가인증 시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평정기준을 안내하고 서식(안) 예시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건강과 영양 및 안전 영역의 평정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통학버스 차량의 영아용 보호장구는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차량운행을 유도하였다. 또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조리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통기한 확인대상을 해당 조리실의 모든 식자재로 확대하여 먹거리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지표 중심으로 각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평가인증에 참여신청 한다.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 이후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3단계로 인증결과 발표까지 진행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아래와 같다〈그림 1〉.

▌그림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1) 신청 단계 : 상시 자체점검, 신청

가. 상시 자체점검

◎ 자체점검 준비 및 실시(부록 참조)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우수한 영역과 미흡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실천해 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나.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방과후전담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다. 신청

◎ 시기

- 신규인증 : 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 재인증 : 기수별 일정에 따라 가능

◎ 진행 : 기수별 모집(2014년 신규인증 1~10기, 재인증 1~12기)

◎ 신청방법 : 2014년도 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기수(신규인증) 또는 정해진 기수·시기(재인증)에 대해 신청

- 신규인증은 1회 신청 시 한 기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고 희망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재인증은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기수별 대상과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기수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평가인증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신청 관리 ⇨ 기수 선택 ⇨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정보는 신청관리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어린이집은 2014년 ○○기에 신청중(○○번)입니다]

라. 진행일정

2014년도 신규인증 진행일정

기수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2개월)		현장 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결과 발표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1기	1. 8.~1. 25.	2. 1.~2. 28.	3. 5.~3. 20.	4월	5월	6월
2기	1. 8.~2. 25.	3. 1.~3. 31.	4. 5.~4. 20.	5월	6월	7월
3기	1. 8.~3. 25.	4. 1.~4. 30.	5. 5.~5. 20.	6월	7월	8월
4기	1. 8.~4. 25.	5. 1.~5. 31.	6. 5.~6. 20.	7월	8월	9월
5기	1. 8.~5. 25.	6. 1.~6. 30.	7. 5.~7. 20.	8월	9월	10월
6기	1. 8.~6. 25.	7. 1.~7. 31.	8. 5.~8. 20.	9월	10월	11월
7기	1. 8.~7. 25.	8. 1.~8. 31.	9. 5.~9. 20.	10월	11월	12월
8기	1. 8.~8. 25.	9. 1.~9. 30.	10. 5.~10. 20.	11월	12월	’15. 1월
9기	1. 8.~9. 25.	10. 1.~10. 31.	11. 5.~11. 20.	12월	’15. 1월	’15. 2월
10기	1. 8.~10. 25.	11. 1.~11. 30.	12. 5.~12. 20.	’15. 1월	’15. 2월	’15. 3월

2014년도 재인증 진행일정

기수	유효 기간	대상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2개월)		현장 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결과 발표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1기	’14. 5월	2011. 재인증 1기 (재참여) 2010. 6기 (재참여) 2011. 재인증 1기	’13. 12. 20.~25.	1. 1.~1. 31.	2. 5.~2. 20.	3월말~ 4월초	4월	5월
2기	’14. 6월	2011. 재인증 2기 (재참여) 2010. 7기 (재참여) 2011. 재인증 2기	1. 20.~25.	2. 1.~2. 28.	3. 5.~3. 20.	4월	5월	6월
3기	’14. 7월	2011. 1기 2011. 재인증 3기 (재참여) 2010. 8기 (재참여) 2011. 재인증 3기	2. 20.~25.	3. 1.~3. 31.	4. 5.~4. 20.	5월	6월	7월

기수	유효기간	대상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	결과발표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4기	'14. 8월	2011. 2기 2011. 재인증 4기 (재참여) 2010. 9기 (재참여) 2011. 재인증 4기	3. 20.~25.	4. 1.~4. 30.	5. 5.~5. 20.	6월	7월	8월
5기	'14. 9월	2011. 3기 2011. 재인증 5기 (재참여) 2011. 재인증 5기	4. 20.~25.	5. 1.~5. 31.	6. 5.~6. 20.	7월	8월	9월
6기	'14. 10월	2011. 4기 2011. 재인증 6기 (재참여) 2011. 재인증 6기	5. 20.~25.	6. 1.~6. 30.	7. 5.~7. 20.	8월	9월	10월
7기	'14. 11월	2011. 5기 (재참여) 2011. 1기	6. 20.~25.	7. 1.~7. 31.	8. 5.~8. 20.	9월	10월	11월
8기	'14. 12월	2011. 6기 (재참여) 2011. 2기	7. 20.~25.	8. 1.~8. 31.	9. 5.~9. 20.	10월	11월	12월
9기	'15. 1월	2011. 7기 2011. 재인증 7기 (재참여) 2011. 3기 (재참여) 2011. 재인증 7기	8. 20.~25.	9. 1.~9. 30.	10. 5.~10. 20.	11월	12월	'15. 1월
10기	'15. 2월	2011. 8기 2011. 재인증 8기 (재참여) 2011. 4기 (재참여) 2011. 재인증 8기	9. 20.~25.	10. 1.~10. 31.	11. 5.~11. 20.	12월	'15. 1월	'15. 2월
11기	'15. 3월	2011. 9기 2011. 재인증 9기 (재참여) 2011. 5기 (재참여) 2011. 재인증 9기	10. 20.~25.	11. 1.~11. 30.	12. 5.~12. 20.	'15. 1월	'15. 2월	'15. 3월
12기	'15. 4월	(재참여) 2011. 6기	11. 20.~25.	12. 1.~12. 31.	'15. 1. 5.~20.	'15. 2월	'15. 3월	'15. 4월

재인증 사전신청

- 대상 : 어린이집의 특수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 인정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관찰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입원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으로 변동되는 경우)
- 신청기간 : 기수별 신청 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 확인방법 : 인정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2) 1단계 : 참여확정

참여확정 단계에서는 신청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과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며, 아래 '가. 참여확정 자격'의 조건에 충족하는 어린이집은 참여대상으로 확정된다.

단계	주체	내용
신청 단계	어린이집	• 상시 자체점검 • 상시 신청
참여 확정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 안내 (시·도/시·군·구 대상)
	시·도/시·군·구	• 기본사항 확인 및 결과 입력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안내 (필수항목 준수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참여대상 어린이집 확정

▌그림 2▐ 참여확정 업무흐름도

가. 참여확정 자격

-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 필수항목 : 총 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어린이집

-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결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 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

  ※ 상기 1단계 "가. 참여확정 자격"에서 정한 요건(처분 종료,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모두 준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충족 시 참여확정대상이 될 수 없음

나. 기본사항 확인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기수별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을 지자체에 안내한다.

◎ 시·도 및 시·군·구의 기본사항 확인 업무

- 시·군·구는 기수별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에 통보하고,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확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한다.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안내	•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및 기간안내
시·군·구	기본사항 확인 및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시·도 통보 •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에 참여확정대상에서 제외 사전 안내
시·도	기본사항 최종 확인 및 통보	• 기본사항 확인 결과 최종확인 및 통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결과 확인 및 조치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 참여확정대상에서 제외

그림 3 기본사항 확인 업무흐름도

기본사항

- 필수항목 : 9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 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참고]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항목	평정	평정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 어린이집·보육실의 설치기준에서 '인가 공간의 용도 무단 전용' 여부 확인

● 기본항목 : 2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 (2점)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예·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 : 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미흡 (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항	8점 만점에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 시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 *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 아동학대는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

※ 기본사항 항목은 [영유아보육법]과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함

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한다.

※ 자체점검보고서 예시 및 작성요령은 부록 참조

- 참여 신청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필수항목이 준수된 경우,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의 경우, 참여확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방법

-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 준수여부'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자체점검 보고서 ⇨ 기본사항(필수항목) 〈준수/미준수〉로 표시됨

참여수수료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 참여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규모·유형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가상계좌 입금방법

1.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 **[참여수수료 입금]** 클릭
2. 검색메뉴의 년도, 전체 확인 후 **[검색]** 클릭
3. 해당기수 확인 후 표의 선택 밑에 □를 ☑로 체크 후 **[참여수수료 입금]** 클릭
4. 팝업창이 뜨면 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5. 입금은행, 입금자명,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클릭
6. 팝업창에서 입금정보(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재)한국보육진흥원), 입금자명, 입금하실 금액) 확인 및 결재내역통보 e-mail, 연락가능 전화번호 입력, "상기 결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결제]** 클릭
7. 은행에서 부여받은 계좌번호로 참여수수료 입금

※ **주의**

1. 확인한 입금정보(입금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기간)는 1회성 소멸계좌이므로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만 입금
2. 반드시 신청기간에만 입금 가능
3. 예금주명은 "(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보임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이 참여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분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환불	90%	50%	0%

* 참여확정 마감일은 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 파견 전 자체포기는 현장관찰 주간내 오후 5시까지 참여포기·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포기·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포기·환불신청서 작성 방법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참여포기·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참여포기 신청 ⇨ [참여포기 신청] 클릭

- 참여포기·환불신청서의 환불 계좌번호와 은행명, 예금주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수수료 환불 소요기간은 참여포기·환불신청서 작성 후 3주 내외입니다.

3) 2단계 : 현장관찰

현장관찰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자가 참여확정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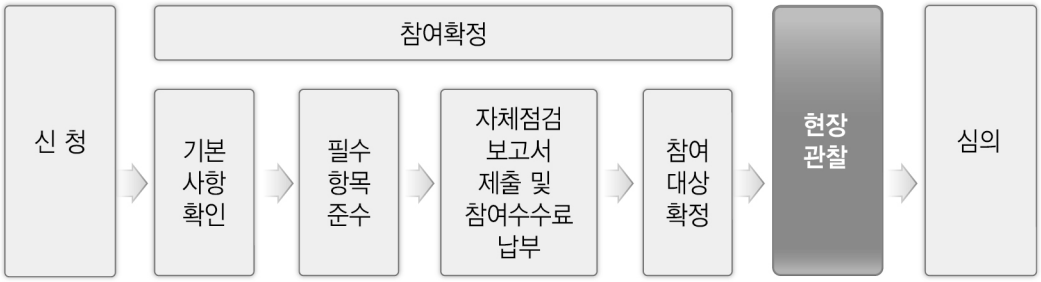

가. 현장관찰 주간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 별로 2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단, 현장관찰자가 위치 확인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연락할 수 있다.

  ※ 고지된 현장관찰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함. 단,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 보수교육, 상(喪) 등)에 한하여 조정 가능

- 어린이집의 현장관찰 주간은 현장관찰월 1주일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관찰 주간 확인

-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관찰월 1주일 전
- 확인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평가/심의 ⇨ 기수 선택 ⇨ [현장관찰 주간 확인] 클릭

나. 현장관찰 실시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파견되며 현장관찰은 1일간 실시한다.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30~09:30이며, 관찰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이다.
  - 현장관찰자는 현장관찰 시 관찰 대상 어린이집과 관찰자 간 상호 존중 및 관찰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실명이 기재된 현장관찰자증을 패용하고 어린이집에 방문한다.
  - 현장관찰자는 관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을 시작한다.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현장관찰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현장관찰일에 현원·출석(정원의 1/3 이상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이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 예정(심의 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 정원대비 현원 산정 시 인가 정원에서 방과 후 아동의 현원을 제외하여 산정함

* 방과 후 아동이 있는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산정 및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에서 방과 후 아동의 현원을 제외하여 산정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를 제외한 현원의 2/3 이상

(예시) 인가정원 55명인 어린이집(현원 33명 : 종일반 영유아 25명, 방과 후 아동 8명)의 경우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55명) - 방과 후 아동(8명) = 47명
  따라서 47명의 1/3 이상 = 15명 이상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를 제외한 종일반 영유아 현원(25명)의 2/3 이상
  따라서 25명의 2/3 이상 = 16명 이상

②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① 원아명단(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별 출력)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등
⑤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⑥ 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⑦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확인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⑧ 평가인증지표 각 영역 개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문서
※ ①, ②, ③은 제출하며 항목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예 : 재정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한다(99인 이하 어린이집 2개반, 100인 이상 어린이집 3개반).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찰반을 선정할 수 있음(영유아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 1반씩 포함됨)

- 99인 이하 어린이집 : 무작위로 3개반 추첨 후, 원장이 2개반 최종 선정
- 100인 이상 어린이집 : 무작위로 4개반 추첨 후, 원장이 3개반 최종 선정

◎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 현장관찰 시 확인하는 문서는 대부분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문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현장관찰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교직원(원장 포함)은 관찰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활동을 할 수 없다.

※ 어린이집에 미임용 교직원이 있는 경우 현장관찰자와 원장은 미임용 교직원이 타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관찰 후 상호확인

- 현장관찰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 상호확인한 후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서명한다.

* 작성완료 후 문서공유(복사본 제공)

※ 현장관찰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사례, 평가인증 관련 문서 구비 등

※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심의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되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인증을 통과하더라도 추후 인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찰자는 현장관찰 후 개별 현장관찰보고서 각 1부 및 종합 현장관찰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관찰 관련 자료를 밀봉하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한다.

라. 현장관찰자

- 현장관찰자는 연 1회 모집하고, 당해 연도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관찰자의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관찰자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현장관찰자 자격

①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한다.

※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평가인증 관련 업무(조력, 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다.

- 현장관찰자 모집 및 선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신청 및 접수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신청기간에 '현장관찰자 지원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후, 증명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우편송부)한다.
  - 선발 방법 : 총 3차 전형

    ① 1차 : 서류심사

    ② 2차 : 필기시험 및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 신규직 현장관찰자 교육(2차 합격자에 한함)
  - 1,2차 전형 합격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현장관찰자 교육(3차 전형)을 이수하여야만 최종 선발되어 현장관찰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 현장관찰자 교육 참여 시, 또는 교육 수료 후 3개월 이내에 현장관찰자 활동을 포기하는 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교육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현장관찰자 활동

- 현장관찰자는 상시직과 비상시직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한다.
- 현장관찰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관찰자의 성명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관찰자는 활동 종료 후 1년간은 평가인증 관련 조력자로 활동할 수 없다.
- 현장관찰자에게 현장관찰 활동기간 및 횟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3단계 : 심의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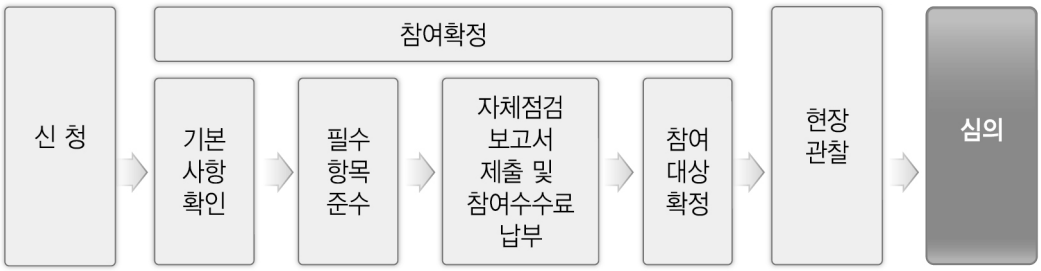

가.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평가인증 심의위원 자격

① 학계 전문가
-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
- 기타 보육 관련 전문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로서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어린이집 경력(원장, 보육교사) 총 4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어린이집 경력(원장, 보육교사) 총 6년 이상인 자

※ 단,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를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현장관찰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③ 보육담당공무원

나. 심의

심의 진행

- 심의는 학계 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담당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한다.
-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개별 검토한 후 심의기준에 맞추어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심의기준

<table>
<tr><th>심의자료</th><th>심의기준</th></tr>
<tr><td>(1단계)
심의 필수확인 항목</td><td>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불인증” 결정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td></tr>
<tr><td rowspan="5">(2단계)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td><td>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td></tr>
<tr><td>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td></tr>
<tr><td>3.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td></tr>
<tr><td>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table>
<tr><th>우수사례</th><th>부적절사례</th></tr>
<tr><td>• 1급 교사 비율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또는 취사부 임용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39인 이하) 취사부 임용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td><td>•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td></tr>
</table></td></tr>
<tr><td>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td></tr>
</table>

※ 각 기수별로 심의 종료~결과발표 직전 최종심의를 실시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최종심의는 1단계만 실시)

다. 부적절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부터 통보받은 현장관찰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부적절사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한다.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 심의기간까지 부적절사례에 대한 개선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현장관찰	• 부적절사례 발생
시·군·구	부적절사례 개선 확인	• 부적절사례 확인 및 개선 결과 시·도 통보 • 부적절사례 미개선 어린이집 명단 시·도 통보
시·도	부적절사례 개선 결과 통보	• 부적절사례 개선 결과 최종확인 및 통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부적절사례 개선 결과 확인	• 부적절사례 개선 결과 확인 (단, 부적절사례 미개선 시 심의 회부 등 관련 조치)

▌그림 4▐ 부적절사례 확인 업무흐름도

라. 인증결정

- 인증결정은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구 분	반영비율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총 계	100%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25점(3.00점 만점)/75점(100점 만점)이다.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심의 필수확인 항목" 발생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인증과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 인　　증 : 신규인증 및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 인증유보 :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불 인 증 : 신규인증 재참여 및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불인증

※ 다만, 해당 시설이 여타 "심의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참여변동사항 중 ① 소재지 변경 또는 ② 정원·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③ 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될 때에는 시설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 "5) 재참여관리"의 절차 및 수수료를 따름(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어린이집)

* 재인증 참여과정 중(참여확정월 이후~결과발표 직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 실시 기준이 적용됨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이상
인증유보(신규인증) 불인증(재인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인증결과가 인증유보인 경우 재참여 과정에 참여 가능함

마. 인증결과 발표

인증결과 발표 전

- 발표 전 어린이집 정보 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는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발표,

인증서 제작, 인증어린이집의 사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방법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주소, 원장 및 대표자명 : 확인 후 수정은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요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	설치운영관리

- 보육교직원 현황 : 보육교직원 변동 사항 수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원장 휴대전화 번호 : 세부내역에서 수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용자	⇨	사용자 관리

-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 인증결과 발표 전 참여어린이집에서는 질문지 및 참여변동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방법

-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인증결과 확인	⇨	[질문지 작성] 클릭

- 어린이집용 질문지는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어린이집용 질문지, 참여변동사항 확인서 입력을 완료해야 인증결과 발표 시 인증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결과 확인

-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인증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결과 확인 방법

- 인증결과 발표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및 개별 통보로 안내해드립니다.
- 인증결과 확인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인증결과 확인	⇨	[인증결과확인] 클릭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 인증은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매월 1일 → 15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참여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한다('11~13년 인증어린이집 한함).

※ 재인증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정해진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재인증 재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래 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재인증 재평가의 경우, 재평가 과정 진행 중에는 인증이 유효함)

인증서 및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해당 인증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부한다.

※ 2014년 참여기수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발급된 현판 사용)

5) 재참여 관리

◎ 재참여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참여 신청 ⇒ 재점검(2개월) ⇒ 재관찰/재심의(1개월 내외) ⇒ 결과통보

◎ 재참여신청 및 참여수수료 납부

- 재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지정된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 재참여수수료 : 13만원(39인 이하), 15만원(40인 이상), 23만원(100인 이상)
- 환불 : 재참여 진행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전**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후
100%	50%	0%

* 재참여 신청 마감일은 재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전 자체포기는 현장관찰 주간 내 오후5시까지 재참여포기·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 재점검

- 시·군·구는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 기본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참여 시, 평정점수를 반영하나, 이후(최초 참여확정 마감일~재점검 마감일) 추가 감점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 평정된 점수에 추가 반영

- 재참여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재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

재관찰/재심의

-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관찰이 진행된다.

※ 단, 참여변동사항이 발생(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수사례·부적절사례를 재확인한다.

재참여 결과

- 재참여 인증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불인증된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된다.

재참여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이상
불 인 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6) 참여변동사항 확인

가. 인증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아동학대 사실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정원 또는 유형이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 되어 다른 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나.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한다.

-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불인증"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의 경우 전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참여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참여 어린이집

-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변동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심의 종료 이후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참여확정일 ~ 심의 실시 전까지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기수별 결과발표 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변동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반영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행정처분 범위 및 자격여부

구분	참여확정	참여과정 중	인증 이후
필수항목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참여가능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반환명령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 참여가능	•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 발생 시 반환명령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가능	•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	•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과징금 납부를 완료한 어린이집 참여가능	•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가능	•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가능	•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행정처분 시행일부터 1년 경과 후 참여가능	•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7)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 입력·제출 한다.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다.

인증발표 시기	1 ~ 6월	7 ~ 12월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상반기 (익년 5. 1. ~ 6. 15.)	하반기 (익년 11. 1. ~ 12. 15.)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원장이 교체된 시점(임면 보고일 기준)부터 연속하여 개최된 3회차 교육 중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중 교육시기	매월 1회 실시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 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면제대상 신청 기한	원장이 교체된 시점부터 연속으로 개최되는 3회차 교육 중 마지막 3회차 교육의 신청 마감일

신임 원장 교육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임 원장 교육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신임원장 교육 신청 ⇨ [교육신청서 작성]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다. 확인점검

◎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확인내용)**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 **(결과반영)** 확인 결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육 컨설팅 연계 또는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정 기준은 최근 연도 인증어린이집의 점수대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에서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일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관리 지원(80점 이상일 경우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함)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확인점검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인증유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의 경우, 전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사유에서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인증취소)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추후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는 해당안됨)
③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 결정

⑥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개월)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 함

마. 인증취소 절차

① 시·군·구는 인증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인증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 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확정사실 안내 및 현판 회수 등 협조 요청

※ 인증취소일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서 인증취소 처분일과 구분되며 인증취소사유 발생 시점을 적용함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폐기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인증취소 처분 통지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인증취소 처분내용 통보 및 협조 요청
어린이집 /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그림 5▐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의 신청

- "라.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⑦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아래 각 호별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 시·군·구에서의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의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 : 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확인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를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도 함께 제출

- 확인방문의 미신청 또는 수수료 미납에 따른 인증취소
  -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⑦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처리한다.

확인방문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확인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확인 방문 ⇨ 확인방문 신청서 ⇨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확인방문 신청 완료 후 해당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참여수수료 입금을 클릭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발급된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이체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확인방문 수수료

-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1인/20만원, 2인/40만원, 3인/60만원의 수수료를 통보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될 수 있다.

구분	확인방문자 파견 전*	확인방문자 파견 후
환불	100%	0%

* 확인방문자 파견 전 참여포기는 확인방문 전일(영업일 기준) 오후 5시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방문 참여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확인방문자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확인방문자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한다.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40인 이상 및 장애아전문	39인 이하
영역 1. 보육환경 영역 2. 운영관리 영역 3. 보육과정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5. 건강과 영양 영역 6. 안전	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2. 보육과정 영역 3.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4. 건강과 영양 영역 5. 안전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방문자 1인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한다.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평가인증지표 중 해당 영역

평가인증지표 중 해당 영역	
40인 이상 및 장애아전문	39인 이하
영역 1. 보육환경 영역 5. 건강과 영양 영역 6. 안전	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4. 건강과 영양 영역 5. 안전

- 확인방문은 현장관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 재인증 참여과정 중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된다.

확인방문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3.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는 1차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따르고 있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기본방향

- 2차 평가인증에서는 1차 평가인증을 통하여 확보된 어린이집의 보편적 질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사의 상호작용 및 교수법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평가인증지표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어린이집마다 특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표의 세부기준 설정 및 지침서 기술에 있어 연령별 또는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1차 평가인증 시행 이후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및 용어를 새로운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보육현장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지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구성

-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는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영역 및 항목
40인 이상 어린이집용 평가인증지표	6개 영역 70항목
39인 이하 어린이집용 평가인증지표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용 평가인증지표	6개 영역 75항목

- 평가인증지표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3단계 기술 평정 척도로 이루어진다.

구분	평가기준
3점	'우수한 수준'으로 바람직한 실제를 기술함
2점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적으로 우수한 실제를 기술함
1점	'미흡한 수준'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실제를 기술함

- 각 항목에 대한 3단계 세부 평가기준은 지침서 본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체점검 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표로 활용하도록 한다.

①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6개 영역 70항목)

영 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1항목)	가. 어린이집 환경(3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5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3항목)
영역 2. 운영관리(12항목)	가. 어린이집의 운영관리(3항목) 나. 보육인력(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4항목)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2항목)
영역 3. 보육과정(14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7항목) 나. 보육활동(7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6항목) 다. 교수법(2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2항목)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2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 보호(5항목)

② 39인 이하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5개 영역 55항목)

영 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1항목)	가. 어린이집 환경(3항목) 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3항목) 다. 보육인력(3항목) 라. 가족과의 협력(2항목)
영역 2. 보육과정(11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4항목) 나. 보육활동과 자료(7항목)
영역 3.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6항목) 다. 교수법(2항목)
영역 4. 건강과 영양(12항목)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2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영역 5.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 보호(5항목)

③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6개 영역 75항목)

영 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4항목)	가. 어린이집 환경(4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7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3항목)
영역 2. 운영관리(13항목)	가. 어린이집의 운영관리(4항목) 나. 보육인력(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4항목)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2항목)
영역 3. 보육과정(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7항목) 나. 보육활동(8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0항목)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6항목) 다. 교수법(1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3항목)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3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5항목) 나. 장애 영유아의 안전 보호(5항목)

3)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영 역		항 목
영역 1. 보육환경 (14항목)	어린이집 환경	장 1-1. 활동영역의 배치
		장 1-2.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장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장 1-4.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보육활동 자료	장 1-5. 신체활동 자료
		장 1-6. 언어활동 자료
		장 1-7. 자연탐구활동 자료
		장 1-8. 예술활동 자료
		장 1-9.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장 1-10.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
		장 1-1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보육지원 환경	장 1-12.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장 1-14. 교사용 참고자료
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장 2-1.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장 2-3.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보육인력	장 2-5.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장 2-6. 원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장 2-7. 보육교직원의 교육
	가족과의 협력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장 2-9.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장 2-10.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장 2-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지역사회와의 협조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장 2-13.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영 역		항 목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장 3-6. 사회적응 프로그램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보육활동	장 3-8. 신체활동
		장 3-9. 언어활동
		장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장 3-11. 사회성 증진 활동
		장 3-12. 자연탐구활동
		장 3-13. 예술활동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장 3-15.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10항목)	일상적 양육	장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장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교사의 상호작용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장 4-5.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장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장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장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장 4-9.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교수법	장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영역 5. 건강과 영양 (13항목)	청결과 위생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장 5-3. 놀잇감의 청결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장 5-5.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장 5-7.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장 5-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질병관리	장 5-9.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장 5-11.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급식과 간식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영 역		항 목
영역 6. 안전 (10항목)	실내외 시설의 안전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장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장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장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장애 영유아의 안전 보호	장 6-6.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장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Ⅲ.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영역 1. 보육환경
영역 2. 운영관리
영역 3. 보육과정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5. 건강과 영양
영역 6. 안전
우수 및 부적절사례

Ⅲ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영역 1 | 보육환경

보육환경은 장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기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보육환경이라 함은 물리적, 인적, 시간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지만 이 영역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과 공간 내의 활동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일상생활 공간과 놀이공간, 장애 영유아의 경험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과 설비로써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해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적극 격려하도록 계획하고 구성하여야 한다. 장애 영유아가 쉬고 싶을 때나 혼자 놀이를 하고 싶을 때를 위해 적절한 장소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영유아는 구체적인 사물을 스스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놀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므로 장애 영유아의 흥미나 연령, 발달 수준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활동 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고, 장애 영유아 수에 맞추어 충분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활동 자료가 충분하다는 의미는 장애 영유아가 각 영역별로 동시에 놀잇감을 갖고 분쟁 없이 놀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을 의미하며, 각 영역에서 놀이하는 장애 영유아 수의 1.5배 내외 정도의 활동 자료(놀잇감)를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교사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바탕이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지원하는 시설과 참고자료 등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이 영역에서는 쾌적한 어린이집의 환경 유지와 장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 자료 구비,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환경 구비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부록 참조)
어린이집 환경	장 1-1. 활동영역의 배치	○			-
	장 1-2.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			-
	장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		○	인근놀이터의 경우, 인정 관련 서류(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놀이터의 증빙서류나 관리 주체의 사용승낙서)
	장 1-4.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			-
보육 활동 자료	장 1-5. 신체활동 자료	○			-
	장 1-6. 언어활동 자료	○			-
	장 1-7. 자연탐구활동 자료	○			-
	장 1-8. 예술활동 자료	○			-
	장 1-9.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			-
	장 1-10.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	○			-
	장 1-1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관련자료 및 기록
보육 지원 환경	장 1-12.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			-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			-
	장 1-14. 교사용 참고자료	○	○		-

- 모든 보육실 및 해당 공간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인가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실, 교사실, 자료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미흡한 수준'으로 평정한다.
- '보육활동 자료' 평가 시, 활동 자료의 다양성 및 충분성은 각 흥미영역에 구비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정한다(예 : 음률영역에 비치된 자료는 음률활동 자료로 인정).

장 1-1 : 활동영역의 배치

장 1-1	활동영역의 배치
3	어린이집의 공간이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 발달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가 적절하다.
2	어린이집의 공간이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 발달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두 영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1	어린이집의 공간이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집은 다수의 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장소로 장애 영유아의 연령이나 장애유형,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환경은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중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별 발달 수준과 흥미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이나 흥미, 공간의 크기, 어린이집의 운영 철학에 따라 몇 영역이 가감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의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의 활동 특성에 따라 보육실 공간을 구획하여 한 활동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서 영역별로 배치하면 활동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 자료의 영역별 배치 뿐 아니라 시끄러운 놀이와 조용한 놀이, 움직임이 많은 놀이와 움직임이 적은 놀이, 물을 사용하는 놀이와 그렇지 않은 놀이들은 서로 분리하여 놀이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즉, 조용하고 움직임이 적은 놀이(예 : 책읽기, 수활동이나 과학활동 등) 공간을 보육실 한 쪽에 배치하였다면, 그 반대쪽 공간에는 시끄럽고 움직임이 많은 활동영역(예 : 음률활동, 쌓기놀이영역 등)을 배치하여 서로 방해받지 않고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유형에 따라 뇌병변 및 발달장애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호장구들이 많아 보육실이 협소하거나 각 보육실내에 모든 활동영역을 구성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전체 어린이집에 걸쳐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개별 발달 수준, 특성에 적합하게 활동영역을 구성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 흥미영역이 나누어 배치된 두 보육실이 칸막이로 구분된 경우 활동(놀이) 시간에 모든 영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평정기준 활동영역의 구성 및 내용, 활동영역의 배치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활동영역이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과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실내 공간의 크기에 맞게 적합한 수의 활동영역이 구성되어 있고, 활동성, 물 사용의 여부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장애 영유아의 활동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공간이 적절한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활동영역이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과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지 못하거나, 한두 영역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 활동영역 중 한두 영역이 실제로 장애 영유아의 놀이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경우
-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높이, 보관 장소)에 활동영역 및 자료가 배치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어린이집 내 활동영역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 어린이집 인가 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반이 있어 활동영역의 구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

장 1-2 :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장 1-2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3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은 있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
1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다.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가정에서처럼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활동하는 등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구성하는 등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 공간은 장애 영유아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교사의 시선이 미치는 곳이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는 종종 좁은 구석이나 열린 장 속, 가구의 틈새에 비집고 들어가 앉아 있기를 좋아하지만 이러한 곳은 교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된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 휴식 공간은 장애 영유아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활동하는 등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실마다 마련한다.
- 휴식 공간의 경계가 되는 교구장의 높이, 조명, 방음 등을 고려하고, 깔개와 쿠션, 소파 등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하여 장애 영유아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한다.
- 휴식 공간에서 장애 영유아는 하루 일과 중 쌓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놀이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휴식 공간은 가능한 쌓기놀이영역 등 소음이 많은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배치하고, 장애 영유아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사의 시선이 미치는 곳에 마련하도록 한다.

- 휴식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언어영역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교사는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원아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평정기준 휴식 공간의 유무, 휴식 공간 이용의 용이성, 아늑한 분위기 조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보육실 내에 마련되어 있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보육실 내에 마련되어 있지만, 이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보육실에 마련된 휴식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
- 장애 영유아가 혼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휴식 공간을 배치한 경우
- 휴식 공간은 있으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사용할 수 있어 필요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 성인용 소파를 배치하여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 언어영역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놀이하는 장애 영유아들이 많고 교사가 배려해주지 않아 휴식 공간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쌓기놀이나 역할놀이영역 등 소음이 있고 활동적인 영역과 인접한 곳에 배치 된 경우
- 휴식 공간에 깔개(매트) 또는 쿠션만 마련되어 있어 아늑한 분위기로 조정되지 않아서 장애 영유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보육실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 보육실 내에 휴식 공간이 없는 경우
- 별도의 공간(예 : 원장실 등)을 마련하여 장애 영유아 혼자 쉬게 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로 깔개를 깔아 장애 영유아를 쉬게 하는 경우
- 어린이집 인가 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반이 있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장 1-3 :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장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3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있다.
2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가 있으나, 놀이기구가 3종 미만 있다.
1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가 없거나, 놀이기구가 없다.

장애 영유아는 실외활동을 통해 내적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움직임이 큰 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충족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으로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대·소근육 활동 및 다양한 실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갖추어야한다. 또한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외놀이터는 어린이집 자체 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를 뜻하며, 옥외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대체놀이터(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대체놀이터에 대해 알아보아요!

- 대체놀이터는 크게 옥내놀이터와 인근놀이터로 구분됩니다.
  - 옥내놀이터는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로, 실내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옥상놀이터가 있습니다.
  - 인근놀이터는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를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놀이터와 놀이기구를 갖추도록 한다.

- 놀이터에는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옥외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놀이기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두 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조합놀이대의 경우 기능에 따라 놀이기구의 종(개수)으로 인정

-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 모래놀이기구 :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

※ 기타 놀이도구(권장) : 물놀이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 놀이도구(자동차 등 탈것, 소꿉놀이) 등

- 놀이기구는 대상 연령 또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인근놀이터에 설치된 초등학생용 미끄럼틀은 장애 영유아용 놀이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 설치된 놀이기구 주변에는 장애 영유아의 이동과 안전을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인근놀이터의 인정범위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놀이터 :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놀이터 관리주체가 있는 인근놀이터 :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구비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확인 안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장애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평정기준 옥외놀이터의 유무, 대체놀이터의 유무, 놀이기구의 종류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에 옥외놀이터가 있고,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1종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배치되어 장애 영유아의 대·소근육활동 및 다양한 실외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대체놀이터(인정범위의 인근놀이터 포함)가 있고,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가 최소 3종 이상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에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인정범위의 인근놀이터 포함)가 있으나, 놀이기구가 3종 미만인 경우이다.

- 옥외놀이터는 있으나 놀이기구가 3종 미만인 경우
- 옥외놀이터는 없고 대체놀이터는 있으나 놀이기구가 3종 미만인 경우
- 옥외놀이터에 놀이기구가 있으나 고정식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가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가 없거나, 놀이기구가 없는 경우이다.

- 초등학교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 인근놀이터를 사용하나 사용승낙서가 없는 경우 등

장 1-4 :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장 1-4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3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
2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
1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장애 영유아는 다양한 장애의 범주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므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공간과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만일 어린이집에서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는 장애 영유아의 불편을 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특정 장애 영유아만을 위한 물리적 환경만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장애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장애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 영유아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 보육실이나 집단활동실은 장애 영유아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숫자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공간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 영유아를 위하여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혹은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 유도 블록, 핸드 레일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춘 물리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대·소변기의 높이가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며, 휠체어 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피더시트, 기립보조 책상, 자세교정 의자, 앉아있는 채로 이동이 용이한 의자 등 장애유형에 맞는 기구들과 설비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평정기준 시설 및 보육공간의 확보, 보조도구의 확보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시설 및 보육공간의 크기가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이동 및 보육에 필요한 보조도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시설 및 보육공간의 크기가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의 이동 및 보육에 필요한 보조도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 보육공간(복도, 문, 화장실, 집단활동실 등)에 문턱이 있어 휠체어, 보행기 등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 문의 손잡이가 높게 설치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 영유아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경우
- 자세교정 의자, 기립보조 책상 등 장애 유형별 필요 보조도구가 장애 영유아의 수만큼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시설 및 보육공간의 크기가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매우 협소하고 장애 영유아의 이동 및 보육에 필요한 보조도구가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다.

- 보육실, 집단활동실 등이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맞지 않게 위치한 경우
- 기구 및 설비가 장애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맞지 않은 경우
- 기구 및 설비를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경우 등

장 1-5 : 신체활동 자료

장 1-5	신체활동 자료
3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대근육활동 자료나 소근육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새로운 운동 기술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는 이러한 활동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신체 자각, 신체 부분의 인식, 공간감각력, 리듬감, 서기, 걷기에 대한 균형감과 안정감,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체력이 증진된다. 또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눈과 손의 협응력, 도구 사용 능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는 장애 영유아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맞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신체활동(대·소근육) 자료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넉넉히 구비하여야 한다.
- 대·소근육활동 자료는 보육실 내, 옥외놀이터, 유희실 등에 비치할 수 있으며, 계절과 실내외 활동을 고려하여 신체활동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근육활동 자료와 소근육활동 자료를 양쪽 모두 충분하고, 균형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근육활동 자료로는 큰 공, 오르내리는 것이 용이한 낮은 미끄럼틀, 낮은 평균대, 철봉, 시소, 뛸 수 있는 매트, 그네, 자전거, 손수레, 크기와 재질이 다양한 공, 모래와 물놀이용 수로나 삽, 숟가락 등의 놀잇감, 바퀴달린 놀잇감 등이 있다.

- 소근육활동 자료로는 딸랑이, 오뚝이, 까꿍 놀잇감, 끼적거리기 자료, 가위질하기 자료, 밀가루 반죽, 퍼즐, 콩 옮기기, 지퍼 올리기, 모양 맞추어 끼우기, 단추 끼우기, 커다란 너트와 볼트 등과 같이 끼우고 빼는 활동 자료 등이 있다.

※ 소근육활동 자료는 탐색영역 또는 수·조작영역에 비치 가능

평정기준 신체활동(대·소근육) 자료의 충분성, 발달 적합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한 경우이다. 즉 대근육활동 자료와 소근육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여 개별적 욕구나 수준에 맞게 활동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 소근육 발달을 위한 자료들이 있으나,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이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부족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대근육활동 자료나 소근육활동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 인가 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반이 있어 활동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장 1-6 : 언어활동 자료

장 1-6	언어활동 자료
3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언어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기는 새로운 낱말을 빠르게 습득하고 문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등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끼적거리기에서 비롯되는 초기의 쓰기 시도와 인쇄물이나 그림책 읽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읽기와 쓰기도 빠르게 발달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언어습득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언어에 대한 수용 정도,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차를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자료는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기존 상품화된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장애 영유아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언어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언어활동 자료는 조용하고 밝은 곳에 잘 보이도록 배치하고 자료를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느낌의 카펫을 깔아주고 등받이가 있는 쿠션이나 방석, 낮은 소파, 낮은 탁자나 책상, 책꽂이 등을 준비한다.
- 언어활동 자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자료를 골고루 갖추도록 한다.
- 언어활동 자료는 낮은 교구장에 배치하여 장애 영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과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들을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지는 않지만 보이는 곳에 둠으로써, 자발적인 요구를 촉진하고 우발적인 언어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 그림책 등의 언어활동 자료는 주제에 맞추어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장애 영유아가 새로운 자료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언어활동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듣기활동 자료로는 잘 들리며 조작이 간단한 카세트 플레이어, 사물이나 동물 등의 특징적 소리를 간단하게 담은 테이프,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 테이프, 헤드폰, 교사나 부모 등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이야기나 운율이 있는 언어놀이나 짧은 노래 테이프 등이 있다.
- 말하기활동 자료로는 장애 영유아가 간단한 소리를 듣고 모방할 수 있는 테이프, 장애 영유아가 그림책을 보며 이야기를 꾸미거나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촉진시키는 소품, 음성 출력이 되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도구, 낱말 카드, 막대 인형, 테이블 인형, 융판 인형, 자석 인형, 손인형 등의 자료가 있다.
- 읽기활동 자료로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 다양한 질감의 감각 그림책, 단순한 개념책, 반복적이고 운율이 있는 그림책, 장애 영유아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첩, 동식물 사진첩, 간판 사진, 음식점 표시나 메뉴판 등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어 읽기 자료, 광고나 포스터 자료 등이 있다.
- 쓰기활동 자료로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종이, 굵은 색연필이나 연필, 세모·네모·동그라미 보조선을 따라 그리도록 된 종이, 보조선을 따라 그리도록 장애 영유아의 이름이나 낱말을 쓴 종이 등이 있다. 또 끼적거리기를 위해 커다란 흰 종이를 벽이나 바닥에 준비해주어 장애 영유아가 쓰기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평정기준 언어활동 자료의 충분성, 발달 적합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작은 크기의 그림책, 글이 적고 그림이 선명하며 주제가 단순한 그림책, 헝겊책, 입으로 물거나 물 속에 넣어도 안전한 비닐책 등이 마련되어 있다. 쓰기 자료로는 짧고 굵은 크기의 연필이나 색연필, 끼적이기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종이나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언어활동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 인가 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반이 있어 활동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장 1-7 : 자연탐구활동 자료

장 1-7	자연탐구활동 자료
3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수활동 자료나 과학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감각을 통하여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이로써 수 개념, 일대일 대응, 분류 개념, 측정 능력을 기르고, 과학적 사고나 태도,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주변 환경 탐색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이 좋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자연탐구활동 자료로는 주위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으며, 장애 영유아에게 의미 있고 장애 영유아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여 조작 시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어 장애 영유아에게 선호도가 높은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자연탐구활동 자료는 가능한 조용한 곳에 책상과 함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물이나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고 장애 영유아가 관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탁자 등을 구비한다.
- 자연탐구활동 자료는 장애 영유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활동 자료를 한 번에 모두 제시하는 것보다 장애 영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생활주제에 맞추어 교체해 주고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절, 주제, 장애 영유아의 흥미에 기초하여 다양한 자연물이나 실물을 제시(예 : 열매, 식물, 꽃, 솔방울, 곤충, 조개껍데기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하고자 노력한다. 실물자료는 주제와 발달에 적합한 전시용 자료와 더불어 실제로 만져보거나 조작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조개껍데기 등의 실물자료가 깨지거나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 되나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경우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한다.

▌자연탐구(수, 과학)활동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수활동 자료로는 장애 영유아가 직접 만지며 조작할 수 있는 막대나 커다란 단추, 모양이 다른 병뚜껑, 다양한 수 게임자료, 주사위와 판 등이 있다. 일대일 대응, 분류, 비교, 순서 짓기, 측정, 공간과 도형, 규칙성 등의 개념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생활주제와 연관된 수학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과학활동 자료로는 동물과 식물, 여러 모양의 돌과 나무껍질, 조개껍데기 같은 자연물, 자석, 확대경, 거울, 촉감상자, 소리상자,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 다양한 바퀴 등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다.
- 여러 가지 조작활동 자료(예 : 퍼즐, 모양찾아 맞추기, 크기 순으로 고리 끼우기, 색깔 맞추기 등) 및 촉감 상자, 소리상자 등의 탐색활동 자료도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자연탐구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정기준 자연탐구(수, 과학)활동 자료의 충분성, 발달 적합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한 경우이다. 즉, 수·과학활동 자료가 대부분 실물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활동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실물 자료이며, 장애 영유아의 반복적 사용을 고려하여 견고하여야 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 수·과학활동 자료가 실물 자료보다는 평면 자료가 대부분인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수활동과 과학활동 중 어느 한 쪽의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손으로 조작해 볼 수 없는 전시용 자료(예 : 곡물, 곤충, 돌들을 이름과 함께 표시하여 액자로 제시한 자료,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장에 전시한 동물모형 등)만 제공하고 있는 경우
- 어린이집 인가 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반이 있어 활동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장 1-8 : 예술활동 자료

장 1-8	예술활동 자료
3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음악·동작활동 자료나 미술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신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소품, 그리기 도구, 생활용품 등의 사물을 탐색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며, 창의성과 미적인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음악, 동작, 미술 등과 같은 표현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음악·동작활동 자료나 미술활동 자료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음악활동 자료로는 다양한 음색을 경험하고 박자 감각을 익히는데 좋은 리듬악기(예 : 리듬막대, 작은 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등), 실로폰, 멜로디언, 키보드, 피아노 등의 가락악기, 마라카스, 딸랑이, 종과 같은 악기가 있고,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테이프와 카세트 플레이어, 노래 부르기에 필요한 그림악보 등이 있다.
- 동작활동 자료로는 여러 가지 색 보자기, 리본 테이프, 한삼, 부드러운 수건 등과 같은 소품들이 있다. 이러한 동작활동 자료는 장애 영유아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활에 연결된 체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미술활동은 크레파스, 색연필 등 간단한 도구로 끼적거리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되며, 점차 다양한 종이, 도구, 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그림 등의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각종 미술재료(예 :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풀, 가위, 색실, 점토, 물감, 붓, 분필, 밀가루 반죽 등), 폐품류(예 :

요구르트 병, 우유팩, 병뚜껑, 빈 상자 등),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종이(예 : 도화지, 색종이, 잡지, 신문지, 화선지, 골판지 등) 등이 있다.

평정기준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의 충분성, 발달 적합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들이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음악·동작활동 자료나 미술활동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 인가 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반이 있어 활동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장 1-9 :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장 1-9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3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역할놀이 자료나 쌓기놀이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역할놀이나 쌓기놀이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을 놀이로 표현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정서, 사회성 발달이 촉진되고 신체발달, 수학적 개념학습, 과학학습, 사회학습, 언어발달, 조형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장애 영유아의 놀이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장애 영유아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놀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증받은 가정용품이나 폐품, 상품화된 놀잇감, 직접 제작한 놀잇감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장애 영유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역할놀이영역은 엄마·아빠 역할하기, 운전하기, 소방서 놀이, 병원 놀이 등 다양한 주제의 상상놀이 및 사회극놀이가 일어나는 영역이므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놀이의 주제가 고정되지 않도록 적절히 자료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역할놀이 자료로는 상품화된 놀잇감 이외에도 가정에서 기증받은 가정용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쌓기놀이에서도 주제를 가지고 놀이가 일어나고, 극화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다양한 블록과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하여 준다. 또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자료는 인접하여 배치하여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역할놀이 자료로는 다양한 신발류, 장신구, 가방류, 모자류, 음식 모형, 인형류, 전화기, 그릇류 등의 소꿉놀이 용품과 의사 가운, 요리사 모자, 남녀 한복, 드레스, 소방관 복장 등의 옷 종류가 있다.

- 쌓기놀이 자료에는 다양한 종류의 블록류(예 : 종이 블록, 나무 블록, 유니트 블록, 속 빈 블록, 우레탄 블록, 크고 작은 와플 블록 등)와 쌓기놀이를 촉진하는 소품류(예 : 작은 자동차나 표지판, 동물모형 등)가 있다.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따라 가볍고 손에 잘 잡히며, 넘어져도 안전하고 푹신한 우레탄 블록이나 스펀지 블록, 종이벽돌 블록, 헝겊으로 감싸져 있는 블록 등이 있다.

평정기준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의 충분성, 발달 적합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위에서 제시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역할놀이나 쌓기놀이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 인가 공간이 아닌 장소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반이 있어 활동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장 1-10 :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

장 1-10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
3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만,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1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어린이집에는 장애 영유아의 장애를 개선하거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 자료들은 장애 영유아의 능력에 적합하고 좌절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즉, 장애 영유아의 연령, 인지, 언어, 신체, 정서 등 전반적인 개별 발달 수준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활동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를 갖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맞게 활동을 단순화, 구체화시킨 자료들,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수정된 특수교육 활동 자료들이 다양하고 양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감각통합교육, 놀이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자료들도 다양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보조도구로는 지체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하게 재활공학적으로 보완된 도구들과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기, 이동하기가 용이하도록 특수 제작된 의자, 휠체어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조도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 청각·언어장애 유아를 위하여 의사소통 보조기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시각장애 유아를 위하여 확대 독서기, 문자를 소리로 전환하거나 녹음하여 들려주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규격화된 제품 외에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상용품과 자연물을 활용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자봉지, 잡지, 신문, 사진, 거울, 빈 화장품 용기 및 약병, 종이박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평정기준 자료의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적합성, 자료의 충분성, 다양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의 장애를 개선하거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특수교육 관련 교재나 교구 등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자료들이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며, 다양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만,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각 활동 영역별로 2종 마련되어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자료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이다.

-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각 활동 영역별로 1종 이하로 마련된 경우 등

장 1-11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장 1-1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3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2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돕거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를 다양하게 갖추고 이를 개별화 보육계획안 수립이나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충분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발달평가는 때때로 임상적인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에서의 각 발달 영역별 능력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진단은 장애 영유아 개개인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비록 진단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과정이긴 하나 장애 영유아의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학습내용이나 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의 지체나 지체될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선별과 장애의 종류나 상태, 발달지체의 성격과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의 구비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 개개인에 대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적절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의 심리/인지/언어/사회성숙도/자폐성 측정 등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다양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장애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

평정기준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의 발달 적합성, 진단 및 평가 도구의 다양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종류가 다양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개별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검사도구 및 자료들을 장애아 정보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받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경우이다.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의 종류가 2종으로 다양하지 못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의 종류가 1종 이하로 다양하지 못한 경우 등

장 1-12 :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 1-12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3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2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1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없고, 자료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보육주제나 계절, 장애 영유아의 흥미나 적응 정도에 따라 자료를 융통성 있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를 잘 정돈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나 자료실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용 활동자료는 평면 자료보다 입체 자료와 실물 자료가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가 잘 보이도록 정돈하여 보관하여야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한다.

-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는 장애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구분되어 별도의 창고나 자료실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린이집에 창고나 자료실이 없다면 장애 영유아의 활동이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따로 보관 장소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예 : 교사실, 원장실 등).
- 장애 영유아의 활동이 일어나는 보육실이나 복도, 유희실에는 아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비품과 자료를 활동 영역별, 용도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면 활용하기 쉽다. 모든 비품과 자료는 금방 볼 수 있는 위치에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적어 놓아 한 눈에 내용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평정기준 별도의 자료 보관 장소, 체계적 정리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별도의 창고나 자료실, 교사실, 원장실, 상담실 등과 같이 장애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소가 별도로 있으나 교수자료와 교구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
- 어린이집에 별도의 보관 장소는 없으나 장애 영유아의 활동공간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자료를 잘 정리해 놓은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장 1-13 : 교사를 위한 공간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3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있고,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2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은 있으나, 별도의 공간은 없다.
1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없다.

장애 영유아 위주로 조성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불편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내에 최소한 교사를 위한 책상이나 개인 소지품을 넣어둘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하고 더 나아가서 교사회의나 교재 준비를 하기 위한 교사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위한 개별 공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 내에 교사용 책상이나 교사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한다. 이때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책상은 교사 개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 교사용 책상 또는 개인 사물함은 교사가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마련하여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교사들이 모여서 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동료 간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사정상 교사실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교사가 일과 후에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공간을 어린이집 안에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이때 교사를 위한 공간은 장애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구분되어야 한다.

평정기준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의 구비, 별도의 공간 마련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 내에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있고, 교사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 내에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은 있으나,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이다.

- 교사를 위한 개별 책상은 있으나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은 있으나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어린이집 내에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없는 경우이다.

- 별도의 공간은 있으나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없는 경우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 1칸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에 교재, 교구 등을 보관하는 경우
-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이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공동 책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장 1-14 : 교사용 참고자료

장 1-14	교사용 참고자료
3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한다.
2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
1	교사용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과정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원장과 교사가 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참고할 전문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참고할 전문자료가 부족하면 교사가 준비하는 활동계획이 진부해지거나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데 머무르기 쉬우며,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기 어렵다. 교사용 참고자료란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서적, 보육활동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자료,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을 위한 참고자료와 장애 영유아의 생활지도를 위한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의미하며 전문서적, 시청각 자료 등이 포함된다. 장애 영유아용 교재(학습지 등)나 월간 잡지는 교사용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교사용 참고자료를 구비하도록 한다.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구비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모든 교사가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여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용 참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수를 고려하여 교사당 5권 이상 충분한 양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구비하도록 한다. 교사가 1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0권 정도의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수가 2명 이하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최소 10권 이상의 참고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용 참고자료는 보육계획과 보육활동, 놀이, 영유아 생활지도, 영유아발달, 심리, 부모교육과 상담 등 보육 관련 전문자료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영상자료」 등 교사가 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 또한, 보육환경 구성 관련 자료집도 포함될 수 있다.

-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월간잡지나 장애 영유아용 동화책, 참고자료의 내용이 보육과 관련 없는 내용일 때, 너무 오래 되어서 실효성이 없어진 자료는 교사용 참고자료로 보기 어렵다.
-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꾸준히 새로운 참고자료 활용이 필요하므로 교사용 참고자료의 구입은 학기별 또는 계절별로 구입 계획을 세워 필요한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린이집에서는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자료를 점검하여 더 필요한 자료에 대한 구입을 계획하고, 교사용 참고자료 구입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며 구매 내역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해두어야 한다.
-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꼭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대여하여 구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여 자료는 전체 자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참고자료는 자료실이나 교사실 등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모든 교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평정기준 별도의 자료 보관 장소, 체계적 정리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어린이집에서 교사당 5권 이상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구비하고 있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에 구비된 참고자료가 10권 이상이기는 하나 교사당 5권 미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
- 교사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곳에 비치한 경우
- 참고자료 보관장이 잠겨있거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용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 교사용 참고자료가 10권 미만으로 구비된 경우 등

영역
2 | 운영관리

어린이집의 운영관리는 어린이집의 철학이 반영되며, 원장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고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지원을 통해 장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들과 교류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면에서의 중요 요소로는 명확한 운영방침 수립, 체계적인 원아 관리, 보육실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준수, 합리적인 보육교직원의 업무분장과 조직적인 업무 전달과 수행,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관리 등이 있다.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교사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바탕이 되며, 보육과정을 통하여 장애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원장은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를 위한 환경구성과 충분한 재교육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가족이 밀접한 의사소통을 하고,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를 격려하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이 영역에서는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인력 관리,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신입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부록 참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장 2-1.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	○	운영방침, 어린이집 안내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생활기록부, 신입 원아 적응프로그램 관련 기록
	장 2-3.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		○	이용아동연명부, 출석부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	○	사례회의 기록
보육 인력	장 2-5.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	○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장 2-6. 원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	○	○	업무분장표, 교사회의기록
	장 2-7. 보육교직원의 교육		○	○	신입 인력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실행기록, 재교육 관련 기록
가족과의 협력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	○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실행기록
	장 2-9.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	○	○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개별면담기록
	장 2-10.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	○	○	부모 프로그램 실시 관련 기록(가정통신문 등)
	장 2-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기록, 회의기록
지역 사회와의 협조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	○	지역사회 연계 활동 기록
	장 2-13.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	○	개별면담기록 및 전문기관(전문가) 관련 정보기록

-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장 2-1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장 2-1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3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안내한다.
2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는다.
1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및 건전한 발달을 책임지고 가정과 유사한 양육을 제공하며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명확한 운영철학과 보육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보육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의 운영철학과 보육목표가 모호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명확한 운영철학과 보육목표, 운영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는 어린이집과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업무내용을 소개하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한다.

-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철학과 보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교사 및 보육교직원에게 공지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수립된 운영철학과 보육목표에 근거하여 운영내용을 구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때 원장은 교사와 구체적인 운영내용을 협의하도록 한다.

  ※ 운영방침의 필수기재사항 :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보육목표, 보육프로그램의 특성(보육방침), 보육시간, 보육료, 연령별 집단크기와 교사 수, 보육교직원 구성, 어린이집의 환경(보육실, 실내외 놀이시설 등),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을 안내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정통신문, 게시판, 안내 소책자, 리플릿, 홈페이지 등이 있다.

평정기준 운영방침(유무, 내용, 실행), 운영방침의 원장 및 교사의 인지, 부모 안내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안내하는 경우이다.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목표가 문서화되어 있고 이와 일관된 보육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원장과 교사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정통신문, 게시판, 안내 소책자, 리플릿,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영방침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상세히 안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포함되어야 할 필수기재사항 중 두세 가지 정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보육내용이 이와 일치하지 않거나 목표와 상반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운영방침을 부모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
- 문서화된 운영방침에 대하여 원장이나 교사가 일부 잘 모르고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 운영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 중 네 가지 이상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원장이나 교사가 절반 이상 모르고 있는 경우
- 운영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장 2-2 : 원아에 대한 관리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3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가 미흡하다.
1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원아에 관한 문서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고 친숙한 양육자와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불안해진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가족도 장애 영유아를 새로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주 양육자가 바뀌면 또래와 함께하는 규칙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새로운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적응 절차를 마련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효율적인 원아관리를 위해 개별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장애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에 관한 기록을 작성, 관리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면담할 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입 원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부모와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입 원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모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응과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 정식으로 등원하기 전에 부모와 신입 원아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사전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일주일(토·일 포함) 이상 단계적으로 단축보육을 실시하며, 며칠 동안은 부모가 오전 시간에 신입 원아와 함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등 개별 장애 영유아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응과정을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으나 3일 미만의 적응과정은 신입 원아를 위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부모의 여건상 단축보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긴밀하게 교환하며, 부모와 함께 노력한다.
- 신입 원아의 적응을 돕는 과정은 장애 영유아의 연령, 장애 유형, 개인적인 기질, 이전의 어린이집 경험, 부모의 직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한다. 부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신입 원아의 식습관, 잠자는 습관이나 시간 등의 생활리듬, 성격,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잇감, 특별한 질병이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 신입 원아를 위한 적응절차는 학기 초에 입소하는 신입 원아 뿐 아니라 수시로 입소하는 신입 원아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입 원아로 인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재원아도 함께 배려하는 노력을 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신입 원아 적응을 위한 절차(실시기간, 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신입 원아 적응을 위한 절차의 실행기록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원아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원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퇴소 관리서류(예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출력물로 비치 가능
  - 생활기록부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 생활기록부에는 신체발달상황, 감염병 예방접종 기록이 누적 관리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생활기록부는 법정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단, 필요에 의해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정 서식에 있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로 인정 안 됨

평정기준 신입 원아 적응절차(기간, 방법, 실행기록), 원아 문서 관리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신입 원아 적응기간은 최소한 일주일(토·일 포함) 이상 실시하고, 개별적 배려를 하며, 이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모든 원아의 문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가 미흡한 경우이다.

- 어린이집의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신입원아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실행기록이 없는 경우)
- 단축보육을 실시하지 않으나 개별적 배려를 충분히 해주는 경우
- 일부 원아의 문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원아에 대한 문서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의 신입 원아 적응 프로그램이 3일 미만인 경우
- 신입 원아 적응 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신입 원아가 절반 이상인 경우(실행기록이 없는 경우)
- 기본적인 문서 중 누락된 종류가 있는 경우
- 한 종류 이상의 문서에서 절반 이상 원아의 문서가 누락된 경우
- 모든 장애 영유아의 문서는 갖추고 있으나 처음의 기록이 있을 뿐 계속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

장 2-3 :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장 2-3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3	모든 반에서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법정 비율을 지키고 있다.
2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 이내이나,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반이 있다.
1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반이 있다.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은 장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의 수가 적절하면 교사는 모든 장애 영유아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개별 장애 영유아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할 때 통제나 지시보다 개별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징에 맞추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을 지키도록 한다.

-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 장애 영유아 3인당 교사 1인을 배치하며, 장애 영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마다 교사를 1인씩 증원해야한다.
- 장애아 9명당 교사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전담 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 가능하다.
-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 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은 가능하다.
- 반 구성 및 장애 영유아 재원사항의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달리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평정기준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모든 반에서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법정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경우이다.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을 법정 비율보다 낮게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보육 허용범위 이내이나,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반이 한 반이라도 있는 경우이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보육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반이 있는 경우이다.

'보육실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항목과 관련하여 초과보육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반을 운영하거나, 등록된 반 구성을 실제 운영 시 임의대로 변경하여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별 초과보육 허용범위 초과' 부적절사례에 해당된다.

장 2-4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3	보육교직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2	보육교직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팀 협력이 가끔 이루어진다.
1	보육교직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며, 팀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원장, 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적인 영역의 보육교직원이 존재한다. 이 각각의 보육교직원들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 맡은 역할에 대한 존중, 역할수행을 위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때 장애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의 특성상 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업무보고 및 사례회의를 통한 장애 영유아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팀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한 요구가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 가능한 최선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팀 접근법은 장애의 성격이 복합적인 지체 및 복합장애를 가진 장애 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하다. 팀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문을 통한 관련서비스(치료포함)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활동 내에 관련서비스(치료포함)의 목표가 통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팀 협력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구성원들 간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례회의 진행 시 모든 흥미영역에서의 놀이나 활동, 실내외 공간, 일과의 모든 시간에서 일부 장애 영유아가 나타내는 반응이나 행동을 고루 포함해야 함

-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보육교직원 간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활한 논의와 협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례회의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 지도에 대한 팀 협력과 교육내용의 진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기록은 장애 영유아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평정기준 정기적인 사례회의 개최, 팀 협력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교직원(원장, 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상호 간의 업무보고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육계획과 운영에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업무연계 및 팀 협력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에 대한 팀이 조직되어 있고, 사례회의 보고서에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회의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 팀 협력과 교육내용 적용과 진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업무보고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육계획과 운영에 팀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에 대한 팀이 조직되어 있으나 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사례회의가 주 1회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사례회의의 내용이 보육계획과 운영에 잘 활용되지 못하는 등 팀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업무보고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보육계획과 운영에 팀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 사례회의 보고서(사례회의 관련 기록)가 없는 경우
- 사례회의가 월 1회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장애 영유아에 대한 팀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장 2-5 :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장 2-5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3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원장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준다.
2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원장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이를 알려준다.
1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없거나, 원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문서화된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은 모든 보육교직원의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원장과 보육교직원 사이의 복무 관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체계화한다.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휴가 등을 계획할 수 있다면 보육교직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을 문서화하도록 한다.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 내용에는 자격과 근무기간에 따른 급여기준, 퇴직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휴가, 휴직, 사직 절차, 직무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필수기재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 원장은 이를 문서화하고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설명해 주며 준수해야 한다.
-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할 경우 성의껏 세부 내용을 알려주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
- 복무규정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경우 이로 갈음한다.
- 근로계약서는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작성하여야 하며 쌍방이 날인한 후 각자 보관하여야 한다.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고용되어 있는 원장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평정기준 근로계약서 및 복무규정(유무, 내용), 보육교직원 공지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원장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원장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이를 알려주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즉,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중 두세 가지가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이 없거나, 원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이다.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누락된 경우
-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용된 보육교직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고용된 원장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원장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등

장 2-6 : 원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장 2-6	원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3	원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교사회의를 월 2회 이상 한다.
2	원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교사회의를 월 2회 미만 한다.
1	원장과 교사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회의를 월 1회 미만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관련된 공동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함으로써 어린이집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원장과 교사는 정기적인 교사회의에서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하여 어린이집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사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의 내용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외에도 보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 개별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지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교사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다.
- 교사는 원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장애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원장과 교사는 반드시 업무분장된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비품 관리, 도서 관리, 실외시설 관리 등과 같은 공동업무는 업무 내용에 따라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사들에게 분담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지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장 또는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2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원장과 교사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 보육내용 및 활동 등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한다.

- 교사회의에서는 원장과 교사 간, 교사와 교사 간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교사회의 외에도 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 등 교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 간 상호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필요하다면 소그룹회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평정기준 업무분장, 업무파악, 업무수행, 정기적인 교사회의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원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교사회의를 월 2회 이상 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고, 원장과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원장과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교사회의가 월 2회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 내에 문서화된 업무분장이 있으나, 본인(원장, 교사)의 담당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 문서화된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 역할이 다른 교직원이 있는 경우
- 문서화된 업무분장이 있으나,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회의를 월 1회 미만 하는 경우이다.

- 문서화된 업무분장이 없는 경우
- 보육 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원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항목과 관련하여 원장 또는 교사가 무자격이거나 임용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타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교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부적절사례에 해당된다.

장 2-7 : 보육교직원의 교육

장 2-7	보육교직원의 교육
3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는다.
2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미흡하거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지 못한다.
1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원장이나 교사가 있다.

새로 들어오는 교사나 기타 보육교직원(예 :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등),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란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보육내용과 프로그램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절하게 실시하면 인력이 바뀌는 기간 중 보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장애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원장과 교사는 아동발달, 보육에 관한 직무·승급교육을 포함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받아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원장과 교사 재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육내용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교사·대체교사·기타 보육교직원·실습생·자원봉사자 등 새로운 보육 인력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보육인력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한다.
- 교사와 기타보육교직원에게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보육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 특성, 직무에 관한 설명, 고용과 관련된 조건과 용어들에 대한 설명, 불만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

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지침,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 대체교사에게는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외에 주간보육계획, 일과운영, 장애 영유아 생활 지도, 장애 영유아 특성, 반 운영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 보육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육실습생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보육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 특성, 보육실습생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한다.
- 이 밖에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근무 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에는 반드시 기록, 관리한다.

  ※ 운영일지 등에 기록 가능(부록 참조)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육교직원의 재교육을 할 수 있다.

- 원장과 교사는 아동발달, 보육에 관한 직무·승급교육을 포함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받아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
- 원장과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승급교육을 받은 후 관련 행정기관의 증빙서류(예정서류 포함)를 비치한다.

  ※ 직무·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 직무·승급교육 이외 보육교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은 워크숍, 지역별 모임, 어린이집 내 교육모임, 인터넷 강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재교육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이 언제 재교육을 받는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 모든 보육교직원이 재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는 재교육 참여자가 있을 때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기록, 관리한다.

평정기준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대상, 자료, 실행기록), 재교육(대상, 실행기록)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즉 교사·기타 보육교직원·실습생·자원봉사자 등 새로운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계획되어 실시되며,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승급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재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미흡하거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 신입 보육교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하였으나, 기타 보육교직원·대체교사·실습생·자원봉사자 등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 기타 보육교직원·대체교사·실습생·자원봉사자 등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없는 경우
- 보육교직원을 위한 재교육이 오직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뿐인 경우
-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승급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실제로 재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있는 경우(실행기록이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무·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원장이나 교사가 있는 경우이다.

- 신입교사에 대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 신입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없는 경우
- 직무·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가 있는 경우 등

장 2-8 :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3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2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다.
1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 처음 장애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는 장애 영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가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 하고 걱정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은 어린이집의 철학과 보육과정의 내용을 주제로 설명하고, 신입 원아의 초기 적응을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은 새로 들어오는 원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신입 원아 부모는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받고 의논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조기 적응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학기 초 신입 원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집단으로 실시한다.
- 이외 중간에 입소한 장애 영유아의 부모에게도 집단 혹은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한다.
-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와 운영내용에 포함하는 필수기재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신입 원아의 초기 적응을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한다.

  ※ 필수기재사항 : 보육교직원 소개, 보육시간, 어린이집의 환경,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과정,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등하원 절차 및 안전지침 등
-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에는 부모에게 안내할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된 자료를 가지고 실시한다.
-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원장이나 교사의 설명뿐 아니라 부모들의 의문사항이나 건의에 대한 질의응답도 충분히 다룬다.

평정기준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대상, 자료, 체계성, 실시기록)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이다. 즉, 연 1회 정도 체계적으로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새로 입소한 원아 부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 학기 초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이나, 중간에 새로 입소하는 영유아 부모를 위한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실시하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내용 중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적힌 간단한 안내 자료로 대신하는 경우이다.

-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등

장 2-9 :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장 2-9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3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1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데 가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모와 가족을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철학과 보육내용이 자신의 자녀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개별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사는 부모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해야 한다.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장애 영유아의 생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합한 지도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교육방침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경우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가정통신문, 게시판, 전화,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있다. 이때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을 포함하여 이 중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에는 반드시 보육활동계획안과 급·간식 식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별 장애 영유아의 보육경험에 대해서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등을 통해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매일 이루어질 수 있다. 장애 영아의 경우에는 수유, 이유, 배변, 수면 상황과 전반적 기분과 건강상태에 대해 매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보육활동 시 장애 유아의 개별적 반응이나 문제행동, 이에 대한 교사의 지도방법,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개별면담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능한 많은 부모들이 개별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관찰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계획은 포함되지 않음)

  예) 8월이 현장관찰월인 경우, 작년도 8월~당해연도 7월의 실시기록 확인

  - 장애 영아의 경우, 발달적 변화가 빠르고 개별적 배려가 더 많이 요구되므로 장애 유아보다 자주 부모와 개별면담을 할 수 있다.
  - 특별한 문제가 있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다른 장애 영유아보다 더 자주 부모와 개별면담을 할 수 있다.
- 개별면담을 할 때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찰결과를 토대로 장애 영유아의 발달적 변화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지도방법을 중심으로 부모와 면담한다.
- 개별면담은 면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면담의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서 면담할 수 있다. 이때 장애 영유아 발달 상황 및 지도방법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화나 알림장 등으로 부모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개별면담에 포함되지 않음

평정기준 가정과의 의사소통(방법, 내용), 부모 개별면담(실시기록, 내용)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적인 방법(알림장,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등)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연 2회 이상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여 개별 장애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부모 개별면담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이다.

- 가정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가정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양방향적인 방법(알림장,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등)을 포함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보육활동계획안이나 급·간식 식단이 안내되지 않는 경우 등
-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연 1회 이루어지고 실시기록이 있는 경우
  -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실시하나, 면담 내용에 개별 장애 영유아 발달 상황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부모 개별면담에 전체 원아 부모의 30% 미만만 참석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가정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 가정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

- 가정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실시기록이 없는 경우)
-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교사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원장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경우
-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도 부모 집단면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실시기록이 없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스마트 알림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출력해두어야 하나요?

A. 본 항목에서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평정하므로 스마트 알림장은 별도의 문서 출력 없이 알림장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Q. 스마트 알림장에 대화수첩과 가정통신문 기능이 있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정 가능한가요?

A. 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 알림장의 기능 및 내용에 따라 평정됩니다.

장 2-10 :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장 2-10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3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다.
2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1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하다.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이 부모에게 개방적이어야 부모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자녀를 참관하거나, 자녀와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의 행사나 보육과정에 부모가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거나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부모는 보육일과를 지켜보거나 활동의 일부를 장애 영유아와 함께 하면서 장애 영유아의 보육경험이나 행동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부모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장애 영유아의 활동과 발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서로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실질적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입소 장애 영유아의 부모가 희망할 경우 자녀의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한다.

  ※ 현장관찰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계획은 포함되지 않음)

  예) 8월이 현장관찰월인 경우, 작년도 8월~당해연도 7월의 실시기록 확인

- 희망하는 부모는 원장 및 교사와의 협의 하에 보육시간 중 언제라도 보육실 밖의 창문을 통하거나, 보육실의 일방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장소에 설치된 CCTV 모니터 등을 통해서 자녀의 보육활동을 참관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와의 협의 없이 부모가 무분별하게 보육실을 방문하여 장애 영유아의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안내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보육실 관찰이

끝난 후에도 계속 원장이나 교사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시간을 약속하고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정규 보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의 행사나 보육과정에 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여러 행사나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배우고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관한 정보(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개최 일정, 비용 등)를 안내하여 희망하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정보 안내 뿐 아니라 참여 의사 등을 파악(수요조사)하여 부모가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공개수업에 부모를 초청하거나, 부모가 자원봉사자, 보조교사, 주제 활동의 주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보육활동의 일부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사전안내에 따라 현장학습, 어린이집 주변으로의 산책, 소풍 등 어린이집의 외부로 장애 영유아가 집단으로 외출해야 할 때, 알뜰시장, 크리스마스 행사, 생일잔치 등 어린이집의 행사에 희망하는 부모 및 가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평정기준	부모의 보육실 참관(허용 여부, 절차 및 방법, 안내), 부모 프로그램 참여 기회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는 경우이다. 부모에게 보육실을 참관하는 절차와 방법이 안내되어 부모가 보육실을 참관하기가 용이하며, 어린이집의 행사나 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연 3회 이상인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이다.

- 보육실 참관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되지 않는 경우
- 보육실 참관 절차 및 방법이 안내되나, 부모의 보육실 참관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 보육실 참관 절차 및 방법이 안내되고,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나 부모 프로그램참여 기회가 연 2회 이하인 경우
- 부모의 보육실 참관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모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한 경우이다.

-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행사나 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연 2회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

장 2-11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장 2-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부모에게 안내한다.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나, 부모에게 안내하지는 않는다.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제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부모 및 주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보육에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린이집, 부모,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상호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25조)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어린이집, 자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아는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이 속한 주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 영유아 보육에 효과적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어린이집 원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방침의 변경 등에 대해 함께 의논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과 회의 결과를 부모에게 알려 모든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보건복지부, 2010)'을 참고할 수 있다.

평정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부모 공지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부모에게 안내하는 경우이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가 부모에게 적절하게 안내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나, 부모에게 안내되지 않는 경우이다.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가 연 1회만 이루어진 경우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의가 개최되나 부모에게 안내되지 않는 경우
- 회의내용이 부모에게 안내되지 않아 일반 부모들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운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제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이다.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린이집 원장, 교사 대표, 원아 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 중 일부만으로 구성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연 1회 미만으로 개최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개최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장 2-12 : 지역사회와의 협력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3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2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가끔 이루어진다.
1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가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는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령 지역사회의 학교, 노인복지관, 병원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을 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 외에 지역사회 환경을 보다 친밀하게 이해하도록 공원, 어린이도서관, 병원, 경찰서, 초등학교, 대학, 주민센터, 공원 관리사무소, 소방서 등의 가까운 장소를 방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실습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아님

- 장애 영유아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하여 위급할 때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치과의 의사나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건강한 치아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있는 공통된 자원뿐 아니라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가령, 지역에 위치한 해변, 생태습지를 방문하거나 그 지역사회에만 있는 특별한 박물관, 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관련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더 바람직하게는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 내에서 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이나 놀잇감을 빌려주는 것, 인근 노인정,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장애 영유아가 노인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평정기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월 1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월 1회 미만으로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3개월에 1회 이하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장 2-13 :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장 2-13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3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2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1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없으며,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

어린이집에는 가정환경이나 발달적 특성이 또래들과 달라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 영유아가 있다. 특수한 요구사항의 예로는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행동문제(예 : 다른 장애 영유아보다 어떤 사물을 아주 무서워함,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함)에서부터 동생이 태어나는 것, 이사 등과 같은 가족의 변화,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근래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장애 영유아나 부모 중 한 쪽 이상이 외국 출신인 다문화가정의 장애 영유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어린이집이나 또래와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적응 문제를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장과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사려 깊고 전문적인 태도로 설명해주어야 하며, 부모 및 전문가와 함께 장애 영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이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조하여 노력한다.

- 장애 영유아 관찰, 개별면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장애 영유아의 적응문제나 장애 영유아 가족의 당면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한다. 또한 다른 장애 영유와아 가족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안내한다.

- 장애 영유아의 적응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와 어린이집이 장애 영유아를 돕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논의한다. 이때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는 전문가로서 자녀의 적응 문제가 발달에 궁극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부모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려 깊은 태도로 상담에 임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특정 문제를 도와줄 전문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예 : 서비스 종류, 전화번호, 비용 등)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모에게 안내해주어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어린이집은 부모가 장애 영유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주민센터, 구청 또는 전문가(예 : 의사, 상담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장애 영유아의 적응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부모와 논의한다.
- 특수한 요구가 있는 장애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협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평정기준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문제 파악, 관련 정보 마련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 개별 면담, 관찰 등을 통하여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에게 이를 사려 깊고 전문적인 태도로 설명한다. 아울러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없으며,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영역
3 | 보육과정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과정을 통해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신체, 사회성·정서, 언어, 인지능력 등이 적절한 시기에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보육과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은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연령 및 발달에 따라 적합한 보육내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과정 안에서 장애 영유아들은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며, 대·소근육활동, 언어활동, 음률과 미술활동, 수·과학활동, 역할놀이와 쌓기놀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보육활동을 계획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상적 양육 경험과 다양한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친숙한 활동과 새로운 활동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보육과정에는 실내외에서 진행되는 활동 뿐 아니라 어린이집이 속한 주변 이웃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기는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차가 크고, 개인 내에서도 발달 영역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발달에 적합한 경험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 영아의 경우 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애 유아들은 스스로 보육활동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표준화된 보육과정을 제공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보육이념을 구현하고자 국가 수준의 보편적 보육내용인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와 행복을 도모하여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영유아가 경험할 보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0~1세, 2세는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영역, 3~5세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연령 및 수준별로 구성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자율성,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하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함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참조로 보육과정을 계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영역에서는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 운영에 초점을 두고 보육계획안의 수립,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통합적 운영,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관찰 그리고 각 영역별 보육활동 운영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부록 참조)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개별화 보육계획안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		○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		○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		○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개별화보육계획안 부모 동의서 (보건복지부 양식 : 특별활동 동의서)
	장 3-6. 사회적응 프로그램	○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개별화 보육계획안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	○	
보육활동	장 3-8. 신체활동	○		○	
	장 3-9. 언어활동	○		○	
	장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			
	장 3-11. 사회성 증진 활동	○		○	
	장 3-12. 자연탐구활동	○		○	
	장 3-13. 예술활동	○		○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		○	
	장 3-15.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		○	

- 선정된 반의 관찰 당일 보육활동을 직접 관찰한다.
- 문서는 현장관찰월 3개월 전부터의 현장관찰월까지 전체 반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장 3-1 : 보육계획안의 수립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3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이 장애 영유아의 연령, 흥미,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 있다.
2	보육계획안은 구체적이나 연령, 흥미, 계절 등의 고려가 미흡하여 연계성이 적다.
1	보육계획안이 없거나 있어도 구체적이지 않고 연계성도 없다.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일 년 동안 경험할 보육내용을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일 년 동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연간 보육계획안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월간(또는 주간) 및 일일 보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연간 보육계획안은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해 계획하는 한 해의 전체적인 보육내용으로써, 다루어야 할 주제와 내용 및 행사일정 등을 근거로 계획한다.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연간 보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장애 영유아가 일과를 통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각 일과에 맞추어 계획한다.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을 계획할 때에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에 기초하여 운영 예시로서 개발되어 보급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개별화 보육계획안(IEP)은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과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보육계획안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서 가장 발달 속도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흥미, 요구, 학습 속도, 기질, 능력, 참여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보육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연간 보육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과 목표, 지역사회의 주변 환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과 흥미, 계절, 사회적인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들(예 : 월드컵 개최에 따른 축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 고조 등)을 반영해야 한다.

- 연간 보육계획안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은 서로 연계성 있게 수립하되, 전년도에 실시된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수행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전체적인 보육일과(시간적 구분) 및 보육실의 물리적 공간 구분(실내외, 실내흥미영역)에 따라 실시 가능한 구체적 활동으로 계획하여 제시한다. 이때 장애 영유아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일상적 양육에 대한 내용, 휴식시간이나 정리 정돈, 등하원지도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 일일 보육계획안을 별도로 작성할 경우에는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하루 보육일과에 따라 여러 보육활동에 대한 준비 및 진행, 상호작용 방법, 공간구성 및 집단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계획한다면 수준 높은 보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교사 자신의 전문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 연간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각 반별로 수립되어야 하나, 동일 연령 반의 경우에는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그 반에 해당하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 및 수준별 표준보육과정의 보육내용을 고려하여 보육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기준	연간,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의 유무, 연계성, 구체성, 다양한 특성의 고려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목표를 설정하고 보육내용을 각 반별로 일 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연간 보육계획안을 수립하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특성(연령, 흥미, 계절 등)을 고려하여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을 연계성 있게 수립한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계획안이 문서로 구체화되어있으나, 연계성이 적은 경우이다. 또는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한 반이라도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연간,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다양한 특성(연령, 계절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경우
  -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주제와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 연령이 다른 모든 반이 동일한 보육계획을 세운 경우
  - 혼합연령반의 연령별 차이가 보육계획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 혼합연령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경우 등
- 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에 활동 목표가 없는 경우
  - 월별 주제만 기록되어 있고 활동계획은 없는 경우
  - 일상생활 계획만 있고 활동계획은 없는 경우 등
- 연간,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 연간과 월간(주간)의 주제가 서로 다른 경우
  - 연간과 월간(주간) 및 개별화 보육계획안의 주제가 서로 다른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문서로 작성된 보육계획안이 없거나, 있어도 연간, 월간(또는 주간) 계획안 주제가 거의 연계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 보육 계획안이 없는 경우
  - 연간보육계획안이 한 반이라도 없는 경우
  -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및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한 반이라도 절반 이상으로 누락된 경우
  -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없는 경우 등
- (연간,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및 개별화 보육계획안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연계성이 없는 경우
  - (연간,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및 개별화 보육계획안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다양한 특성에 대해 고려가 미흡한 경우
  - (연간,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및 개별화 보육계획안은 있으나) 연계성이 없고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경우 등

장 3-2 :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3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2	보육활동이 한두 가지 활동에 치우쳐 계획되어 있거나,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지 않는다.
1	보육활동이 주로 대집단 활동이나 일상적 양육이 대부분이다.

어린이집의 일과는 가정에서처럼 장애 영유아를 개별적으로 배려하기보다 집단생활로 이끌게 될 우려가 있다.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가 균형적이지 않아 주로 대집단 활동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활동만 주로하거나 반대로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활동만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균형 있게 촉진하기 어렵다.

어린이집에서 균형있는 보육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고른 발달을 이끌게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일과 중 대·소집단 활동과 개별 활동,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 일상적 양육과 보육활동, 교사 주도 활동과 장애 영유아 주도 활동을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학기 초일수록, 집단 내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가 크게 날수록 대집단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용히 앉아 집중하는 정적 활동과 움직임이 많은 동적 활동도 일과 중에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점심 및 간식이나 화장실가기, 씻기, 머리 빗기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양육 활동과 또래나 교사, 교구와 상호작용하는 보육활동도 모두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과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보육활동은 긴장과 이완, 장애 영유아 주도 활동 및 교사 주도 활동, 개별 및 집단참여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 안에는 교육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상적 활동까지 배려되어야 하며 균형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 보육활동 중에 교사와 장애 영유아(개별 및 대·소집단)의 상호작용, 장애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간의 상호작용, 장애 영유아와 교구와의 상호작용 등의 기회가 골고루 경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보육활동의 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된 보육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날의 장애 영유아의 상태나 반응, 교실의 상황, 주변 환경(날씨나 행사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적 양육활동을 더 많이 배정하고, 대집단 활동보다는 소집단 활동이나 개별 활동을 적절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적 활동이 교실 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발달수준에 적합한 일상적 양육과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실행하여 기록한다.

보육일지 작성 시 고려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일지에는 계획된 하루일과에 따라 실제 진행된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시간, 활동명과 내용을 기록한다.
- 보육일지는 실제 진행한 활동의 기록이므로 동일한 일과를 같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보육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 보육실이 달라 일과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각 반별로 보육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평정기준 보육활동 계획 및 실행의 균형, 계획에 따른 진행,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 경우이다. 하루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고자 한 경우이다. 즉 대·소집단 활동, 개별활동, 동적 활동 및 정적 활동, 그리고 일상적 양육활동과 놀이활동 시간, 교사 주도적 활동과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활동 시간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하루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위의 보육활동이 한두 가지 활동에 치우쳐 계획되어 있거나,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이므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보육활동이 한두 가지 활동에 치우쳐 계획, 실행되는 경우
  - 하루 일과가 대집단 활동에 치우쳐 실행되는 경우
  - 하루 종일 개별 활동만 실행되는 경우
  - 교사 주도적 활동이 장애 영유아 중심의 활동보다 많이 실행되는 경우
  - 하루 일과가 주로 정적 또는 동적 활동에 치우쳐 실행되는 경우
  - 급·간식, 기저귀 갈이, 수유, 낮잠 등 일상적 양육에 치우쳐 있는 경우 등
- 보육계획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계획되어 있으나, 대집단 활동으로만 진행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대집단 활동이 대부분이거나, 주로 조용히 앉아 집중하는 정적 활동 또는 움직임이 많은 동적 활동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보육활동이 한두 가지 활동으로만 계획, 실행된 경우
- 일상적 양육으로만 실행된 경우 등

궁금해요

Q. 일일보육계획안을 보육일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활동에 대해 실행 및 평가를 기록해야 하나요?

A. 일일보육계획안을 보육일지로 사용하는 경우, 일과 진행 후 일일 보육내용에 대한 실행 및 평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행 및 평가는 주요 활동 및 일과 진행 중 나타난 특별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단, 계획된 활동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부록 참조)

장 3-3 :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3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매일 2시간 30분 이상이고,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2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30분 미만이거나, 한두 영역의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
1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 미만이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장애 영유아가 개인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인 흥미 및 요구에 따라 보육실의 여러 흥미영역 활동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으로 주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이루어진다. 또한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장애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자신의 놀이 속도에 맞추어 시작과 끝을 맺는 개별 활동 시간으로 장애 영유아는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나 준비한 환경의 놀잇감을 선택하여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장애 영유아 스스로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을 흥미영역에서 만들어 사용하며 놀이를 확장해 가기도 한다. 장애 영유아는 자유선택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래와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실 내에는 모든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흥미와 요구, 능력을 사전에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교재, 놀잇감을 다양한 흥미영역에 미리 계획하고 환경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자유선택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놀잇감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별 흥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놀잇감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교사는 일과 중에 장애 영유아가 충분히 자유선택 놀이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흥미영역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여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놀이나 소집단 놀이가 확장되도록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대한 평가는 장애 영유아 현원의 70% 이상 등원하였을 때부터 남아 있는 종일반 장애 영유아의 자유선택활동 시간까지 포함됨

평정기준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방법,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이 흥미영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오전과 오후를 모두 합쳐 매일 총 2시간 30분 이상 골고루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때 실외놀이시간은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일과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2시간 30분 미만인 경우이다. 또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고 있으나 활동들이 한두 영역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지거나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관찰일 70% 이상 등원 시점에서부터 자유선택활동이 총 1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자유선택활동이 오전과 오후로 실행되나, 시간 기록이 전혀 없어 자유선택활동의 지속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장 3-4 :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3	실외활동 시간이 주 1회 이상이고, 다양한 실외활동이 이루어진다.
2	실외활동이 월 2~3회이거나, 한 가지 활동으로만 이루어진다.
1	실외활동이 월 1회 이하이다.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가 일과 중에 실내를 벗어나 햇빛과 바람, 하늘 등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외에서 장애 영유아는 대근육 움직임을 활발히 사용할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접하게 된다.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꽃이나 나무를 가까이하며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정서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내활동 뿐만 아니라 실외활동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여 장애 영유아가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주 1회 이상 실외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외활동 시간은 날씨, 계절, 장애 영유아의 건강상태, 감염병 유행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즉 여름날에는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실외활동을 계획하고, 겨울에는 햇살이 따뜻한 시간에 밖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가 오거나 황사 등 실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등 대체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외활동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지역사회 놀이터나 공원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 뇌병변 장애와 같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 실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베란다나 마당의 그늘에 나와 일광욕을 하거나 바깥 공기를 쐬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 영유아로 하여금 건강한 정서를 갖게 하고, 신체발달을 자극하게 된다.
-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자전거 타기나 미끄럼 타기, 달리기 등의 대근육 활동 뿐 아니라 술래잡기, 그림자 따라다니기, 바람개비 돌리기, 인형 옷 빨아서 말리기, 모래 파고

담기, 수로 만들기, 물로 그림 그리기, 사계절 꽃과 나무 또는 곤충 관찰하기, 식물 기르기, 나무 그늘에서 그림책 읽기, 음악 듣기 등이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연령이나 발달 특성, 장애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기준 실외활동의 실행, 시간, 운영 방법,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실외활동을 주 1회 이상 하며, 실외에서도 실내에서처럼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실내에서 게임이나 신체활동 등 대체활동을 하고 실행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외활동이 월 2~3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주 1회 이상 실외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제한된 놀이만 하고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의 실외활동을 월 1회 이하로 하는 경우이거나, 활동에 대한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되거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3-5 : 일과의 통합적 운영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3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구분하지 않으며,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2	일과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나누지는 않았으나, 통합성이 적다.
1	일과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나누어져 있다.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시간대별로 분리하여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별로 운영하는 방식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 장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통합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등원시간에도 장애 영유아의 수행수준에 따라 인사하기, 기본생활습관 형성하기, 자기 이름 인식하기 등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외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모이기,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오늘 날짜·날씨 이야기하기, 이름 부르기, 주제에 따른 이야기 나누기, 새 활동 소개, 일과소개 등의 전 과정을 통해서도 전인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일과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장애 영유아의 흥미가 반영되어 장애 영유아는 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만일 장애 영유아가 각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별로 분리된 치료활동에만 참여하게 된다면, 성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활동이 주도되기 쉬우며, 장애 영유아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보육실과 치료실을 완전히 분리하여 일상적인 보육활동과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장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장애 영유아의 보육과 치료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가지 치료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관련서비스 역시 일상생활에서 다른 장애 영유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일상적인 보육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분리됨이 없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되, 관련서비스 역시 일반 보육활동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후시간대에 24개월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특별활동이 실시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 영유아에게 별도의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오후시간대 :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 부모 동의서의 필수기재사항 : 프로그램명, 장애 영유아 이름, 부모성명(부모서명)

평정기준 일과의 통합적 운영, 관련서비스 및 특별활동 진행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일과를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예 : 언어치료 시간, 미술치료 시간 등)을 시간·공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즉, 일과 중 기본생활습관이나 일과적응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오후시간대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이 실시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 영유아에게 별도의 보육과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일과를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영역으로 나누지는 않았으나, 통합성이 적은 경우이다. 또한 오전 일과의 활동들이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오후시간대에 24개월 이상의 장애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실시하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경우이다.

- 특별활동 참여 장애 영유아에 대해 부모 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70% 미만인 경우
- 부모 동의서의 필수기재사항(과목명, 장애 영유아 이름, 부모성명(부모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 특별활동 불참 장애 영유아에 대해 별도의 보육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일과를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별로만 구분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특별활동 시간 기록이 없어 실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가 분리된 공간에서 시간을 바꿔 같은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일과를 진행하는 경우
- 특별활동을 오전시간에 실시한 경우
- 24개월 미만 장애 영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진행한 경우
- 특별활동 시간 기록이 없어 실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 비용을 수납하지 않으면 부모동의서가 없어도 되나요?

A. 특별활동 비용을 학부모가 납부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였을지라도,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한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장 3-6 : 사회적응 프로그램

장 3-6	사회적응 프로그램
3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자주 제공한다.
2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가끔 제공한다.
1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란 가족과 어린이집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생활공간에서 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 또는 활동을 말한다. 장애 영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에 친숙해지면서 경험을 쌓아 나간다. 그러나 하루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을 적절히 보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만약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볼 수 있는 곳이나 일상적 활동을 자주 경험하도록 한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생활주제와 연관지어 계획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예로는 동네 산책하기, 걸어서 가는 동네 공원가기, 가게에서 물건 둘러보고 사보기, 어린이집 울타리 내에 있는 텃밭 가꾸기, 가까운 시장이나 대형마트 가기, 동네에 있는 꽃집, 빵집, 과일가게, 주유소 등을 방문하기, 동네 특별한 행사 참석해 보기 등이 있다.
- 이동이 불편한 장애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 부모의 지원을 활용하거나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장애 영유아의 수를 조절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기준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실행, 관련 기록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 주변 동네 산책하기, 가게 가기, 공원 가기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한 달에 1회 이상 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두 달에 1회 정도 하는 경우이다.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거나, 두 달에 1회 미만으로 거의 하지 않는 경우, 활동에 대한 실행기록이 없는 경우이다.

장 3-7 :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3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진다.
2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나,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미흡하게 이루어진다.
1	보육과정을 평가하지 않거나,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육과정에는 개별 장애 영유아나 집단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연간, 월간, 주간 보육내용을 적절하게 계획할 뿐 아니라, 계획된 것이 제대로 실행되었는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과 이러한 평가 내용을 다음 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반영하는 것은 보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개별 장애 영유아가 어떤 보육활동을 경험하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보육과정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보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는 일일 보육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매일 진행하였던 활동과 자료가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하루 일과가 장애 영유아의 신체리듬과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진행된 활동 중 장애 영유아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활동의 시간 배정은 적절했는지, 어떤 점을 더 수정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한다.
- 주간 보육계획을 수행한 후 실제 진행된 활동과 추가로 진행된 활동, 진행되지 않고 변경된 활동 등의 이유와 장애 영유아의 참여 정도 및 흥미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여 두면 그 다음 주 보육활동을 진행할 때나 다음 해에 같은 주제에 대한 보육내용을 계획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계획한 활동과 실시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보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이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계획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번 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관찰은 모든 흥미영역에서의 놀이나 활동, 실내외 공간, 견학이나 행사, 일과의 모든 시간에서 장애 영유아가 나타내는 반응이나 행동을 고루 포함해야 한다.
- 개별 장애 영유아의 관찰 기록을 기초로 하여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도에 반영한다. 또한 모아진 관찰 기록들을 주기적(분기나 6개월)으로 종합하며, 이를 부모 면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장애 영아의 경우에는 우유 먹기,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기, 잠자기 등의 일상 양육에 대한 내용과 특별한 행동 등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관찰기록을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 간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면 시간동안 장애 영아의 얼굴 위치, 수면 시 움직임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 기록하여 장애 영아 돌연사에 대처하고 미리 예방하도록 한다.

평정기준 보육과정 평가, 장애 영유아 관찰 기록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있으며,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즉, 수행하였던 활동에 대해 교사회의 등에서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보육일지에 기록하며, 이를 참고로 새로운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별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찰 기록지에 다양한 놀이와 흥미영역, 행동 특성, 또래 간 상호작용 등을 고루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 과정을 월 1회 미만으로 평가하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이다. 또한, 개별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찰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일부 장애 영유아의 관찰기록이 월 1회 미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누락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보육과정 평가 내용이 미흡하여 보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내용이 없는 경우
  - 보육과정 평가가 "~좋았다, ~뿌듯하다" 등 하루 일과 진행에 대한 교사의 감상 위주의 서술로 보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내용이 없는 경우
  -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지나, 개선에 반영될 내용이 없는 경우 등
- 관찰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장애 영유아 관찰기록이 있으나, ○○영역 활동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경우
  - 장애 영유아 관찰기록이 있으나, 놀이 활동에 대한 내용만 있어 행동특성이나 또래 간 상호작용 등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과정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개별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찰 기록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다.

-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2개월에 월 1회 미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보육과정 평가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견학, 행사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진 경우
- 장애 영유아 관찰 기록이 2개월에 월 1회 미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

장 3-8 : 신체활동

장 3-8	신체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을 자주 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을 가끔 한다.
1	대근육 활동이나 소근육 활동을 거의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는 신체활동을 통해 안정된 자세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안전 능력, 사회성 발달 및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조 능력이 증진된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대·소근육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신체발달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즐거움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신체활동은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장애 영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대·소근육을 포함하여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움직임의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여 움직임의 강도, 자세조절, 눈과 손의 협응, 사물조작, 자세잡기, 이동능력, 수정능력, 일반화, 감각운동 기능의 통합, 공간지각 등을 위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신체활동은 장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과 소근육 발달을 기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 신체활동은 장애 영유아의 현재 대·소근육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매일 경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근육을 위한 신체활동은 주로 실외나 유희실 등 넓은 공간에서, 소근육을 위한 활동은 실내나 실외에서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대근육 활동은 오르기, 걷기, 뛰기, 내려오기, 던지기, 균형 잡기, 공굴리기, 밀기와 끌기, 계단 오르기, 터널 통과하기, 그네타기, 미끄럼 타기, 줄 타고 내려오기 등과 구조화 된 활동이 포함된다.

-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물리적 치료활동을 통하여 대근육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 소근육과 협응력 향상은 찢기, 구기기, 끼우기와 빼기, 자르기, 집기, 꿰기, 맞추기, 두드리기, 집어넣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능해진다.
- 신체활동을 통한 반복학습과 신체활동 시간은 장애 영유아의 체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짧게 계획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가 즐거워하고 흥미로워 하면 활동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

평정기준 신체(대·소근육)활동의 실행,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신체(대·소근육)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이다. 즉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실외나 실내 공간에서 다양한 대·소근육 활동을 매일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발달 수준에 맞는 높이의 경사진 기구를 오르고 내리는 활동이나 붕붕카 타기, 구르기, 공 던지기 등의 활동이 실외나 실내 공간에서 매일 이루어지며, 감각 능력을 촉진시키는 촉감 느끼기, 밀가루 반죽놀이 등의 활동과 소근육 발달을 위한 두드리기, 끼우기, 손가락으로 잡기 등의 활동을 충분히 실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신체(대·소근육)활동을 각각 가끔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대근육 활동이 주 3~4회 이루어지는 경우
- 소근육 활동이 주 3~4회 이루어지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신체(대·소근육)활동을 각각 거의 실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신체활동에 대한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대근육 활동이 주 2회 이하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근육 활동이 주 2회 이하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장 3-9 : 언어활동

장 3-9	언어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자주 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을 가끔 한다.
1	언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언어활동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따로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며,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고, 다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친구가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

기초적인 언어활동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이나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는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며 글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

언어발달은 언어 이해력이 발달된 후 이해된 말을 적절히 표현하는 표현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지체된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표현 언어에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의사소통 내용의 이해와 표현, 바른 진단을 통해 잠재력이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의 다양한 의사소통에 대한 진단결과와 이러한 능력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찰결과를 반영하여 적합한 언어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은 발달 단계에 적합하면서 친숙한 내용의 언어활동이어야 한다.
- 언어활동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네 영역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며,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다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교사가 이를 받아서 써줄 수 있다. 이 경우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 언어 경험이 장애 영유아기에 바람직하다.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해당 영역의 활동으로 인정

- 장애 영유아들은 대부분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폐, 정서장애, 청각장애 영유아에게도 공통적으로 언어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치료를 통해 언어가 발달되는 것은 아니고, 인지, 사회성, 운동성 등이 골고루 발달되어야 언어능력이 발달되므로 언어치료 뿐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동화, 동시, 동극은 장애 영유아의 언어적, 신체적 표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동화의 내용을 선정할 때는 흥미롭고 단순·명쾌하며 실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등장인물이 하는 말, 특이한 의성어, 의태어 등을 강조하여 준다. 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교사가 지정해서 참여를 도와주도록 한다.

평정기준 언어활동의 실행, 구성, 방법,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듣기, 말하기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도록 활동을 자주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들려주기, 교사나 친구의 이야기 듣기 등의 경험을 하게 하거나, 장애 영유아가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도록 책을 자주 읽어주고 읽은 글에 대해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경우, 자신만이 아는 글자로 쓰도록 북돋워 주는 경우 등이다. 또한 언어발달이 지체된 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해주며, 장애 영유아의 언어적 결함과 장애상태(예 : 청각장애)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을 가끔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네 영역에 관련된 언어활동이 주 3~4회 이루어진 경우

- 네 영역 모두 실행하나 한두 영역에 치우친 경우
  - 주로 이야기 나누기, 동화 듣기 등 말하기, 듣기 활동에 더 많이 치우쳐 이루어진 경우 등
- 대집단 중심의 지시적 활동에 치우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언어활동이 거의 실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 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네 영역에 관련된 언어활동이 주 2회 이하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네 영역 중 실행하지 않는 영역의 활동이 있는 경우
  - 끼적이기 활동이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경우
  - 주로 교재와 개별공책을 이용한 읽기, 쓰기 활동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언어활동이 동화책 읽기, 동화 듣기만으로 실행된 경우 등
- 언어활동이 대집단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언어활동이 학습지로만 이루어진 경우 등

장 3-10 : 기본생활 관련 활동

장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3	예절과 질서, 규칙 지키기, 정리정돈 등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자연스럽게 보육과정에서 제공한다.
2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가끔 하거나, 활동을 하더라도 교사 지시적으로 이루어진다.
1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기본생활 관련 활동이란 장애 영유아가 혼자서 옷을 입고 벗으며, 주변을 정리 정돈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간수하는 등의 자조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 영유아기에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기 이후의 삶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생활 관련 활동은 장애 영유아가 일생동안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기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및 타인에 대한 예절, 절제, 질서 지키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길러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생활에 관련된 행동은 한 번 형성되면, 형성된 것을 다시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행동을 습득하도록 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교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본생활 관련 활동 중에서 건강과 안전에 관한 부분은 해당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제외되었다.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 기본생활 관련 활동은 교사가 별도로 활동을 계획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관련 상황을 활용하여 장애 영유아가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물이나 간식을 먹을 때, 실외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을 때, 화장실을 사용할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 영유아가 많을 때, 원하는 책을 다른 친구가 먼저 읽고 있을 때 등의 상황에서는 자신이 먼저 하고 싶어도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질서 지키기나 양보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 기본생활 관련 활동은 반복적이지만 교사가 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도록 한다. 교사가 지시를 하게 되면 장애 영유아는 자신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교사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 개별 장애 영유아가 어떤 행동을 혼자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더 익혀야 하는가 등을 관찰하여 기록해 두고 이를 기초로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생활 관련 활동에는 일상생활에서 휴지를 보육실 내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놀이 후 정리정돈 하기, 자기 물건을 잘 보관하기, 등하원시에 교사나 부모에게 인사하기, 실외에서도 공공질서 지키기 등이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되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격려한다.
-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직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애 영아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시간을 길게 갖고 기본생활을 습득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 영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관련 활동을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웃옷을 완벽하게 입는 것은 처음에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장애 영아가 옷의 팔 한 쪽을 끼우는 것을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하다가, 이것이 될 경우 다시 다른 한쪽의 팔을 끼우기, 단추를 아래 몇 개만 스스로 끼우다가 위의 단추까지 서서히 모두 끼우기 등 단계적인 경험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평정기준 기본생활 관련 활동의 실행, 활동 방법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보육과정이나 일과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경험하는 경우이다. 정리정돈, 옷 입고 벗기 등 자조능력 키우기, 예절과 질서 지키기 등의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반복적으로 즐겁게 경험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자조 능력 기르기, 예절과 질서 지키기 등의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일상에서 제공하나 지도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대부분

교사 지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가끔 교사가 일방적으로 대신 해주는 경우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이다.

- 차례 지키기 등의 기본생활 관련 활동은 잘 이루어지나, 정리정돈은 교사가 해 주는 등 기본생활 관련 활동 기회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 교사가 옷을 입혀주는 경우
- 손 씻기, 이 닦기 등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대신 해주는 경우
- 장애 영유아에게 엄격하게 줄서기를 시키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다루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대신 해주는 경우이다.

장 3-11 : 사회성 증진 활동

장 3-11	사회성 증진 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자주 제공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가끔 제공된다.
1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비교적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낮으며, 또래에게 사회적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도가 낮고, 상호작용에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적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기회나 갈등해결,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또래들과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적절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성 증진 활동은 특별히 계획된 시간에 교사가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는 적절한 언어적, 행동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다른 장애 영유아나 성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장애 영유아가 다른 장애 영유아나 성인과의 놀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적절한 시작 행동 및 반응 행동을 지원한다.
- 게임, 신체표현 활동, 자유놀이 시간 외에 등하원 시간, 간식 시간, 화장실 가기, 실외놀이 등 여러 상황을 이용하여 교사는 개입과 상호작용, 의사소통과 짝 모델의 제공, 반응적인 성인의 태도 등을 통해 장애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켜 주도록 한다.
- 사회성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으로는 친구와 놀잇감 나누기, 협동하기,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눈 마주치기, 웃기, 손잡기, 인사 나누기 등이 있다.

평정기준 사회성 증진 활동의 실행, 활동 방법,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을 자주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즉, 위에 기술한 친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일상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자주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유놀이나 공동작업, 게임에서 협동하기, 간식 시간을 통한 나누기, 협동하기 등이 있으며, 교사가 "○○가 블록을 들고 오는데, △△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친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을 주 2회 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을 가끔 시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을 주 2회 미만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사회성 증진 활동을 거의 실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을 주 1회 미만으로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사회성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이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

장 3-12 : 자연탐구활동

장 3-12	자연탐구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자주 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가끔 한다.
1	수활동이나 과학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수·과학에 대한 개념은 단계적으로 발달하므로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과학활동 계획 시, 추상적인 자료나 경험을 제공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과 사물을 기초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수활동 경험과 탐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과 사물을 경험하면서 수 개념과 과학적 현상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가 수·과학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수 카드, 그림 자료 등과 같은 평면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암기하도록 하기보다는 실물 자료와 주변 생활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다양한 수·과학활동은 자유놀이시간, 간식시간, 과학활동, 요리활동 등 다양한 일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수활동은 모양·색·크기·길이에 따른 분류하기, 일대일 대응하기, 수 세기, 비교, 서열 등의 수 개념을 학습하는 활동 등이 있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과학활동은 우리 몸 탐색하기, 동·식물 관찰하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여러 가지 물체 탐색하기, 도구와 기계 관심 갖기 등이 있다.

평정기준 자연탐구(수·과학/탐색)활동의 실행, 자료 활용,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 활동을 자주 실행하고 실행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가끔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수활동을 주 1~2회 이루어지는 경우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과학활동을 주 1~2회 이루어지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수활동이나 과학활동을 거의 실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수활동을 주 1회 미만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과학활동을 주 1회 미만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장 3-13 : 예술활동

장 3-13	예술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자주 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가끔 한다.
1	음악·동작활동이나 미술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기의 보육일과에서 다양한 악기나 동작을 위한 소품, 주변의 자료나 폐품, 미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음악, 동작, 미술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험은 중요하다. 이러한 예술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때 즐거움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음악, 동작, 미술의 예술활동은 모두 장애 영유아가 매우 좋아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여러 미술 자료를 활용해 무엇인가를 그리거나 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애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활동을 접하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험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내부에 있는 독특한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건강한 정서발달을 돕는다. 따라서 표현활동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반응이나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장애 영유아가 똑같이 표현하고 따라하도록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표현이나 창의적 특성을 키우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 교사의 지시나 다른 친구의 반응을 따라서 완성된 결과(물)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과정을 즐기도록 격려한다. 다른 친구나 교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나 만드는 순서를 장애 영유아에게 보여주고 전체 장애 영유아가 똑같이 따라하도록 하는 것은 창의적인 표현 증진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보다 조금은 덜 정교하고 엉성하지만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술활동은 그리기와 자르기, 접기 등의 활동 외에도 입체 구성하기, 콜라주, 찰흙으로 구성하기, 노끈이나 실처럼 선을 이용하여 활동하기, 찍기, 붙이기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미술활동 자료는 종이 뿐 아니라 천, 비닐, 돌, 잎사귀, 과일껍질, 호일 등 주변의 다양한 재질을 활용하도록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미술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주며, 작품의 완성도나 속도, 순서에서 개인차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장애 영유아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음률활동의 예로는 주변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탐색해보거나 그러한 소리를 자신이 만들어보기, 다양한 리듬악기나 폐품악기 등을 이용해서 소리 내보기, 독특한 자신만의 리듬 만들어보기, 다양한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신체로 표현해 보거나 소품(예 : 스카프나 리본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해 보기 등이 있다.
- 장애 영유아가 친숙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악기부터 제공하도록 하며, 악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악기가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장애 영유아의 경우 선택의 폭을 2~3개로 줄여 준다. 노래는 언어지체를 가진 장애 영유아의 경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전체 곡을 다 부르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표현 가능한 부분(예 : 의성어, 의태어 등)을 부르도록 하여 참여를 이끈다.
- 교사는 예술활동 진행 시 장애 영유아의 단순하고 의도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도 격려하여,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한다.

평정기준 예술(음악 및 동작, 미술)활동의 실행,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자주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마라카스, 실로폰 등의 악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리듬이나 소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 등이 있다. 일부 장애 영유아는 교사가 들려주는 노래를 정확히 따라 부르지는 못하지만, 몸을 흔들어 리듬을 표현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크레파스와 같은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끼적거리거나 큰 붓으로 그리기, 도장 찍기, 종이 찢어 붙이기 등의 활동이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가끔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음악 및 동작활동이 주 1~2회 이루어지는 경우
- 미술활동이 주 1~2회 이루어지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음악·동작활동이나 미술활동을 거의 실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음악 및 동작활동이 주 1회 미만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미술활동이 주 1회 미만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장 3-14 :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가 자주 이루어진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가 가끔 이루어진다.
1	역할놀이나 쌓기놀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는 역할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또 사회적 지식을 재구성하고 사회 내 다양한 역할을 연습한다. 또한 쌓기놀이는 장애 영유아의 소근육과 대근육을 발달시키고, 공간지각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학습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역할놀이 시 함께 연계하여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 이에 장애 영유아의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가 자주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지원이 중요하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 흥미와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놀이를 위한 소품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주제를 선택하고 놀이의 역할 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 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가 계획하고 주도하고 특별한 날을 정하여 장애 영유아가 모두 같은 놀이(예 : 시장놀이, 서점놀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여러 종류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역할놀이의 주제는 장애 영유아가 경험한 다양한 사건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놀이, 병원놀이, 가게놀이 등 장애 영유아가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장애 영유아가 경험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놀이 주제가 가능하다.
- 역할놀이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교사는 적절히 놀이에 개입하여 놀이 친구로 참여(예 : 식당의 손님으로 참여하기, 식당의 주인 역할 하기 등)함으로써 놀이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 쌓기놀이는 단순하게 블록을 쌓아 무너뜨리는 활동에서부터 여러 도형이나 모양을 만드는 다양한 형태로 단계적으로 발전된다.
- 교사는 다양한 쌓기 놀잇감과 동물모형이나 사람모형, 자동차 등의 소품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여 장애 영유아의 흥미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평정기준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의 실행,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를 각각 자주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장애 영유아에게 가족놀이, 병원놀이, 가게 놀이 등 여러 종류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또 쌓기놀이를 할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배려하여 장애 영유아가 블록을 마음대로 쌓아보고, 구성하는 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를 각각 가끔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역할놀이가 주 1~2회 이루어지는 경우
- 쌓기놀이가 주 1~2회 이루어지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를 각각 거의 실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역할놀이가 주 1회 미만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쌓기놀이가 주 1회 미만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장 3-15 :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장 3-15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3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과 평가를 거쳐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교수목표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관련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를 진단할 때 한사람에 의해서 교육진단·평가 결과가 확정되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진단·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 영유아의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확한 교육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각각의 보육교직원이 진단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처음부터 공동으로 진단평가에 참여하는 협력진단 형태가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개별 치료활동이나 집단 치료활동, 짝 치료활동 등을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언어발달이 늦은 장애 영유아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언어치료활동, 감각운동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영유아에게는 감각운동 자극을 줄 수 있는 감각통합치료활동, 물리적 자극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에게는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지체된 부분을 자극하여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는 필요한 치료사가 어린이집에 없을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눈과 손의 협응력 및 소근육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작업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며, 소집단으로 물리치료활동을 실시하고 감각통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각통합훈련을 시행하도록 한다.
- 치료활동은 어린이집과 가정 등 장애 영유아가 자주 생활하는 생태적 환경에서 모두 협력하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평정기준 교육진단, 평가 및 관련서비스 제공, 기록의 지속성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활동 등이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진단되고 계획되어 적절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치료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누락된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대해 교육진단,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치료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대해 교육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특정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활동 관련 계획 및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영역

4 | 상호작용과 교수법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일상적 양육을 돌보고 보육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장애 영유아와 적절한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수전략을 사용하여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여야 한다. 영역 3. 보육과정에서는 보육내용에 대한 문서화된 계획과 진행하는 활동의 종류, 활동 간 통합적 접근 및 일과의 적합한 시간 구분 등이 포함된다. 반면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에서는 교사와 장애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또래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사가 수행하는 교수법 등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집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과정적 질을 평가한다.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와 흥미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경험을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은 물론, 장애 영유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상황마다 발달적, 개별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준다면 보육실의 전반적 분위기는 안정되고, 개별 장애 영유아의 자존감은 향상되며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일상적 양육, 교사의 상호작용, 교수법에 초점을 두고 장애 영유아의 식사, 간식, 낮잠 및 화장실 사용 시 교사의 상호작용,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는 태도 및 장애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한 반응,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서 교사의 개입, 보육활동에서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과 장애 영유아의 호기심 장려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부록 참조)
일상적 양육	장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			-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		○	보육일지
	장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			-
교사의 상호 작용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			-
	장 4-5.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			-
	장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			-
	장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			-
	장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			-
	장 4-9.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			-
교수법	장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			-

- 선정된 관찰반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 전체를 통해 평정한다.
  ※ 단, 보육교직원의 욕설, 체벌, 벌 세우기, 타임아웃 등 치명적 사례가 관찰될 경우에는 관찰반이 아니더라도 평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의 보육실(내용, 대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장 4-1 :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장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3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2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	교사가 집단 배식 및 급식에만 열중한다.

장애 영유아의 수유나 식사, 간식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 동안 장애 영유아는 개별적인 음식 선호를 발달시키고 음식의 냄새를 맡으며 즐거움을 느끼고, 배고픔을 채우면서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며, 안정감을 느끼고,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식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므로 교사는 즐겁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장애 영유아의 식습관과 자율성을 기르도록 한다. 교사는 식사하는 동안 장애 영유아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주의 깊게 들으며, 밝은 표정으로 적절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을 대하는 자세와 식사하는 자세, 먹은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 등을 통해 바른 식사 예절과 편식하지 않는 태도를 장애 영유아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유나 식사, 간식시간이 즐겁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수유나 식사, 간식 시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편안하고 즐겁게 이끌며, 개별적인 상호작용(예 : 개별 장애 영유아의 이름 부르며 대화하기, 식습관을 격려하고 칭찬하기)을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음식을 흘리거나 묻히며 지저분하게 먹는 모습, 느리게 먹는 것, 특정 음식에 대한 장애 영유아의 반응, 도구의 서툰 사용 등에 대해 어른의 기준에서 지도하지 않으며, 개인차를 존중하여 장애 영유아가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준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때 교사의 지도 없이 혼자 먹도록 방치하거나, 교사가 일방적으로 먹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모든 음식이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 영유아에게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천천히 지도한다. 간식 및 식사(수유)의 방법과 횟수, 턱받이·우유병·숟가락 등의 사용은 연령과 개인차, 개인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조절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수유를 하는 장애 영유아는 교사가 팔에 안고 우유병을 잡아주며,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

평정기준 식사와 간식 시간 시 개별적인 상호작용, 바람직한 식습관 지도, 자율성 격려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나 항상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는 경우이다.

- 교사와 장애 영유아 간의 대화가 적고 상호작용이 일방적이어서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식습관을 제대로 격려하지 못하는 경우
- 식사 분위기가 즐겁다 하더라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먹여주는 경우
- 장애 영유아가 혼자 먹도록 내버려두는 경우
-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하기보다 교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간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강요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집단 배식 및 급식에만 열중하는 경우이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지 못하고, 급·간식 시간 내내 배식과 급식, 수유에만 열중하거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대화 없이 식사하는 경우

- 일방적으로 먹여주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경우
- 장애 영유아에게 수유를 할 때, 교사가 장애 영유아에게 각각 우유병을 주고, 장애 영유아 혼자 우유를 먹게 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가 울거나 칭얼대지 않는 한 교사는 거의 개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 지저분하게 흘리거나 느리게 먹는 것을 탓하거나 서둘러 먹게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경우 등

장 4-2 :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3	낮잠 시간을 마련하여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한다.
2	낮잠 시간은 있으나,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나 개별적인 낮잠 습관 중 한 가지를 배려하지 못한다.
1	낮잠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한다.

장애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다투기 쉽고,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 영유아는 졸음이 올 때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나기 쉬우므로 연령에 따라 하루에 한 번 이상 낮잠 시간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의 낮잠의 유무, 낮잠 시간과 횟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종일반 장애 영유아는 일과에 반드시 낮잠 시간을 마련하여 적절한 수면을 포함한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낮잠 시간은 일과 중에 실행하며 기록하여 관리

- 영유아의 생체리듬은 오전 9시부터 상승하다가 11시가 지나게 되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효율적인 오후 활동과 하루 일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낮잠이 필요하다(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2002).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창문과 커튼을 쳐서 자연채광을 가리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편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그림책을 읽어 줌으로써 장애 영유아들에게 낮잠 시간 또는 휴식 시간임을 알게 한다.

- 낮잠은 장애 영유아의 연령과 개인차에 따라 개별적인 지도를 하도록 한다. 오래 자거나, 짧게 여러 번 자는 장애 영유아, 예민하여 조그만 소리에 잠을 깨는 장애 영유아, 잠들기만 하면 어떤 소리에도 방해받지 않고 잘 자는 장애 영유아, 우유병을 빨거나 일정한 베개나 이불, 인형이 있어야 잠을 자는 장애 영유아 등 매우 다양한 습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는 이러한 개인차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배려해야 한다.
- 기저귀를 사용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낮잠 자기 전에 기저귀를 반드시 갈아주면서 장애 영유아의 긴장감을 풀어주어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낮잠에서 일찍 깨어난 장애 영유아는 한 쪽에서 쉬거나 조용히 활동하도록 배려하고, 잠이 깬 장애 영유아를 안아 주며 기분 좋게 일어나도록 기다려 주고 대화한다.
- 교사는 낮잠을 계획하여 시도하였으나 낮잠을 못 이루는 장애 영유아에게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정기준 **낮잠시간(계획/실행기록), 잠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개별적 낮잠 습관 배려**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에게 낮잠 시간을 매일 마련하여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그들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의 낮잠 시간을 매일 마련하고 있지만,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거나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낮잠 실행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누락된 경우이다.

- 자연 채광을 차단하지 않거나 조명을 켜두어 보육실이 밝아서 잠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미흡한 경우
- 장애 영유아에게 베개나 이불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개별적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낮잠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모두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한 낮잠 실행기록이 절반 이상 대부분 누락된 경우이다.

- 낮잠이 필요한 종일반 장애 영유아인데도 낮잠 시간을 일과에 매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낮잠이 필요한 종일반 장애 영유아 중 일부 영유아가 낮잠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일부 종일반 장애 영유아의 경우,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종일반 장애 영유아에게 낮잠(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반드시 낮잠을 자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장애 영유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Q. 여러 반의 장애 영유아들이 하나의 보육실에서 낮잠을 자도 되나요?

A. 낮잠 시간의 보육실 사용은 원 상황에 맞게 운영 가능합니다만, 장애 영아의 경우 친숙한 공간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러 반의 장애 영유아가 한 보육실에서 낮잠을 잘 경우, 다른 장애 영유아의 낮잠을 방해하거나 잠들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 4-3 :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장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3	교사는 기저귀 갈기, 화장실 사용 시 장애 영유아가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개별적 상호작용을 한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에게 기저귀 갈기 시간이나 화장실 가기와 같은 배변 경험은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며 사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과 준비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고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나 장애 영유아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청결습관뿐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장애 영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장애 유아에게 배변 지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기저귀 갈기, 화장실 사용 중에 장애 영유아와 개별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손 씻기와 휴지 사용, 물 내리기 등과 같은 청결 습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 자율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줄 아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장애 영유아가 손을 잘 씻었는지, 옷은 바르게 입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를 갈아 주면서 신체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경험을 놀이처럼 진행한다.
- 장애 영유아의 배변 훈련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부모와 의논하고, 긍정적인 배변경험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실시한다. 배변 시 실수가 나타날 경우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차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평정기준 화장실 사용 및 기저귀 갈이 시 개별적인 상호작용, 장애 영아의 배변 훈련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기저귀 갈기, 화장실 사용 시 장애 영유아가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개별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준비 상태를 반영하여 배변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갈기와 화장실 사용에서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잘 수용하지 못하거나, 긍정적이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우
- 배변 훈련 단계에 있는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를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다.

- 교사가 하루 일과 중 절반 이상 장애 영유아의 개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 배변지도가 장애 영유아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경우
- 교사가 장애 영유아와 상호작용 없이 기저귀만 갈아주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배변 실수에 짜증을 내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도하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장애 영유아들이 화장실에 갈 때 마다 교사가 따라가서 도와줘야 하나요?

A. 장애 영유아가 화장실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교사가 매번 함께 가기 힘들다면, 장애 영유아가 화장실 사용 후 물 내리기, 손 씻기, 옷 입기 등을 바르게 하였는지 교사가 확인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장 4-4 :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3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독립된 개체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이를 표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성별, 발달적 지체 유무,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문화, 인종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이들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기초이며, 장애 영유아가 다른 사람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남을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 영유아가 존중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개별 장애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화를 나눌 때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는 것은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는 기본 태도이므로, 항상 장애 영유아의 이름을 불러준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는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관계없이 장애 영유아를 평등하게 대하며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교사는 주기적으로 교사의 언어, 사용하는 교재교구, 보육설비 등을 점검하여 여러 측면에서 편견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기회의 불평등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편견 교재(예 : 직업 역할에서 여자 소방수, 남자 간호사를 보여주는 책 등)가 출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내고 장애 영유아가 말놀이나 신체적 접촉 등을 통해 개별적인 관심을 보이며 장애 영유아의 불완전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기준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는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장애 영유아의 개인적 흥미를 존중해 주고,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며, 장애 영유아를 대할 때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에게 거칠게 대하거나 강압적인 억양으로 말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야, 너, 애' 등으로 위압적으로 부르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무시하거나, 어떤 장애 영유아의 특정 행동을 다른 장애 영유아 앞에서 부정적인 예로 지적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편견이 담긴 말을 하는 경우(예 :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너는 항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 남아와 여아에 따라 교사의 반응이 다르거나 놀잇감을 구분해서 제공하는 경우(예 : 소꿉놀이는 여아 중심, 공차기는 남아 중심)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장애 영유아에게 욕설을 하는 등 치명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궁금해요

Q.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에게 꼭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는 표현에는 관심 기울이기, 눈 맞추기, 의사 존중하기, 온화한 표정으로 맞이하기 등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의 높임이 아니라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충분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4-5 :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장 4-5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3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장애 영유아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개별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하며, 호기심이 왕성하여 성인에게 질문과 요구를 많이 한다.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흥미, 질문에 대해 누군가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준다면, 장애 영유아는 더 많은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개발하여 더 넓은 세상을 탐색하고자 할 것이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현재 장애 영유아가 무엇을 표현하려는가를 민감하게 알아내며, 그 내용을 이해하여 적절하게 반응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항상 일관적인 태도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의문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해 언어적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긍정적 끄덕임, 미소, 토닥거림, 약간 놀라며 신기해하는 얼굴 표정 등 비언어적으로도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선 수용해 주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때때로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화나고, 좌절감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울음, 화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더라도, 우선 장애 영유아의 이러한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 주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한 후에 장애 영유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분노, 좌절,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적인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나 다른 교사와 협의하여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교사는 이를 다시 분명하게 확인한다. 장애 영유아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함께 해답을 찾아보거나, 그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반응을 해준다. 만일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장애 영유아가 울음이나 행동(예 : 손으로 밀어내기), 얼굴 표정 등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경우에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파악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의 젖은 기저귀는 즉시 갈아주고 배고픔, 졸음, 아픔 등 신체적 욕구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평정기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장애 영유아의 질문이나 요구를 즉시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반응해 주며,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해주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이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성급한 반응이나 부적절한 반응이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

- 일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만 부분적으로 반응하거나 요구가 많은 장애 영유아에게만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등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
- 장애 영유아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다른 놀이를 하고 싶어 하나 이를 막고 특정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 일과 진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개별적인 대화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 중 절반 이상 자주 있는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대부분 무시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대부분 성급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등

장 4-6 :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장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3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하는 것은 교사와 장애 영유아 간의 신뢰감을 높이고 장애 영유아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며, 더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한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이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장애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 어린이집의 공간과 시간, 교사와 또래의 행동, 그리고 가정 배경 등이 장애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제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교사는 긍정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보육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긍정적 방법(예 : 칭찬과 격려, 이유 설명, 필요할 때 대안 제시 등)으로 지도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와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하고,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장애 영유아와 함께 이야기하며, 장애 영유아의 자율적인 행동을 칭찬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묻는다.
- 교사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모델이 되어야 한다.
- 가족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여 행동이 일어난 배경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평정기준 장애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지도 방법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대부분 긍정적인 방법으로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칭찬과 격려, 이유 설명, 대안 제시 등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이다.

- 교사가 대체로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나 가끔 위협이나 비판, 소리 지르기, 야단치기 등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하는 경우
- 상황, 시간대별로 교사의 지도방식에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 교사가 행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 부정적인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 체벌하거나 벌세우는 경우
- 교사가 행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등

장 4-7 :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장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3	교사는 나누기, 협동하기, 도와주기, 사이좋게 지내기, 배려하기 등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한다.
2	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끔 격려한다.
1	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거의 격려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는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교사는 교사와 장애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일과에서 자연스럽게 또래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격려해주며 긍정적인 모델을 자주 보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쌓기놀이영역에서 커다란 블록을 가져올 때 한 장애 유아가 무거워하는 것을 다른 장애 유아가 함께 들어주는 상황이 관찰되었다면, 교사는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다가 그 장애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여 준다. “무거운 블록을 ○○가 함께 들어주니까 △△의 기분이 어떠니?”, “○○이가 왜 블록을 함께 들어 준거야?”, “힘든 것을 ○○이가 도와줘서 △△이는 많이 고마운가 보다” 등 또래 간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이를 격려함으로써 또래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함께 지내는 또래에게 친밀한 관심 갖기, 긍정적 정서 표현하기, 또래와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기, 서로 배려하기, 또래를 도와주고 도움받기, 또래와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배우기 등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해 준다.
- 장애 영유아가 서로 웃고, 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편지를 주고 받는 등 긍정적인 정서를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이를 격려한다.
-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이들의 언어나 행동, 표정, 놀이 진행 과정 등을 잘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서로 간의 배려나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 장애 영유아가 또래보다는 교사에게만 상호작용을 시도할 경우,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교사가 일방적으로 행동을 지시하거나(예 : OO이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을 △△에게 나눠주자), 직접 교사가 해결하는 경우(예 : 교사가 놀잇감을 OO에게서 받아서 △△에게 준다)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게 된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끼리의 정서 표현(예 : 바라보기, 미소 짓기, 옹알이, 이름 부르기 등), 옆에서 놀기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해야한다. 이때 교사의 말(예 : OO이가 △△이를 보고 웃고 있네, OO이도 웃어줄까?)이나 행동이 장애 영유아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기 위해 교사가 영유아에게 제안 해 주는 경우(예 : OO야, OO를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에는 일방적인 지시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또래 반응을 설명해 준다(예 : 잘했어!, 고마워!, OO가 나눠주니까 △△이가 참 좋아하는구나! 등).

평정기준 교사의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일과 중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기, 협동하기, 도와주기, 사이좋게 지내기, 배려하기 등 또래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또래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일과 중 2~3회로 가끔 격려하는 경우이다.

- 교사가 또래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격려하나 대부분 교사의 일방적 지시를 통해서 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거의 격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 교사가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개입하지 않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격려하지 않는 경우 등

장 4-8 :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장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3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 참여하고, 놀이를 활성화시킨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놀이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의 자유놀이는 매우 영향력이 강한 학습과정으로 교사는 이들의 자유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실내외 자유놀이에 참여하고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현재의 상태 및 발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놀이 수준을 높여 주며, 놀이를 지속하게 해주고 통합적인 발달을 촉진하게 해준다.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자유놀이에 참여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교사는 자유놀이에 참여할 때 개별 장애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이나 흥미, 기질, 배경 등을 고려하여 그 놀이 방법이나 진행 방법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 특성이나 발달 수준을 잘 관찰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놀이가 단순히 반복되어 흥미를 잃게 되는 시점이나 다른 놀잇감이 필요할 때, 또는 놀이 친구가 필요할 때, 교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놀잇감을 제안하거나 놀이 상대로 개입하여 함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놀이가 지속되고 놀이의 내용이 확장된다.
- 장애 영유아의 연령과 놀이 종류에 따라 교사의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한다.

평정기준 자유놀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참여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 참여하고,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필요할 경우, 놀이 상대의 역할을 맡거나 놀잇감을 함께 가지고 놀고, 장애 영유아가 놀이에 흥미를 잃어 갈 때 다른 놀이를 제안하여 놀이를 확장하는 등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놀이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가 요구할 때에만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놀이 아이디어나 놀잇감을 제안하지만 놀이 상대로서 역할을 맡는 일이 드문 경우
- 교사가 한두 놀이에만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놀이를 적절히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
- 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사가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놀이 흐름이 끊기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 놀이에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관심이 없거나 놀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
- 교사가 자유놀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
- 일과 중 자유놀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장 4-9 :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장 4-9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3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원인을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2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교사가 해결해 주거나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끼리 다투거나 문제가 생길 때, 교사는 적절하게 개입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 간의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기보다 그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장애 영유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장애 영유아 스스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상황을 학습의 기회로 삼아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 개입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객관적 중재자로서 그 문제해결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가 타인의 입장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적절히 개입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장애 영유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장애 영유아 모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신중하게 경청하도록 한다.
- 교사가 상황을 판단하여 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보다 장애 영유아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준 후,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나 갈등 상황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
-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가 해결을 해주면 장애 영유아는 더 이상 자신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보다 교사에게 해결을 요청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려는 수동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 장애 영유아 간에 다툼이 났을 경우 교사가 다툼의 원인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고, 다툼을 종결시키고, 다투었던 두 장애 영유아를 벌세우는 등의 방법은 빠른 해결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 영유아가 원인을 서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누가 이 놀잇감을 먼저 갖고 놀았니?", "그럼 ○○가 잠시 더 갖고 놀다가 △△에게 양보하자" 등으로 교사가 장애 영유아에게 상황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교사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놀잇감 및 교구·교재를 마련해 주는 등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는 언어표현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적인 나누기와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평소에 잘 살펴서 문제 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정기준 문제 상황에 대한 교사 개입 및 방법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원인을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교사가 해결해 주거나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이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다툼에 개입하나 장애 영유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기회 없이 교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경우
-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에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파악은 전혀 하지 않고 다툼을 종결시키는 등 교사가 부적절하게 지도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거의 개입하지 않는 경우이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행동에 관여하지 않아 장애 영유아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 다툰 장애 영유아를 벌세우는 등 교사가 부적절하게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등

장 4-10 :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장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3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활동과 경험이 의미있게 연결되도록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2	교사는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육과정을 통해 장애 영유아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경험, 태도 등을 배우게 된다. 보육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보육과정의 목표가 달성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 영유아를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키우게 된다.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언제, 어떻게 경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적 판단은 장소와 시간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수법이란 교사가 어떤 의도로 언제, 어떻게 장애 영유아의 보육경험이나 활동을 이끌고자 하는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말한다. 교수법은 교사에 의해 계획된 목표에 따라 장애 영유아에게 정보를 주거나, 기술습득의 모델을 보여주는 교사 주도적 접근법과 장애 영유아 스스로의 흥미와 행동 등을 통해 그리고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는 장애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이 있다. 교사가 이러한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지식이나, 보육현장에서 축적된 경험, 아동관, 보육신념 등과 더불어 장애 영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 흥미, 사전경험의 정도, 새로운 상황에 접근할 때의 반응방식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교수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고, 판단, 태도, 신념, 전문적 능력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보육활동을 진행할 때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활동 상황에 적합한 질문을 하고, 장애 영유아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장애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교사 주도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예로는 장애 영유아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실물이나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기 등이 있다. 교사 주도적 교수법을 활용할 경우라도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때때로 장애 영유아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학습경험이 전환될 수 있다.
- 교사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주의집중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흥미로운 도입 활동(예 : 손유희 등)으로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애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예로는 장애 영유아가 직접 탐색하고 실험하도록 지원하기, 장애 영유아의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기,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 영유아가 어떤 개념이나 활동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배우도록 격려하기 등이 있다. 이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탐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 교사는 활동의 내용과 상황 등에 따라 교사 주도적 접근법과 장애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보육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교수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물의 명칭을 배우는 것과 같이 장애 영유아에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이나, 찰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의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을 탐색하는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를 충분히 기다려 주고, 스스로 활동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정기준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활동과 경험이 의미있게 연결되도록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활동에서 교사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는 경우
- 장애 영유아에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요구되는 활동에서 교사가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집중이 가능한 시간 이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인 경우이다.

- 활동을 하는 내내 통제와 지시로 일관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설명을 길게 하는 경우 등

영역
5 | 건강과 영양

장애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균형 있는 영양이 필요하며,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다. 장애 영유아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고,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 실내 공간의 위생과 청결은 어릴 때부터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는 집단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몸이 아픈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하고 다양한 식재료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조리된 식단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는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집 내 각 공간의 청결과 위생, 장애 영유아의 위생적 생활습관 지도, 몸이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여부,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그리고 장애 영유아의 식사와 간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부록 참조)
청결과 위생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			
	장 5-3. 놀잇감의 청결	○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			
	장 5-5.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			
	장 5-7.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			
	장 5-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	○		
질병 관리	장 5-9.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	○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 응급처치동의서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	○	○	투약의뢰서, 투약일지
	장 5-11.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건강검진 관련 서류, 가정통신문
급식과 간식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		○	식단표, 급식 시행 기록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		○	식단표, 간식 시행 기록

-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인가공간이 아닌 장소에 조리실,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미흡한 수준'으로 평정한다.

장 5-1 : 실내 공간의 청결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3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다.
2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공간이 한두 군데 있다.
1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공간이 세 군데 이상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이 낮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장애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개별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육활동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성인에 비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은 물론 공유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등)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이들의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은 아래와 같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즉, 보육실은 물론 공유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을 매일 청소하며, 청결상태도 매일 점검한다.
-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 공유공간 포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한다.
- 현관은 항상 잘 정돈되어 있고, 복도와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된다.
- 모든 보육실의 바닥, 천정, 창문과 창틀, 교구장, 책상, 의자, 바구니, 사물함 뒷편 구석진 곳 등도 청결상태를 잘 유지한다.
- 모든 보육실의 흥미영역에 깔려 있는 공동매트도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일광 소독하여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청소도구(걸레, 빗자루 등)와 보관함, 휴지통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처리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 공유공간 포함)에 바퀴벌레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과 위생관리에 유의한다.

평정기준 실내공간의 청결 상태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한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경우이다.

- 보육실 중 한 반이라도 청결하지 못한 경우
  - 바닥이 먼지뭉치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교구바구니가 먼지와 찌든 때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천정과 벽면이 거미줄과 먼지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창틀과 벽걸이형 선풍기가 먼지 등으로 인해 청결하지 않은 경우 등
-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현관과 복도, 식당, 계단 등의 실내 공간 중 한 군데라도 청결하지 못한 경우
- 장애 영유아들이 실내화를 실내외 구분 없이 신고 다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곳이 세 군데 이상 있거나 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장 5-2 :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3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애 영유아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하여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보육실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하여야 하며,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는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 보육실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장애 영유아가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 등 계절에 맞게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장애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관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등원 전, 놀이 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 시간 후 등에 자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보육실 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환기를 위한 노력(예 : 공기청정기 등)을 하도록 함
- 겨울철에도 자주 창문을 열어 수시로 환기를 시킨다.
- 보육실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하여야 하며, 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한지)를 부착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블라인드)을 치는 등 햇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보육실을 포함한 어린이집 실내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 흥미영역에서 책을 읽거나 놀이 활동을 할 때에 어둡거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를 유지한다.
- 어린이집 실내에 전반적으로 전등의 수가 부족하거나 조명의 조도가 낮아 어두워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밝기를 유지한다.
-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 등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 보육실 외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다른 실내 공유공간(예 : 유희실 등)도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평정기준 환기, 채광, 조명, 온도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모든 보육실에서 환기, 채광, 조명, 온도가 모두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실내 환기를 자주하여 보육실에 탁한 공기가 느껴지지 않으며, 필요한 곳에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날씨와 계절에 맞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보육실 외 공유공간(예 : 유희실 등)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도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실이나 공유공간에서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실내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가 탁한 경우
- 썬팅지(한지), 커튼(블라인드) 등이 창문을 절반 이상 가리고 있어 자연채광이 미흡한 경우
- 필요한 영역에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날씨와 계절에 맞는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너무 춥거나 더운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실이나 공유공간에서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장 5-3 : 놀잇감의 청결

장 5-3	놀잇감의 청결
3	놀잇감이 전반적으로 청결하다.
2	놀잇감 일부가 청결하지 않다.
1	놀잇감 대부분이 청결하지 않다.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의 청결유지는 장애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보육실에서 장애 영유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을 자주 세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진드기나 감염성 세균 등이 번식해 자칫 장애 영유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놀잇감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보육실의 놀이 환경이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놀잇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보육실, 집단활동실, 놀이터 등) 에 있는 플라스틱 블록이나 인형, 헝겊 놀잇감, 소꿉놀이 도구 등의 놀잇감을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한다.
- 놀잇감은 재질에 따라 천으로 닦아주거나 비눗물 세척, 일광 소독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여기서 잠깐!

놀잇감 세척 방법

- 원목 놀잇감, 나무 블록은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서 건조시킨다.
- 헝겊 놀잇감은 수시로 먼지를 털어내고 자주 세탁한다.
- 플라스틱 놀잇감은 따뜻한 비눗물에 담가 세척한 후 헹구어 말린다.
- 고무 놀잇감은 영유아용 세제 등을 이용해 스펀지로 닦고 말린다.

- 특히 장애 영유아는 놀잇감을 입으로 탐색하려는 발달 특성이 있으므로 더욱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놀잇감이 청결하지 못하면 구강염 등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입에 넣고 빨기 쉬운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하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실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놀이기구(예 : 이동식 및 고정식 기구)를 먼지나 찌든 때가 묻어있지 않고 녹이 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평정기준 놀잇감의 청결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놀잇감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놀잇감의 일부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이다.

- 놀잇감이 더럽거나 찌든 때가 보이는 경우
- 녹이 슬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 입에 넣고 빨기 쉬운 놀잇감이나 리코더, 멜로디언 등 입에 직접 닿는 놀잇감을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놀잇감 대부분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이다.

- 보육실 놀잇감 중 한 반이라도 절반 이상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유희실에 있는 놀잇감 중 절반 이상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놀이터에 있는 놀잇감 중 절반 이상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등

장 5-4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3	화장실과 세면장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2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나 비품 구비가 미흡하다.
1	화장실과 세면장이 청결하지 않거나,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실내외 놀이 활동 및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세면장은 장애 영유아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이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 역시 장애 영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곳으로 변기 사용 후 신속하게 뒤처리가 되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오물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면장과 화장실에서는 빈번하게 물을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발생하여 세균 번식을 일으켜 장애 영유아의 건강상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건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면장과 화장실에는 필요한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는 전반적인 청결관리, 변기 사용에 따른 신속한 후속 처리, 그리고 비품관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은 항상 쾌적하고 건조하며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과 중 수시로 확인한다.
- 변기 사용 후 오물 내리기 등과 같은 후속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변기를 자주 세척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에는 마른 수건, 비누, 휴지, 휴지통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교체하여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관리를 위해 청소 도구와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되,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가는 공간과 세정공간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해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저귀 가는 공간과 세정 공간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곳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세균 감염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특히, 기저귀 갈이대의 경우,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갈이 시 오물이 묻거나 균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저귀를 갈 때마다 닦고 소독하여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기저귀 갈이대 위에 종이타올 등 별도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저귀를 갈때마다 깔개를 교체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
- 기저귀를 가는 공간에는 기저귀, 옷가지, 물휴지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기저귀 갈이 시, 일회용 위생장갑 사용 보다 손 씻기(또는 손세정제 사용) 권장
-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오물(대·소변 등)을 바로 처리하고 변기를 세척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평정기준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변기 사용 후 신속한 후속처리 포함), 비품 구비, 기저귀 가는 공간의 청결, 기저귀 갈이용 비품의 구비 및 사용 후 처리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화장실과 세면장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비품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사용한 물품이 청결하게 즉시 처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비품이 항상 갖춰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나 비품 구비가 일부 미흡한 경우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가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과 세정공간의 청결상태나 비품구비가 일부 미흡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화장실과 세면장이 일부 청결하지 못한 경우
  - 화장실 변기와 바닥에 찌든 때가 있는 경우
  -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이 젖어있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화장실 내 변기의 오물(대·소변 등)을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여러 명의 장애 영유아가 연달아 변기를 사용한 후 한꺼번에 물을 내리는 경우
  - 젖은 수건이 반나절 이상 교체되지 않는 경우
  - 하수구 냄새나 나프탈렌, 소독액 등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
  - 화장실의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
  - 휴지가 넘치는데도 휴지통을 비우지 않은 경우 등
-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공간의 청결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사용한 후에 기저귀 갈이대를 닦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사용한 후에 기저귀 갈이대를 닦지 않고 소독액만 뿌려 사용하는 경우
  - 기저귀 갈이대를 장애 영유아들이 밟고 다니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 사용한 기저귀나 위생용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보육실 내 이동식 변기의 오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등
- 비품구비가 일부 미흡한 경우
  - 필요한 비품 중 한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기저귀 가는 장애 영유아반 보육실의 휴지통에 뚜껑이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화장실과 세면장이 청결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또는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공간이 청결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또는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이 청결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이 젖어있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인 경우
  - 화장실과 세면장이 대부분 청결하지 못한 경우
  - 어린이집의 인가 공간 내에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없는 경우 등
-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공간이 청결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 사용한 기저귀 갈이대를 닦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인 경우
  - 사용한 기저귀나 위생용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 보육실 내 이동식 변기의 오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등
  -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이 없는 경우
  - 놀이매트나 이불 위에서 기저귀 갈이를 하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기저귀 갈이대가 항상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요?

A. 기저귀 갈이대의 경우, 고정식으로 설치하여도 되고 이동식으로 구비하여 필요시마다 꺼내어 사용하여도 됩니다.

궁금해요

Q. 배변훈련 단계의 장애 영유아가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이때에도 기저귀 갈이대에 눕혀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나요?

A.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서서 기저귀 갈이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기저귀 갈이대 등 지정된 공간에서 기저귀 갈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공간이 아닌 일반 공간에서 기저귀 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결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흡한 수준'으로 평정합니다.

궁금해요

Q. 기저귀 갈이 시 반드시 일회용 위생장갑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갈이 시, 오물이나 균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저귀 갈이대의 소독과 교사의 손 씻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의 손 씻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소독제나 일회용 위생장갑을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 위생장갑 사용을 줄이고, 손 씻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해 보는건 어떨까요?

장 5-5 :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장 5-5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3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2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 상태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 상태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조리실은 장애 영유아의 식사와 간식이 준비되는 곳이므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조리실은 매일 청소와 소독을 하고 자주 환기하는 등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냉장고와 개수대, 조리대, 조리실 비품과 식기류 등 또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컵이나 우유병 등을 먼지나 습기가 없는 곳에 청결하게 보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장애 영유아가 감염병(예 : 배탈, 설사, 구내염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리실 공간 및 설비, 비품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조리실 바닥, 벽 및 천장 등 전반적인 조리실 공간에 대한 청결관리와 환기가 매일 잘 이루어진다.
  -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조리실은 평정 대상에 포함됨
- 조리실의 개수대 및 바닥 하수구에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매일 청결하게 관리하고, 조리대, 싱크대, 식기수납장 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조리실의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등에 찌든 때가 없도록 매일 청결하게 관리한다.
- 조리실의 냉장고는 내부를 정리정돈하며, 음식물이나 때가 냉장고 안팎에 묻어 있는지 매일 확인하여 세제와 물로 잘 닦은 다음 소독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의 주방 가전도 매일 청결하게 관리한다.
-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사항

- 세균 번식이 쉬운 도마는 용도별(육류, 어패류, 채소, 조리 완제품)로 서로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하나의 식칼로 생선, 육류, 채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다루게 되면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재료를 육류, 어패류, 채소, 조리완제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칼을 사용하고, 사용 후 위생적으로 소독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행주는 용도에 따라 조리용, 기구용,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에는 매일 살균처리하여 건조하게 보관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펀지, 양면 수세미는 세균이 손이나 조리기구 등에 부착하여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척, 살균하여 건조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식기세척용, 조리기구 세척용, 오염된 물받이 등 기타 세척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 식기류(예 : 접시, 식판, 수저 등)는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 장애 영유아용 물컵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 장애 영유아용 개별 컵을 준비하거나, 청결한 컵을 여러 개 비치하고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장애 영유아가 물을 마실 때 같은 컵을 쓰지 않도록 한다.
- 수유가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 항상 소독이 된 청결한 상태의 우유병과 젖꼭지를 사용한다.

평정기준 조리실 공간, 설비, 비품의 청결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조리실 공간과 설비 및 비품(장애 영유아용 물컵, 우유병 포함)이 청결하고 위생적인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조리실 공간과 설비 및 비품(장애 영유아용 물컵, 우유병 포함)의 청결과 위생관리에서 한두 가지 정도 미흡한 경우이다.

-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환기)의 청결이 미흡한 경우
- 개수대 및 바닥 하수구(조리대, 싱크대, 식기수납장 등 포함)의 청결이 미흡한 경우
-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의 청결이 미흡한 경우
-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주방가전의 청결이 미흡한 경우
-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의 청결이 미흡한 경우
- 식기류(접시, 식판, 수저 등)의 청결이 미흡한 경우
- 장애 영유아용 물컵 및 우유병의 청결이 미흡한 경우
- 물컵을 사용 전·후 구분 없이 재사용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조리실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과 위생관리에서 세 가지 이상이 미흡한 경우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인가 공간 내에 조리실이 없거나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5-6 :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3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간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가 섭취하는 급·간식의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식자재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유통기한 내 사용하며, 식자재 보관 요령을 준수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조리 과정과 배식 과정 모두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단체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식중독 등)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신체적 성장과 건강 유지가 가능하다.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원할 때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곳에 마실 물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모유나 우유를 관리하는 과정도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바람직한 식자재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모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소비기한, 식품구입날짜 등을 표기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한다.
  - ※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음식(수입식품 포함)
  -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예 : 공공기관용, 사회복지관용, 유치원용 등)는 평정 대상에 포함됨
- 각 식재료별 보관 방법을 확인 후, 그에 맞게 냉장, 냉동, 실온 보관하며, 선입선출을 지킨다.
-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반드시 폐기하고, 우유 등과 같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식품이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마실 물의 경우 장애 영유아들이 원할 때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장애 영유아들에게 제공한다.
- 장애 영유아들이 마실 물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한다.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 꼭지와 필터는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를 꼭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위생적인 조리과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다음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사항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앞치마, 머릿수건,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한다.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으며, 작업 시 맨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생장갑을 사용한다(맨손 조리 허용 작업 : 채썰기, 찢기, 껍질 벗기기, 과일 전처리).
-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귀걸이, 반지, 시계, 팔찌 등을 착용하거나, 매니큐어 등을 바르고 조리하지 않으며, 조리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의 상처 등).
- 식재료 준비 작업 후 싱크대를 세척, 소독한 후 조리작업을 실시한다.
- 조리된 음식의 맛을 볼 때에는 별도의 맛보기 스푼을 사용해야 한다.
-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식중독균을 완전 사멸시키거나 안전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열온도로 조리해야 한다.
- 육류, 가금류, 어패류 등을 가열처리할 때 중심부가 완전히 가열되었는지 확인하고 음식을 수시로 저어 음식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생적으로 배식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식탁은 급·간식 전후로 닦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교사는 각각의 음식마다 집게 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배식관리를 한다.

평정기준 식자재(식수, 모유, 우유 포함)관리, 조리 과정, 배식 과정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식자재(식수, 모유, 우유 포함),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식자재(식수, 모유, 우유 포함)나 조리 및 배식 과정에서 한두 가지가 미흡한 경우이다.

- 냉장고에 별도에 덮개 없이 음식물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 장애 영유아들이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우유를 실온에서 보관하는 경우
- 먹다 남은 분유를 다시 먹이는 경우
-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앞치마나 머릿수건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나의 식기도구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는 경우
-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음식을 배식하는 경우
- 청결하지 않은 손이나 맨손으로 음식을 배식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들의 급·간식 전에 식탁을 닦지 않는 경우
- 음식물을 보육실 바닥에 그냥 내려놓는 경우
- 개별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 여러 명이 함께 먹는 경우
- 장애 영유아들이 사용하던 숟가락을 교실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씻거나 교체해 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식자재(식수, 모유, 우유 포함)나 조리 및 배식 과정에서 세 가지 이상 미흡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및 재료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썩었거나 곰팡이가 있는 등 상태가 변질된 식자재가 있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의 인가 공간 내에

조리실이 없거나(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관찰이 불가능하여 식자재나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항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수입식품 포함 /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중 유통기한이 경과 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부적절사례에 해당된다.

궁금해요

Q. 마실 물은 반드시 교실에 비치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원할 때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곳에 마실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이용하기 쉬운 곳이라 함은 영유아의 활동공간으로 보육실, 복도(보육실이 위치한 같은 층의 복도) 등 이동하기 편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장 5-7 :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장 5-7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3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통해 위생과 청결을 유지한다.
2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는 자주 손을 씻음으로써 식중독, 감기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장애 영유아의 손은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이나 실외활동을 통해 먼지와 세균에 오염되기 쉽다. 따라서 화장실 사용 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후 등에 자주 손을 씻는 것은 장애 영유아가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또한 일과 중에 교사도 장애 영유아와 함께 자주 손을 씻어 장애 영유아를 위생적으로 보살피고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장애 영유아들이 청결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점심식사 이후 반드시 이 닦기를 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청결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올바른 이 닦기 방법을 장애 영유아에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칫솔도 세균이 감염되거나 번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반드시 이 닦기와 손 씻기를 해야 하는 경우와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는 대소변 이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이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교사는 출근한 후, 장애 영유아의 배변 지도(기저귀 갈이) 후, 식사(수유) 및 간식 전후, 실외활동 후, 투약하기 전, 장애 영유아의 콧물을 닦아준 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손 씻기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 세정제(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위생장갑을 매번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점심 식사 이후 이를 닦아야 한다.

- 어린이집과 보육실 내 설치된 화장실에 장애 영유아가 바르게 손을 씻는 순서와 이 닦는 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하여(예 : 그림판) 장애 영유아 스스로가 올바르게 손을 씻고 이를 닦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칫솔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세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가 나기 전의 장애 영아는 수유 후 가제 손수건에 끓였다 식힌 물을 살짝 적셔 잇몸을 닦아 주며, 이가 나기 시작하면 손가락 칫솔 등에 영아용 치약을 묻혀 잇몸을 마사지하고 이를 닦아준다.

장애 영유아가 손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할 때

〈손 씻기〉

- 음식을 먹기 전
- 실외활동 후
- 손이 더러워 보이는 경우
-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 대소변 후
- 애완동물을 만진 후

〈이 닦기〉

- 점심식사 후

교사가 손을 씻어야 할 때

- 출근한 후
- 음식을 다루거나 먹고, 마실 때
- 장애 영유아에게 음식을 먹이기 전
- 투약(특히 안약)을 하기 전
- 상처를 소독하거나 밴드를 붙이기 전
- 변기 사용 후,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유아의 변기 사용을 도와준 후
- 실외활동 후
- 애완동물을 만진 후
- 익히지 않은 육류와 가금류를 만진 후
- 쓰레기통 사용한 후
-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 손에 낀 일회용 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벗은 후
- 손이 더러워 보이는 경우

평정기준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손 씻기, 이 닦기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와 장애 영유아 모두 배변(지도) 후, 식사와 간식 시간 전, 실외활동 후 등 필요한 때에 반드시 손을 씻으며, 식사 후에 모든 장애 영유아가 이를 닦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와 장애 영유아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 교사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할 때 씻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인 경우
  - 일회용 비닐장갑을 매번 교체하여 사용한 후 마지막에 손을 씻지 않은 경우
  - 손 세정제(소독제)를 매번 사용한 후 마지막에 손을 씻지 않은 경우 등
- 장애 영유아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할 때 씻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인 경우
  - 점심식사 전에 장애 영유아가 모두 손을 씻지 않은 경우 등
- 장애 영유아가 이 닦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장애 영유아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이다.

- 교사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할 때 씻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인 경우
- 장애 영유아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할 때 씻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인 경우
- 장애 영유아가 이 닦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장애 영유아의 절반 이상인 경우
- 손 씻기와 이 닦기에 대한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보육실과 화장실의 거리가 멀어 장애 영유아들의 손 씻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손 씻기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점심식사 및 간식 전, 실외활동 후, 화장실 사용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궁금해요

Q. 여러 명의 장애 영유아에게 연속하여 기저귀 갈이를 하거나 약을 먹일 때 매번 손을 씻어야 하나요?

A. 장애 영유아에게 투약하기 전, 기저귀 갈이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매번 손을 씻어야 하며, 손 씻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손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손세정제를 사용할 경우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장 5-8 :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장 5-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3	장애 영유아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구 등을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장애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침구의 청결상태가 미흡하다.
1	장애 영유아가 공동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

잠자리 위생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된다. 장애 영유아가 침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서로 감염성 균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 영유아는 각기 자신의 개별 침구(베개와 이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침구의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굳이 이름을 써놓을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맞춘 침구는 개별 장애 영유아가 각각 자기 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하는 등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개별 침구의 세탁은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모가 가정에서 세탁하는 경우 교사는 청결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침구의 위생적인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가 낮잠을 잘 때에는 개별 침구를 사용해야 하며, 요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다.
  ※ 개별 침구는 베개와 이불을 개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낮잠 자는 장애 영유아의 수만큼 개별 침구를 마련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침구를 마련한다.
- 장애 영유아의 땀, 침 등 분비물, 대소변 등으로 침구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개별 침구 및 요 등은 주 1회 이상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개별 침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 여분의 침구는 사용할 때마다 시트를 교체하거나, 세탁한 후 다른 장애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 영아용 개별 침구는 너무 푹신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기준 개별 침구(여분의 침구 포함) 구비 및 사용, 청결 상태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각 침구가 청결한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나, 침구의 청결상태가 미흡한 경우이다.

- 개별 침구에 오물 등이 묻어 있어 지저분한 경우
- 침구 보관장에 먼지가 많은 경우
- 침구 보관장에 침구와 다른 물건들을 함께 보관하여 침구가 오염되는 경우
- 놀이매트를 그대로 요로 사용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모든 장애 영유아의 개별 침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 침구(베개나 이불)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낮잠을 자지 않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여분의 침구가 없는 경우이다.

- 개별 구분 없이 침구를 사용하는 경우
- 공동 요를 사용하면서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이불을 여러 명이 함께 덮는 경우
- 여분의 침구를 사용 후 바로 세탁하지 않고 다른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쌍둥이 형제는 하나의 침구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A.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 영유아는 최소한 베개와 이불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쌍둥이형제라도 침구는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 5-9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장 5-9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3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한다.
2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다.
1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들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다. 장애 영유아가 아픈 경우에는 일상적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를 양호실이나 조용한 곳에 격리시켜 보호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 또한 응급처리가 필요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미리 준비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송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린이집에서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어린이집의 방침과 절차(예 : 응급처치동의서 등)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 응급처치동의서의 필수기재사항 : 보호자의 비상연락망, 의료기관 등
  - ※ 응급처치동의서는 부모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귀가동의서와 통합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부록 참조)
- 어린이집에서는 응급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약품(혹은 구급상자)을 구비한다.
  - ※ 약품의 종류는 평정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에서 관련 규정과 필요에 따라 구비
- 약품은 종류별로 사용(유효)기한을 표기하여 사용(유효)기한이 지나거나 표시가 없는 약품이 없도록 관리한다.

• **구급상자에 갖추어야 할 내용물**

의료용 재료	외용제	주의 사항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어린이집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말 것
-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은 금할 것
-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것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알릴 것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할것

※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08),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

평정기준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처리절차, 응급처치동의서, 비상약품 관리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경우이다. 즉 아픈 장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방침(예 : 응급처치동의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교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유효)기한이 명시된 비상약품을 구비하여 잘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방침(예 : 응급처치동의서 등)의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된 내용이 경우 등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있으나,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장애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가 누락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비상약품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방침(예 : 응급처치동의서 등)의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된 내용이 있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없는 경우
  - 응급처치동의서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응급처치동의서가 장애 영유아의 절반 이상 누락된 경우 등
- 어린이집에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사용(유효)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약품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무허가 약품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

장 5-10 :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3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지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1	투약의뢰서나 투약일지가 없다.

장애 영유아는 상시 복용하는 약물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투약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부모는 반드시 서면으로 투약을 의뢰, 요청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투약한 내용에 대한 보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약 후 이상 반응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투약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아픈 장애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투약한 내용에 대한 보고 관련 기록(예 : 투약일지)을 유지한다.
- 투약의뢰서의 필수기재사항 :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시간, 의뢰자

  ※ 투약의뢰는 알림장, 대화수첩, 스마트알림장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음.
- 장애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상온, 냉장보관 등 보관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평정기준 **투약의뢰서, 투약일지, 투약할 약물 관리**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에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관리(복용여부, 시간, 횟수, 복용량, 효과관찰 등)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지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이다.

-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으나 일관성있게 시행되지 않으나, 투약할 약품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의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
-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의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의 기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투약의뢰서나 투약일지가 없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이다.

궁금해요

Q. 스마트 알림장을 이용하여 부모님께 투약의뢰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관찰을 위해 모두 출력해두어야 하나요?

A. 스마트 알림장을 이용하여 투약의뢰 및 보고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PC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 5-11 :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장 5-11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3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나,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하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기는 감염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시기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장애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이를 다른 장애 영유아에게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모든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감염병에 대한 대책의 필수기재사항 : 장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예 : 수두, 볼거리, 홍역, 수족구, 독감, 뇌염 등)의 증상,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가정통신문, 게시판,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 건강검진 실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장애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이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문서화한다.

▌어린이집의 모든 장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한다.

  - 모든 원아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확인 서류를 구비하도록 한다.

    ※ 신규 입소 원아의 경우에도 반드시 건강검진 확인 서류가 필요함(건강검진 예정 서류는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정기검진 시 누락된 신규 입소 원아도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가 검진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는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영유아검진기관 전문의 확인필)를 비치하도록 한다.

    ※ 영유아는「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해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 영아(만 0~1세, 2세) :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확인 서류 등을 비치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건강검진의 경우,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와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까지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 실습생도 건강검진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원장은 장애 영유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장애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의 부모에게 해당 월령별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참고)을 안내하여 장애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준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 제4항 및 「별표4」)

- 검사항목 : ①문진과 진찰 ②신체계측 ③발달평가 및 상담 ④건강교육 ⑤구강검진
- 검진주기 : 총 6차에 걸쳐 검진

①생후 4~6개월 ②생후 9~12개월 ③생후 18~24개월
④생후 30~36개월 ⑤생후 42~48개월 ⑥생후 54~60개월
⑦생후 66~71개월

검진항목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	○	○	○	○	○	○
신체계측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	○	○	○	○	○	○
	수면	○						
	대소변 가리기			○				
	정서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구강		○					
	취학준비						○	
	간접흡연							○
구강검진				○		○	○	

평정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대책, 부모공지, 장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건강검진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모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나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일부 미흡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문서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여 보육교직원과 부모가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
  - 마련된 대책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일부 보육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 건강검진 서류가 전체 장애 영유아의 절반 미만으로 누락된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 건강검진 서류가 전체 장애 영유아의 절반 이상으로 누락된 경우 등

장 5-12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고, 식단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조리되어 제공된다.
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거나, 식품의 조리 형태가 미흡하다.
1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고, 식품의 조리 형태도 미흡하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는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성장기 장애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된 급·간식 계획에 따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장애 영유아의 편식을 방지하고, 변화 있는 다양한 식단으로 식욕을 돋우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장애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서 바람직한 급식을 위한 식단 구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식단표(급식)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사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식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및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기록은 각 원의 상황에 맞게 작성(부록 참조)

  ※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 제공 또는 수유 시에도 제공 기록 필요

- 어린이집은 급식은 쌀과 감자, 식빵, 국수 등의 탄수화물 식품, 육류 생선, 계란, 콩류의 단백질 식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의 무기질과 비타민이 함유된 식품들을 골고루 제공하여야 한다.
- 양질의 식자재를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 형태로 식사를 준비하여 장애 영유아의 편식을 방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식사의 조리 형태는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하도록 하고, 음식 조각이 크지 않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회 조리되어 배식된 음식이 남을 경우,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재배식하지 않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해 이유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자재를 사용하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별도로 계획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유식은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형태로 조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기준 식단의 영양적 균형, 식품의 조리형태, 급식 계획과 제공 기록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식단이 영양적 균형을 이루고, 다양한 형태로 조리되는 경우이다. 급식(이유식, 수유 포함) 계획에 따라 영양상 균형을 고려한 양질의 식품이 제공되며, 식품과 조리방법이 다양하다. 또한 급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잘 갖추어져 있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거나, 식품의 조리형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급식의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이다.

- 식품의 조리형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음식 조리 형태가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다양한 조리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

- 급식의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
  - 계획된 식단대로 급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급식 제공 관련 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기간 누락된 경우
  -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나 급식 계획 또는 제공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유식 먹는 월령의 장애 영유아가 있으나 이유식 계획 또는 제공 기록이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고 식품의 조리형태도 미흡한 경우이다. 또한 급식의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 미흡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고 식품의 조리형태도 미흡한 경우
  - 급식제공에서 영양적 균형이 맞지 않고 음식 조리 형태가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로 조리 절차가 간단한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절반 이상 제공하는 경우
  - 남은 식자재가 재배식되는 경우 등
- 급식의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 미흡한 경우
  - 식단표가 없는 경우
  - 급식제공 관련 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기간이 누락된 경우
  - 제공 기록이 없어서 장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식단표는 있으나 급식이 계획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경우 등

장 5-13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3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된다.
2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계획되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된다.
1	간식이 오전과 오후 중 한 번만 계획되어 있거나, 주로 인스턴트식품이 제공된다.

어린이집에서의 간식은 장애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열량 보충과 영양의 균형 차원에서 중요한 일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간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능한 식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내용과 양이 식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간식은 장애 영유아의 신체적 요구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되어야 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서 바람직한 간식을 위한 식단 구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전에 수립된 간식 식단표에 따라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예 : 딸기, 참외, 수박, 사과, 배, 감, 밤 등)이나 채소(예 : 오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등의 간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간식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및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된 간식명(과일 및 채소명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
  - ※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의 경우에도 제공 기록 필요
- 간식은 장애 영유아의 신체적 요구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회 제공해야 한다.
  - ※ 어린이집 일과 운영(예 : 등하원시간)으로 인해 다수 장애 영유아들이 간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간식시간 조정 등의 조치 필요
- 간식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가 바람직하며,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여(예 : 생과일, 샐러드, 찐감자, 군고구마 등) 주 3회 이상 제공한다.
  - ※ 식사 시 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은 간식에 포함되지 않음

- 식품 첨가물(예 : 유화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과자류를 가능한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간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능한 식사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전 간식의 경우에는 죽이나 간단한 식사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평정기준 간식 제공 횟수, 과일 및 채소의 제공 횟수, 간식 계획과 제공 기록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되는 경우이다. 또한 간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잘 갖추어져 있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계획되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간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
  - 제공된 과일 또는 채소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예 : 제철과일, 야채스틱 등) 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어린이집 일과 운영(예 : 등하원시간 등)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장애 영유아가 간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 간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일부 미흡한 경우
  - 계획된 식단대로 간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간식 제공 관련 기록이 절반 미만으로 일부 기간 누락된 경우
  -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나 간식 계획 또는 제공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유식을 먹는 월령의 장애 영유아가 있으나 이유식 계획 또는 제공 기록이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간식을 오전과 오후 중 한 번만 계획 또는 제공하고 있거나, 식품 첨가물(예 : 유화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 과자류 위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또한 간식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 미흡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간식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 미흡한 경우
  - 식단표가 없는 경우
  - 간식제공관련 기록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기간이 누락된 경우
  - 제공 기록이 없어서 장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간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식단표는 있으나 간식이 계획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경우 등

영역 6 | 안 전

어린이집에 장애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나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장애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은 장애 영유아로 하여금 보육활동에 마음 놓고 참여하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안정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장애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여 장애 영유아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보육환경에는 시설 및 설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원장과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의 일과 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장과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며, 또래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상 성인의 보호 하에 있도록 하며, 장애 영유아를 안전하게 부모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모두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과 사고를 예방하는 지식 및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영역의 평가에서는 실내외 시설의 안전과 장애 영유아의 안전보호에 초점을 두고 보육실, 실내 및 실외 시설의 안전관리, 위험한 물건의 보관 등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지,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인계되고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부록 참조)
실내외 시설의 안전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			
	장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			
	장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			
	장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			
장애 영유아의 안전 보호	장 6-6.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	○	○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 귀가 동의서
	장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		○	차량안전수칙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		○	비상 시 대처방안 (비상대피도, 대피요령, 보육교직원 역할분담)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안전교육, 소방훈련 실시기록

-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장 6-1 : 보육실의 안전관리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3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다.
2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1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다.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어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교사는 보육실의 시설과 설비를 매일 점검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파손된 곳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를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 보육실은 장애 영유아가 하루일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므로 보다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창문의 하단이 120cm 이하로 낮거나, 창문 아래에 책상, 교구장 등 장애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을 짧게 정리하여 장애 영유아의 팔이나 목에 휘감기거나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한다.
- 보육실 내 전기콘센트(이동식 콘센트 포함)에는 안전덮개를 덮고, 전선, 줄 등은 길게 늘어져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 보육실 내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은 적절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 교구장은 장애 영유아가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정적으로 놓여 있으며,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 보육실 내 설치된 정수기의 온수는 장애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육실 내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온수는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예 : 온수의 양 또는 온도 조절, 잠금장치 설치 등)를 통해 조절하도록 한다.
- 보육실 바닥은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여 장애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고르게 설치한다.
- 보육실 내부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하며, 커튼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평정기준 위험요인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모든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
  - ○○영역의 장애 영유아 손닿는 전기콘센트(또는 이동식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
  - 전기콘센트(또는 이동식콘센트)가 깨져 날카로운 경우
  - 블라인드 줄이 장애 영유아의 목에 감길 정도로 늘어진 경우
  - ○○영역 교구장 위에 카세트 전선이 50cm 이상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잡아당겨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영역 바닥에 이동식콘센트 전선이 50cm 이상 길게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풍기 줄이 고정되지 않고 벽면에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잡아당길 위험이 있는 경우
- (2층 이상) 지면으로부터 120cm 이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창문 보호대가 없는 경우
- 책장, 교구장 등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 보육실 내 설치된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나 안전 조치가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장 6-2 :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장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3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다.
2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다.
1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군데 이상 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실을 제외한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유희실(실내놀이터 포함), 조리실 등의 실내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실내시설 및 설비는 안전하게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원장과 교사는 실내시설 및 설비가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파손된 곳이 있을 경우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보완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시설 및 설비를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어린이집의 현관문은 장애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예 : 각 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한다.
-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창문의 하단이 120cm 이하로 낮거나, 창문 아래에 책상, 교구장 등 장애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을 짧게 정리하여 장애 영유아의 팔이나 목에 휘감기거나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한다.
- 어린이집 내 전기콘센트(이동식콘센트 포함)에는 안전덮개를 덮고, 전선줄 등은 길게 늘어져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전기공급 개폐기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내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가스밸브 등은 적절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 복도나 유희실 등에 설치된 수납장은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 복도나 계단, 유희실 등의 벽에 설치된 게시판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유희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예 : 고정식 미끄럼틀, 볼풀장 등)는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도록 한다.
- 식당이나 복도 등에 설치된 정수기의 온수는 장애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 어린이집의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 바닥은 장애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온수는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예 : 온수의 양 또는 온도 조절, 잠금장치 설치 등)를 통해 조절하도록 한다.
- 교사실, 원장실 등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나 조리실,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 보일러실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장소에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어린이집 실내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하며, 커튼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실내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접근 불가' 혹은 '수리 중' 등의 표시를 붙인 후,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평정기준 위험요인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실을 제외한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내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는 경우이다. 또한 개선을 요하는 시설물이나 실내 환경에 대해 즉시 수리하지 않고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아 놓은 상태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어린이집 현관문의 개폐관리가 미흡한 경우
- 장애 영유아 손이 닿는 전기콘센트(또는 이동식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
- 전기콘센트가 깨져 날카로운 경우
- 블라인드 줄이 장애 영유아의 목에 감길 정도로 늘어진 경우
- 교구장 위에 카세트 전선이 50cm 이상 길게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잡아당겨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바닥에 이동식 콘센트 전선이 50cm 이상 길게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풍기 줄이 고정되지 않고 벽면에 늘어져 있어 장애 영유아가 잡아당길 위험이 있는 경우
- (2층 이상) 지면으로부터 120cm 이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창문 보호대가 없는 경우
- 책장, 교구장 등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 보육실 문(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없는 경우
- 문턱이 돌출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화장실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나 안전 조치가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실내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세 군데 이상 있는 경우이다.

장 6-3 :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장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3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다.
2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1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실외시설 및 설비란 어린이집 건물의 외부에 있는 모든 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문, 울타리, 옥외놀이터(옥상, 옥내중간놀이터)와 놀이터에 설치된 고정식 놀이기구(예 : 그네, 미끄럼틀, 매달리기 기구 등) 및 기타 실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실외시설 및 설비는 장애 영유아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관련 규정(영유아보육법·보육사업안내 등)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원장과 교사는 실외시설·설비가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할 때는 사용불가 표시를 하여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한 후 즉시 수리하여 장애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실외시설 및 설비를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어린이집의 실외시설은 대문, 출입구, 울타리, 담장 등을 통해 외부와 충분히 분리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가 쉽게 나갈 수 없고, 동시에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등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 어린이집 건물의 외부에 놓여있는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은 장애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장애 영유아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안전 덮개를 덮어야 한다.
- 어린이집의 축대는 안전하고, 맨홀 뚜껑은 잘 덮여 있으며, 웅덩이, 요철, 녹슨 부분, 감전 위험물 등이 없도록 한다.
- 어린이집의 마당이나 구석 등에는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적재물이 없도록 하되, 만일의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가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실외공간에 놓여 있는 적재물이 목재더미, 파손된 가구 등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나 무게를 가진 물건인 경우, '실외시설의 안전관리(장6-3)'에서 평정합니다.
반면, 삽이나 시멘트 포대 등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은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장6-5)'에서 평정합니다.

- 장애 영유아의 실외놀이 시 놀이공간에 차량 접근을 차단한다.
- 실외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접근 불가' 혹은 '수리 중' 등의 표시를 붙인 후,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평정기준 위험요인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외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또한 개선을 요하는 시설물이나 실외 환경에 대해 즉시 수리하지 않고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아 놓은 상태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옥외놀이터의 미끄럼틀이 파손된 경우
- 울타리의 끝이 갈라져 날카로운 경우
- 나무 재질의 그네 기둥이 벗겨져 가시가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
- 옥외놀이터의 고무호스가 장애 영유아의 발이 걸려 넘어질 정도로 길게 늘어진 경우
- 장애 영유아 접근이 가능한 곳에 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궁금해요

Q. 어린이집 실외놀이터에 장미를 심으면 안되나요?

A. 장미, 탱자나무 등 가시가 있는 식물은 장애 영유아의 손이나 눈에 닿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미 등이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장애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장 6-4 :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장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3	어린이집 실내외의 모든 놀잇감에는 위험요인이 없다.
2	어린이집 실내외의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1	어린이집 실내외의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실내외 놀잇감이란 모든 보육실, 유희실(실내놀이터 포함), 다목적 활동실, 옥외놀이터 등에 있는 '이동 가능한 놀잇감'을 의미한다(미끄럼틀, 볼풀장 등과 같은 고정식 놀이기구는 실내외 시설 및 설비에 해당). 실내외의 놀잇감은 위험요인이 없어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놀잇감을 장애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도록 안전한 것으로 구입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의 놀잇감을 매일 점검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파손된 곳이 있을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수리,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놀잇감을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놀잇감은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에 몰입하거나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장애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에 있는 모든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놀잇감은 유해색소가 첨가되거나 유해색소로 표면이 도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천장이나 벽에 모빌 등을 부착한 경우, 장애 영유아가 잡아 당겼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끝이 깨진 사기그릇, 안전 처리되지 않은 깡통 등은 위험하므로 놀잇감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조개껍데기와 같은 실물자료를 제시한 경우 깨지거나 날카롭지 않도록 주의한다.
-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도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실내외 놀잇감에 파손 등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후 즉시 수리한다.

평정기준 위험요인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 실내외 모든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 실내외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역할영역의 음식모형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 쌓기영역의 플라스틱 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 모형 자동차의 바퀴가 빠져 철심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조개껍데기가 깨져 날카로운 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실외놀이터의 탈것(자동차) 손잡이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 실외놀이터의 모래놀이용 삽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 놀잇감을 넣어둔 바구니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어린이집 실내외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장 6-5 :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3	실내외 위험한 물건은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호기심이 강한 장애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위험한 물건에 접근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실내외를 철저히 살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위험한 물건을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한다.
- 만약,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물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 작업 시 찌르거나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실험용 알코올, 살충제, 방향제, 구강세정제, 액상비료, 어항수질 개선제, 동물 사료(물고기, 거북이 사료 등), 각종 스프레이, 성인용 화장품, 놀잇감으로 제시된 내용물이 들어있는 화장품(립스틱, 매니큐어 등), 침핀, 건전지, 유리조각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고무장갑,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변기 압축기 등
- 빗자루, 대걸레, 삽 등 장애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 비상약품, 장애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 만지면 다칠 수 있는 가시가 있는 식물(예 : 선인장, 장미, 밤송이 돌멩이 등)

- 장애 영유아가 삼킬 수 있는 활동 자료나 놀잇감
  - ▸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예 : 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 ▸ 직접 제공되거나,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예 : 콩, 팥, 은행, 도토리, 등)
  - ▸ 기타 활동 자료(예 : 비누방울액, 색모래 등)

●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 다음의 물건은 평소에는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성인의 지도 하에 사용되도록 한다.

- 스테이플러, 목공용 본드,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과 같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애 영유아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
- 비상약품, 투약을 위해 장애 영유아가 가지고 온 약 등

평정기준 위험한 물건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의 실내외에 위험한 물건이 없거나,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의 실내외에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사물함 위 장애 영유아 손이 닿는 곳에 투약용 약이 놓여 있는 경우
- 교사용 장 안에 교사용 가위, 칼이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등
- 장애 영아반 탐색영역 교구장에 놓여있는 화분 안에 3.5cm 이하의 돌멩이가 들어있는 경우
- 화장실에 장애 영유아 손이 닿는 곳에 대걸레, 고무장갑이 놓여있는 경우
- 옥외놀이터 화단에 성인용 모종삽이 놓여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어린이집의 실내외에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궁금해요

Q. 장애 영유아반에 3.5cm 이하의 놀잇감을 비치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A.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막는 것과 같은 기도폐색(질식)은 영유아와 노인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기도폐색은 공기가 폐와 뇌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 손상을 일으키는 등 매우 치명적입니다. 만2세 이하 영아는 기도가 좁고 손에 닿는 것은 입으로 탐색하려는 발달 특성이 있어, 동전 등과 같은 작은 물질에 의해 쉽게 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2세 이하 연령에서는 비음식성 물질에 의한 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위한 놀잇감으로 최소 직경 3.5cm, 길이 5.5cm 이상 크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Q. 그럼 장애 영유아반에는 3.5cm 이하의 놀잇감은 무조건 비치하면 안되나요?

A. 장애 영유아반의 경우, 질식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직경 3.5cm 이상 크기의 놀잇감을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 직경 3.5cm 이하의 놀잇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교사의 지도 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놀이 종료 후에는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 6-6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장 6-6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3	교사는 실내외에서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
2	교사는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 외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모든 장애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모든 장애 영유아는 일과 중 항상 성인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하며,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실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항상 주시하여 장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보육실의 환경은 교사가 모든 장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도 가능한 교사가 모든 장애 영유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기둥 뒤나 계단 밑과 같이 구석진 곳은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는 보육실이나 실내외 놀이터 등에서 가능한 많은 장애 영유아가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다.
- 교사는 일부 장애 영유아와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주기적으로 전체 장애 영유아를 살펴보는 등 전체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여야 한다.
- 장애 영아는 유아에 비해 성인의 눈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경우가 많음으로 교사는 기저귀를 걸거나 우유를 타는 등 특정행동에 몰두해 있을 때에도 자주 모든 장애 영아를 살펴야 한다. 또한 장애 영아가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영아돌연사 등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보육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장애 영유아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남겨두고 일정 시간 이상 보육실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나 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 자리를 비워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실내외놀이터에서 고정식 및 이동식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성인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산책이나 일상생활 관련 활동 등을 위해 장애 영유아와 함께 어린이집 밖으로 나갈 때에는 모든 장애 영유아가 교사의 보호 하에 있도록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평정기준 교사의 전체 상황 관찰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실내외에서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전체 장애 영유아를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어린이집 실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 외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 교사가 전체 장애 영유아를 주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보육실 및 실내외에서 장애 영유아의 상황을 관찰하지 못할 때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교사가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만 살피고 전체 장애 영유아를 관찰하지 못할 때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혼자 화장실에 간 장애 영유아가 돌아오지 않아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이다.

- 교사가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

- 교사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여 교사의 시선을 벗어난 장애 영유아가 있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 보육실이 구조적으로 전체 장애 영유아를 주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교사가 주위를 살피지 않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 교사가 실내외 전체를 주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장애 영유아가 교사의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등
- 교사가 장애 영유아들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

•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낮잠 시간 내내 자리를 비우는 경우
- 장애 영유아가 혼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참고사항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아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 (의미) 생후 1년 이내 영아가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으로, 사망 당시의 상황 및 현장 조사, 임상적 병력 검토, 부검 등 철저한 사후 검사에도 사망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
- (위험요인) 수면자세(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움), 푹신한 침구와 놀잇감, 과도한 난방, 저체중아, 미숙아, 임신 중 산모의 흡연, 영아의 간접 흡연, 성인과 같은 침대 사용 등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돌연사 증후군 발생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도 증가 추세임
-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돌연사증후군 사고 특징

	특징	비고
계절적 특성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	'10년 총 6건 중 4건이 10~12월 사이 발생
영유아 특성	엎드려 자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 당시 감기기운을 보이거나 평소 허약한 상태	외국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초기에 발병률이 높다는 분석이 있음

⇨ 환절기 및 겨울철에는 영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어린이집에 새로 입소하는 영아에 대해 수시관찰이 필요함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주요 수칙	세부 점검 사항
영아의 건강을 체크한다.	• 영아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평소 허약하거나 최근 병원 진료를 다녀온 영아가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재 감기나 호흡기질환, 기타 질환이 있는 영아는 특별히 주의해야 함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운다.	•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영아가 있는지 확인한다.
영아 주변에 숨이 막힐 수 있는 물건을 비치하지 않는다.	• 영아의 주변에 부드러운 물건 및 인형, 느슨한 이불, 베개 등은 없는지 확인한다.
적정한 수면환경을 조성한다.	• 적절한 실내 온도(22-23도)를 유지한다.
	• 어린이집 주변에 흡연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영아 관찰이 용이한 조명, 안전거울, 문의 투명창 등을 설치한다.
	• 영아 낮잠 시, 반드시 교사가 상주하여 관찰하며, 자리를 비울 시에는 동료 교사에게 인계한다.

※ 참고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내」, 어린이집안전공제회(http://www.csia.or.kr).
「영유아 건강관리와 생활안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어린이집 건강 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우리아이 똑바로 눕혀 재우기」 홍보 팜플렛. 질병관리본부.

장 6-7 :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3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잘 수립되어 있고, 이를 잘 지킨다.
2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이를 잘 지키지 못한다.
1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안전사고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인적 환경이 미비하여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귀가할 때 혼잡한 틈에 안전사고(예 : 미아, 유괴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귀가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장애 영유아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에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를 확인하고 장애 영유아를 인계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철저히 지키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규정을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한다. 가령, 보호자가 장애 영유아를 직접 데리고 어린이집을 오가는 경우와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 영유아를 등하원시키는 경우에 따라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장애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의 필수기재사항 : 장애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장애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도록 함,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에게 장애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 포함
- 모든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 귀가동의서의 필수기재사항 : 장애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장애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
  - ※ 귀가동의서는 응급처치동의서와 통합적으로 작성하여 부모의 확인을 받아 관리할 수 있음(부록 참조)
- 모든 장애 영유아(차량 이용 장애 영유아 포함)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되,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전화나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평정기준 인계과정의 문서화 및 내용, 귀가동의서, 인계 과정 준수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 귀가 시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잘 수립되어 있고, 이를 잘 지키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흡하거나,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 장애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흡한 경우
  -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의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예 : 장애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가 누락되어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일부 장애 영유아의 귀가동의서가 없는 경우
  - 귀가동의서의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등
-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을 지키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지정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혼자 등하원하는 장애 영유아가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궁금해요

Q. 장애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 중 「장애 영유아가 등하원 방법」이 왜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시 어린이집과 지정된 보호자 간에 장애 영유아의 인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백한 인계절차와 관련 규칙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계절차는 「장애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의 경우
  - 차량교사는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기다리는 보호자에 직접 인계한다.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 앞이라도 장애 영유아를 혼자 내리지 않는다.
- "보호자가 직접 등하원 시키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 등하원 시 장애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어린이집 교사가 서로에게 직접 인계한다.

궁금해요

Q. 우리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을 운행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장애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방법」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나요?

A. 「장애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통학차량 미운행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 영유아 인계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정보공시포털 등을 통해 통학차량 미운행 사실 확인 시 관련 내용을 갈음하여 평정합니다.

장 6-8 :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장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3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할 경우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행한다.
2	차량 운행 시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차량 운행 시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가능한 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예 : 등하원, 견학 등) 안전설비를 갖추고 교사 등 성인이 동승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운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는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차량 내 비치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가 관리 대상임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있는 성인(원장, 교사 등)이 동승한다.
- 교사와 장애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한다.
-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에 따라 보호장구를 필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6개월 미만 장애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장애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개별 안전띠를 맨 것과 차량에서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킨다.
- 운전자는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도록 서행하며,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운행 중 장애 영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장애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위험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거나 옷자락이 끼거나 밟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비가 올 때는 장애 영유아가 우산을 접고 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평정기준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차량 안전수칙, 개별 안전띠, 장애 영유아용 보호장구(장애 영아 탑승 시), 성인 동승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할 경우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행한다. 즉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며, 운행 시 성인이 동승하고, 모든 탑승자가 개별 안전띠를 하고 차량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운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차량의 안전설비와 안전 운행 및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차량 내 소화기나 구급상자가 없거나, 있어도 관리되지 않는 경우
- 차량 안전수칙이 없는 경우
- 차량 내에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탑승자(운전자, 동승한 성인, 모든 장애 영유아)의 일부가 개별 안전띠를 하지 않는 경우
- 탑승하는 장애 영아 수만큼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 장애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 영아용 보호장구가 구비되어 있으나, 일부 제품이 장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차량의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차량에 운전자 외에 다른 성인이 동승하지 않거나 장애 영아가 탑승하지만 영아용 보호장구가 전혀 없는 경우(모든 보호장구가 장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또는 차량을 운행하나 현장 관찰시 차량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궁금해요

Q. 등하원용 차량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등하원용 차량은 등하원용으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소유 차량, 지입 및 대여 차량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행하지는 않지만 관찰 당일 또는 부모가 원할 경우만 운행하는 차량도 관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사항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의 올바른 선택방법

1.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2.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선택 방법은?

1) 먼저 통학차량의 승객석 안전벨트 종류를 확인한다.
   (Ⓐ 2점식 안전벨트 Ⓑ 3점식 안전벨트)

2) 확인된 안전벨트 종류에 맞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선택한다.
   Ⓐ 2점식 벨트 → W2
   Ⓑ 3점식 벨트 → W1, W2

3) 안전인증(KC)된 제품인지 확인한다(안전인증서, 인증번호).

4) 제품 사용설명서를 설치 전 자세히 읽어보고, 안전하게 장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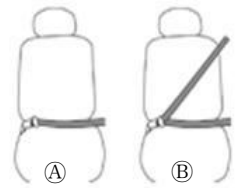

2점식 벨트 3점식 벨트

3. 안전인증(KC)이란?

안전인증번호 : 00000000-0000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7항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인증 검사기준

구 분	체중 범위(kg)
W1	10kg 미만
W2	9kg ~ 18kg 이하
W3	15kg ~ 25kg 이하
W4	22kg 이상

※ '영아용 보호장구'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중 영아의 체중 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선택,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 6-9 :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3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어린이집에 갖추어진 안전설비와 비상 시 대처방안, 보육교직원의 대처 능력은 화재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애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유사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비상 시 대처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원장과 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이 평소 이를 숙지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각종 대비시설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별 설치 기준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르다(구체적인 설비의 종류와 수준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 소화설비 : 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 피난설비 :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

  위의 내용 중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완강기는 적합하지 않음), 피난구 유도등이다.

※ 옥상놀이터에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화기
    - ▸ 각 층마다 최소 1개씩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한다.
    - ▸ 소방약제가 충분하고,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한다.

    ※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가 관리 대상임

  - 유도등
    - ▸ 비상 시 어린이집 내 모든 유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유도표지는 유도등에 포함되지 않음

  - 비상구
    -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 ▸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 등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 보육교직원은 대비시설과 설비를 바르게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습 등을 통해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과 대처방안을 숙지하여야 한다.

  ※ 비상 시 대처방안의 필수기재사항 ; 대피요령,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부록 참조)

- 비상 시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소방서, 구조대, 파출소,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응급 전화를 걸 때 말해야 할 주요 내용(간략한 사고 내용, 어린이집의 이름과 위치 등), 이외 비상 시 연락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비상연락망, 보호자의 연락처 등이 전화기 옆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기준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 비상 시 대처방안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잘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 소화기 내용물이 굳어 있거나, 압력이 비정상인 경우
- 소화기의 안전핀이 빠져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 비상구나 비상대피로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주출입구, 비상구) 중 일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에 유도표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비상 시 대처방안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및 설비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최소한의 안전시설 및 설비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 소화기가 없는 경우
  - 유도등이 없는 경우
  - 가스누설경보기가 없는 경우
  -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가 없는 경우(1층)
  -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가 없는 경우(2층 이상) 등

궁금해요

Q. 업무분장표와 비상 시 역할분담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업무분장표는 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여 문서화한 것입니다. 반면 비상 시 역할분담표는 화재나 재난,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궁금해요

Q. 매달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도, 비상 시 대피요령이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A. 대피요령은 화재,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전반을 대비한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방(대피)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대피과정의 일부 사례일 뿐 대피요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 시 대피요령은 별도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장 6-10 :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3	보육교직원과 장애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거나,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1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장애 영유아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식과 행동요령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안전 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보육교직원과 장애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한다.
-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이 있으며, 이외 안전한 보행법,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장애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동화, 이야기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장애 영유아가 보다 쉽게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http://www.csia.or.kr)「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 원장은 장애 영유아의 안전교육에 대해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안내하며, 희망하는 보호자가 안전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소방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외 비정기적으로(불시) 다양하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과 장애 영유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의 소방(비상대피) 훈련 시에는 성인들이 손을 잡고 도와주거나, 잘 걷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성인이 안고 정해진 대피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정기 소방훈련 이외 비정기적으로(불시) 다양하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교육과 소방(대피) 훈련은 보육일지 등에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평정기준 **모든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소방훈련**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장애 영유아에게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방훈련(불시훈련 포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이다.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장애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거나, 소방훈련이 월 1회 미만인 경우이다. 또한 소방훈련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장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한두 가지만 실시한 경우

- 일부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소방훈련을 매월 실시하나, 외부로 나가지 않고 현관으로 대피하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

★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장애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소방훈련이 월 1회 미만인 경우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소방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나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 장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한두 가지만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월 1회 미만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장애 영유아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반이 있는 경우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
-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실시기록이 없는 경우)
- 소방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반이 있는 경우(실시기록이 없는 경우) 등

참고사항

소방(대피)훈련 절차와 방법

○ 가상으로 화재 발생지점을 설정한다.

※ 대피훈련 시마다 화재 발생지점을 다르게 설정하여 어느 장소에서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를 목격한 교사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린다.

○ 원장(또는 신고 담당 교사)은 사이렌이나 경보벨을 울려 각 반에 화재사실을 알린 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다.

○ 구급 담당 교사는 구급함(비상약품)을 들고 대피한다.

○ 영유아들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낮게 숙이고 교사의 인솔에 따라 비상대피로를 통해 이동한다. 이때 어린 영아는 교사가 안고 대피한다.

○ 대피장소에 모여 인원점검과 화재상황을 체크한 후 교실로 이동한다.

○ 소방(대피)훈련이 끝난 후에는 소방(대피)훈련 일지를 작성하며, 훈련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 대피훈련 시 반영하도록 한다.

화재 발생 시 교사의 역할

유형	교사의 역할
신고반	소방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함
방호·복구반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
대피반	화재의 발생 위치에 따른 다양한 대피 경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 손전등과 각 반 영유아의 명단을 지참하고 대피한 후 모든 영유아의 대피 여부를 확인함
구급반	상비약을 지참하여 대피하며 필요한 응급처치를 함
구조반	대피하는 영유아의 마지막에 따라 나오면서 남아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함

※ 소방(대피)훈련 및 비상 시 업무분담표 구성 시, 상기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우수 및 부적절사례

◎ 우수사례 기준

연번	항목	확인방법
1	1급 교사 비율 - 전체교사의 50% 이상 (40인 이상) - 전체교사의 40% 이상 (39인 이하)	- 대상 : 종일제 보육교사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기준시점 : 현장관찰 해당 월의 시작일~현장관찰일까지 지속적인 근무여부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는 대상에서 제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특수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 **※ 산전 후 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담임)할 경우, 1급 보육교사로 인정** **※ 휴원기간 동안의 경력, 재입사 전의 현 어린이집 근무경력 제외** **※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아래숫자는 버림처리함. 1미만의 소수점일 경우 최소단위인 1명으로 산정**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보육교직원관리대장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는 명확하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2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대상 : 종일제 보육교사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경력산정시점 : 현장관찰월 기준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는 대상에서 제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특수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 **※ 산전 후 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담임)할 경우, 1년 이상 보육교사로 인정** **※ 휴원기간 동안의 경력, 재입사 전의 현 어린이집 근무경력 제외** **※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아래숫자는 버림처리함. 1미만의 소수점일 경우 최소단위인 1명으로 산정**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는 명확하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운영정지 등 면직처리는 되지 않았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운영정지 완료 후부터 경력 산정**
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대상 :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등하원용) - 증빙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우수사례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필증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어린이집의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나 신고필증이 없는 차량이 있는 경우

연번	항목	확인방법
4-1	놀이시설 설치검사 (40인 이상)	- 증빙자료 :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정기 시설 검사) - 놀이시설 설치검사 항목 : 고정식 놀이기구, 모래놀이와 같이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포함 **※ 대체놀이터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관리주체가 되어 재정을 부담하여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인정** - 놀이시설 설치 검사결과 인정범위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항목의 검사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만 인정 여기서 잠깐!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후 어린이집 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변경된 어린이집 명으로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을 재발급받아 준비하기 바랍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실시예정, 검사결과 불합격, 실시하였으나 설치검사필증이 나오지 않은 경우, 놀이시설이 없는 경우 **※ 단, 검사결과 처리지연으로 당일 설치검사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입금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현장관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포함)에 평가인증국으로 설치검사필증을 송부한 경우에는 인정**
	옥외놀이터 설치 (40인 이상~ 50인 미만)	40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05년 이전 어린이집으로서 50인 이상 52인 미만 어린이집이 옥외놀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인정
4-2	취사부 임용 (39인 이하)	- 보육교직원 관리대상,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기준시점 : 현장관찰 해당 월의 시작일 ~ 현장관찰일까지 지속적인 근무여부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보육교직원관리대장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는 명확하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5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 증빙자료 ①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간 협약서 ② 건강주치의에 의한 감염병 예방관리·건강·안전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협약사항 실제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건 이상) **※ ①,② 모두 충족해야 우수사례로 인정** - 기준시점 : 협약서 및 실적기록에 대한 일자는 현장관찰일 전일까지 **※ 협약서에는 협약일자 및 의료기관장의 직인 또는 자필서명이 반드**

<table>
<tr><th>연번</th><th>항목</th><th>확인방법</th></tr>
<tr><td></td><td></td><td>시 기재되어야 함
※ 실적증빙은 협약서 체결 이후 이행된 자료로 관찰월 기준 1년 이내에 한함
※ 증빙서류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비하여야 하며(사진 또는 강사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문서화된 자료), 필요 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td></tr>
<tr><td>6</td><td>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td><td>- 대상 :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맞벌이 부모
- 증빙자료 : 부와 모 모두의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맞벌이 부모 명단
- 기준시점 :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 ~ 현장관찰일까지
- 확인항목 : 체크리스트 4항목 중 3항목 이상 해당 시 인정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r>
<tr><td>① 보육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를 받은 경험 없음</td><td>부모 확인</td></tr>
<tr><td>② 토요일 또는 휴일 보육 실시 여부</td><td>부모·문서 확인</td></tr>
<tr><td>③ 17시 이후 하원아동 대상 별도 프로그램 운영
(17시 이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특별활동 실시 시, 미참여 아동 별도 프로그램 진행여부 포함)</td><td rowspan="2">문서 확인</td></tr>
<tr><td>④ 맞벌이 부모 대상 별도 교육자료 제공</td></tr>
</table>
※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은 입소순위 시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
※ 맞벌이 부모 명단 중 10% 무작위 선정 후 유선으로 부모 확인 (최대 5명)</td></tr>
</table>

부적절사례 기준

연번	항목	확인방법
1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원장 및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가 무자격인 경우 • 원장 및 보육교사가 미임용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원장 및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경우 • 타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이 근무하는 경우 여기서 잠깐!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2014 보육사업안내 참고
2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증빙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보육교사(질병, 喪,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부재인 경우)의 근무를 임의 변경하여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등록 및 운영하는 경우 •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한 경우 ※ 2014 보육사업안내 반편성 기준 참고
3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유무 **※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교사용 식자재, 수입식품도 포함됨)** **※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4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증빙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미등록 영유아가 재원하는 경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된 반과 다른반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경우 •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서로 다른 연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퇴소한 원아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번	항목	확인방법
5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 증빙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운영이 불가능한 혼합반 구성 여부 •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 혼합반 운영 •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만 0세반과 만 2세반 / 만 2세 이하반과 만 3세 이상반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구성 원칙을 무시한 경우 • 각각 다른 혼합 연령의 2개 반을 임의로 통합반으로 운영한 경우 ※ 2014 보육사업안내 혼합반 운영 참고

※ 부적절사례 관련 주의 사항

1) 반 구성 및 영유아 재원사항의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달리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함

Ⅳ. 부 록

[부록 1] 「자체점검보고서」 안내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부록 2] 「자체점검보고서」 예시(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부록 3] 문서 자료집

1

「자체점검보고서」 안내 및 보고서 작성 요령

자체점검

1. 자체점검이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점검해 가면서 우리 어린이집의 우수한 영역과 미흡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자체점검은 왜 필요할까요?

어린이집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어린이집의 질을 무엇보다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3. 자체점검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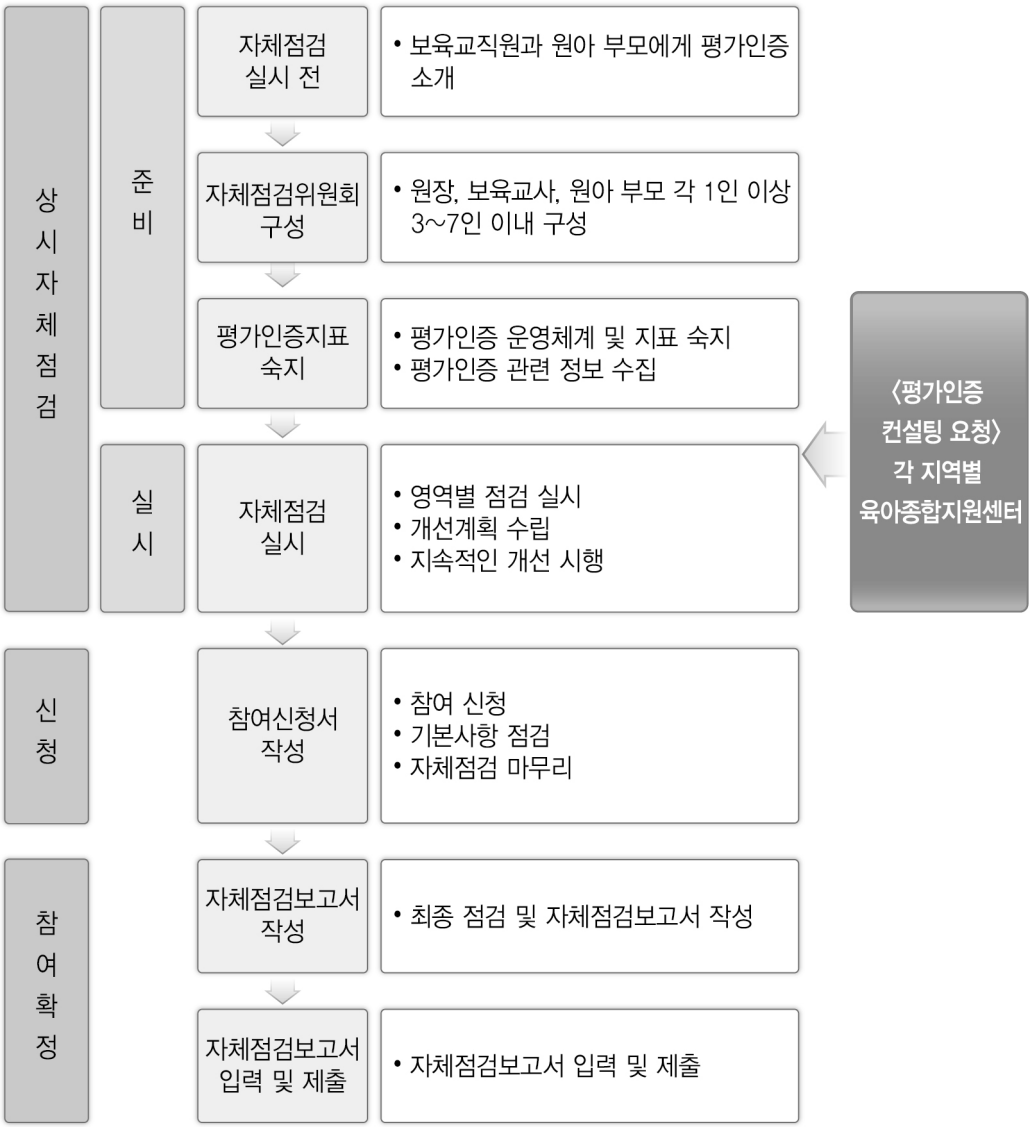
상시자체점검
준비
자체점검 실시 전
• 보육교직원과 원아 부모에게 평가인증 소개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 3~7인 이내 구성
평가인증지표 숙지
•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지표 숙지
• 평가인증 관련 정보 수집
실시
자체점검 실시
• 영역별 점검 실시
• 개선계획 수립
• 지속적인 개선 시행
〈평가인증 컨설팅 요청〉 각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
참여신청서 작성
• 참여 신청
• 기본사항 점검
• 자체점검 마무리
참여확정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 최종 점검 및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및 제출
•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및 제출

가. 자체점검 준비

1) 자체점검 실시 전 확인사항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의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수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와 실제 운영이 다를 경우 부적절사례가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확인 사항	수정 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운영] 메뉴	운영형태, 보육교직원 현황, 영유아 현원	시군구 보육 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요청

◎ 원장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사용자]의 세부내역에서 수정 가능

- 어린이집 인가증 상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수정해 주십시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상의 정보와 현재 어린이집의 상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 운영형태 : 39인 이하, 40인 이상, 장애아전문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 확인

- 평가인증에 관련한 모든 안내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업무연락으로 공지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2) 자체점검 준비 - 평가인증 안내하기

자체점검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함께 준비하게 되는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먼저 안내하여 평가인증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보육교직원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원아 부모에게도 평가인증 참여에 대해 안내하여 원아 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평가인증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 평가인증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가정통신문의 예를 참고하시어 원아 부모에게 평가인증의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를 안내해 보세요.

예시

가 정 통 신 문

안녕하세요.
평가인증 참여와 관련하여 원아 부모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평가인증이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평가인증은 왜 하나요?

평가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린이집의 환경과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 영 유 아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운영이 체계화 됩니다.
- 보육교사 :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이 증진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부　　모 :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를 제공받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가인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평가인증은 신청단계 이후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3단계로 진행되며, 총 4개월이 소요됩니다.

1) 참여확정 : 신청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과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짐
2) 현장관찰 :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 실시
3) 심　　의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결정

우리 어린이집도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집

3) 자체점검 준비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객관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체점검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합니다.

자체점검위원회 구성하기

- 우리 어린이집의 자체점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구분	구성방법의 예시
원장	원장님은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보육교사	1. 지원하기 → "제가 해 보고 싶습니다!" 2. 추천받기 → "○○반 선생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가 골고루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 "경력교사와 신입교사가 함께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3. 협의하기 → 담당연령 및 반별 교사 수에 따라 협의해서 정하기
원아 부모	1. 신청받기 →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청서 받기 2. 추천받기 → 교사 : "○○원아 부모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장 : "평소 어린이집에 협조적이신 △△원아 부모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3. 협의하기 → 운영위원회 회의나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협의하기

- 우리 어린이집의 자체점검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요?

자체점검위원	인원수
원 장	1명
보육교사	□명
원아부모	□명
합 계	□명

성공적인 자체점검 전략

- 어떤 점들이 성공적인 자체점검을 방해할까요?

원장	• 무리한 준비로 보육에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미뤄 두었던 어린이집 환경도 새롭게 바꿔봅시다." •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엉뚱한 곳에 힘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원장이 그러는데 교사가 만든 교구가 많아야 점수가 잘 나온대요." • 혹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준비할 동안은 일찍 집에 가지 맙시다." • 교직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을 이끌며 지원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선생님들끼리 잘 협의해서 준비해 봐요."	• 선생님들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평가인증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올바르게 진행하도록 지원해주세요!
보육교사	•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원은 다 잘하고 있는데 뭘 고치라는 거지?" •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 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원장님은 왜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힘들게 하는 거지?" • 평가인증이 나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평가인증 받으면 인증어린이집이 되지만 우리 교사들에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	• '우리 원과 나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우리 원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같이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협력해 주세요!

4) 자체점검 준비 - 평가인증지표 숙지

자체점검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평가인증지표를 숙지해야 합니다.

평가인증지표는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항목들이며, 평가인증에서 어린이집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점검을 진행할 때 반드시 평가인증지표를 자세히 알고 그에 따라 준비합니다.

	자체점검위원 모임 일정 협의	지표 내용 숙지	지표 숙지 방법 계획
사례	• 자체점검위원 워크숍 일정 정하기 • 자체점검위원과 함께 지표 숙지하기 • 자체점검 일정 정하기	• 모임 일정 정하기 • 교사들이 하나씩 영역을 정해 미리 공부해 오기 • 지표 워크숍 일정 정하기 • 자체 워크숍, 참여설명회 교육 참석하기 • 교육 후 토의하기	• 모임 일정 및 계획 정하기 • 지표를 읽어 온 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기 • 다음 모임 계획 논의하기

평가인증 컨설팅 요청

어린이집은 평가인증과 관련(평가인증 안내 및 지표에 관한 이해 등)하여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평가인증 컨설팅(상담, 현장방문, 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의 이해 온라인 교육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 신청하면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 관련 정보 수집

평가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참고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자체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지표 내용을 숙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가인증 관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참고도서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 전문서적 –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 영유아보육의 실제,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건강관리 등

관련 사이트

-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or.kr)

관련 기관

- 해당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 평가인증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자료찾기	
[정보마당] 메뉴 GO! → [진흥원자료] 메뉴 GO! → [KCPI 사업자료] GO!	
[평가인증 관련]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문) • 평가인증 문서 자료집 • 평가인증 관련 서식 - 자체점검보고서 양식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양식 / 재인증 사전신청서 평가인증서 및 인증현판, 참여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참여마당] 메뉴 GO! → [자주하는 질문] 메뉴 GO!	
[평가인증]	• 운영체계, 지표, 사후관리 관련 FAQ (※ 평가인증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와 왜곡된 정보에 대한 해답문 등)

나. 자체점검 실시

1) 자체점검 실시 - 영역별 점검 실시

자체점검 실시 준비

- 평가인증지표의 내용을 숙지합니다.
-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①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필기도구
  ② 자체점검보고서 복사(출력) 및 준비

자체점검보고서 양식은 어디에?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책자의 〈부록〉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 [정보마당] → [진흥원 자료] → [KCPI 사업자료] → 평가인증 관련 자료

영역별 점검 실시

-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어린이집을 점검합니다.

영역별 점검 실시 후

- 점검이 모두 끝나면 점수를 계산해 봅니다.
- 영역별 점수를 서로 비교해 보고, 우수한 영역과 미흡한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잘하고 있는 점과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토의하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세워 봅니다.

Tip. 평가방법은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평가는 관찰, 면담, 문서 검토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관찰 : 영유아들의 등원에서 하원까지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루어짐
- 면담 :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실행 여부 및 활동 내용에 관해 이루어짐
- 문서 검토 : 평가인증지표에서 실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요구되는 문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짐

※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문서도 확인할 수 있음

평가인증 안내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각 영역별로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점검을 실시할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예시〉 영역6. 안전(40인 이상)

하위 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실내외시설의 안전	대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			-
	대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			-
	대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			-
	대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			-
	대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			-
영유아의 안전 보호	대 6-6.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			-
	대 6-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	○	○	○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 귀가동의서
	대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운행	○		○	차량안전수칙
	대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		○	비상 시 대처방안(비상대피도, 대피요령, 보육교직원 역할분담)
	대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안전교육, 소방훈련 실시기록

※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평정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본 영역의 평가는 관찰, 문서 검토,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표 참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2) 자체점검 실시 - 개선 계획과 실행

개선 계획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파악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효율적인 개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의 여건상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개선 계획 시 파악하여야 할 점

-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과 단기간에 수정 가능한 항목 파악하기

시간이 필요해요	개선 계획 세우기	빨리 개선할 수 있어요	개선 계획 세우기
(예시) •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예시) • 교사 상호작용 모니터링 하기, 「상호작용과 교수법」 교육모임 계획하기	(예시) • 실내외 시설의 안전	(예시) • 위험한 물건 치우기
• 보육과정 영역	• 균형있는 보육활동 계획하기, 보육활동 실행 내용과 평가를 보육일지에 매일 작성하기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 유효기간 지난 약품 버리기, 비상약품에 유효기간 표기
• 보육교직원 교육	• 교사별 직무 승급교육 확인하기, 재교육 프로그램 계획세우기	•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 보육실의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깜빡이는 형광등 교체, 채광을 방해하는 과도한 썬팅지 제거

- 공동 업무로 효과적인 항목과 개별 업무로 효과적인 항목 파악하기

함께 하면 효과적이에요	개선 계획 세우기	역할분담을 하면 효과적이에요	개선 계획 세우기
(예시) •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 실내공간의 청결	(예시) • 활동 자료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기 • 대청소 실시 계획	(예시) • 놀잇감의 청결 •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예시) • 장소별 놀잇감 세척 계획 세우기 • 비상 시 교직원의 역할 분담표를 마련하기, 역할과 대처방안 숙지하기

- 영역별 개선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세우기

지속적인 개선 시행

계획에 따라 개선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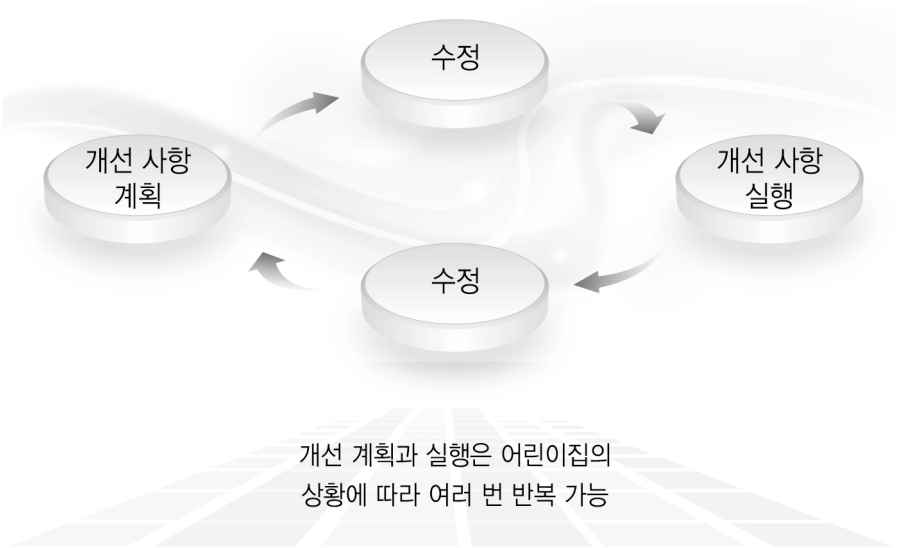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평가인증에 필요한 문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참고

- 문서보완 시점
  - 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자체점검 초반부터 개선,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이에 관한 문서기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문서는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문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인증지표별 점검 시 유의사항
  - 자체점검 진행 시 평가인증지표의 모든 영역을 잘 점검하여 보완하시되 특히, 유의하여 준비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유의사항
보육환경	◈ **보육실의 공간 배치** • 흥미영역이 모두 보육실 내(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 마련되어 있고 배치가 적절 • 보육실 간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흥미영역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경우, 영유아의 놀이 시 칸막이를 걷어 흥미영역을 모두 경험하도록 함 ◈ **언어활동 자료** • 언어활동 자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자료를 각 1종 이상 포함하여 총 5가지 이상 마련 • 영아반(만 0~1세)의 경우 쓰기활동 자료는 굵은 크레용이나 색연필, 전지 등 긁적거리기 활동 자료 구비 ◈ **보육교사용 참고자료** • 교사 당 5권 이상의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고, 자유롭게 활용
운영관리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 운영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 • 운영방침의 필수기재사항 : 운영철학, 보육목표, 보육프로그램의 특성(보육방침), 보육시간, 보육료, 연령별 집단크기와 교사 수, 보육교직원 구성, 어린이집의 환경,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영역	유의사항
운영관리	◈ 원아에 대한 관리 • 신입원아는 최소 1주일 이상 적응절차 실시 • 모든 원아의 입퇴소 관리서류(보육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가능), 생활기록부 구비 - 생활기록부 신체발달 상황 및 예방접종의 누적 기록 관리, 「보육사업안내」 서식 사용 ◈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반구성 및 영유아 재원사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정보와 동일하게 운영 ※ 필수항목(총 정원준수) 및 부적절사례(반별 초과보육 허용범위, 영유아 재원사항) 발생 주의 ◈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대표자와 원장이 상이한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육교직원의 교육 •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기록 관리 •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승급교육 및 다양한 재교육 실시 ◈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 양방향적인 방법(예 :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전화, 부모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홈페이지, 카페 등)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 사용
보육과정	◈ 보육일지 기록 시 주의점 • 보육계획안에 준하여 실제 진행된 활동 중심으로 실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 • 시간, 활동명, 활동내용에 대한 기록 및 평가 ※ 보육실이 달라 일과가 다른 경우 각 반별로 보육일지 작성 ◈ 보육계획안의 수립 • 연간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각 반별로 수립 - 동일 연령 반의 경우 함께 사용 가능 - 혼합연령반은 각 연령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여 수립
상호작용과 교수법	◈ 즐거운 식사와 간식 • 영유아의 식습관 격려, 대화 등 개별적인 상호작용 및 즐거운 분위기 조성 • 바람직한 식습관 지도와 자율성 격려 - 일괄적으로 국에 말아 제공하거나 영아(만 0세 제외)에게 숟가락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영역	유의사항
상호작용과 교수법	◈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 유아가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 개별적인 상호작용 실시 • 영아는 개별적인 차이를 배려한 긍정적인 배변 훈련(기저귀 갈이 포함) - 신체 자극 등 긍정적 상호작용, 배변 실수에 대한 너그러운 반응
건강과 영양	◈ 식자재 유통기한 관리 (※ 부적절사례에도 해당) • 식자재 유통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관리(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 ◈ 기저귀 가는 공간 • 기저귀 갈이대를 별도로 마련 • 기저귀 교체 시 매번 닦고 소독(별도 깔개 사용 시 매번 교체) • 사용한 비품(기저귀 등)은 바로 처리 ◈ 개별 침구 구비 • 영유아에 대한 개별 침구(베개와 이불)를 구비 • 개별 침구는 주 1회 이상 세탁, 여분의 침구는 사용 후 바로 세탁 ◈ 비상약품 구비 및 관리 • 비상약품에 유효기간 명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차량 내 비상약품 포함) 폐기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미임용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거주하는 자(보육 실습생 포함)는 건강검진 서류 구비 ◈ 급식과 간식 계획 및 실행 • 급·간식 계획(식단표)과 계획에 따른 실행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 - 식단표 필수 내용 : 오전·오후 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 - 보육일지나 운영일지 등에 기록(토요일 운영 포함)
안전	◈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 어린이집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별도 보관 •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할 경우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 - 성인용 문구류(성인용 가위, 칼, 스테이플러, 글루건, 본드, 침핀, 건전지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대걸레, 고무장갑 등 - 비상약품, 투약을 위해 영유아가 가지고 온 약 등 • 영아반 위험한 물건 - 영아가 삼킬 수 있는 직경 3.5cm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블록, 구슬, 뽕뽕이, 단추 등) - 활동 자료로 제공하거나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자연물(콩, 은행, 도토리 등)

영역	유의사항
안전	◈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 현관문 개폐관리, 손끼임 방지장치(모든 출입문), 어린이집 내 전기콘센트(이동식콘센트 포함) 안전덮개, 모서리 보호대 등 • 창문 보호대나 난간 설치 - 2층 이상의 창문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20cm이내인 경우 또는 영유아가 가구를 딛고 올라갈 수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정수기 온수 안전조치, 세면장 온수 안전조치, 돌출형 라디에이터 보호장치 • 늘어진 전선줄 관리 - 노출되거나 늘어져있어 영유아가 잡아당길 수 있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 목에 감길 위험이 있는 커튼 줄, 블라인드 줄, 각종 가전제품(선풍기, 카세트, 키보드, 컴퓨터 등) 전선 등 ◈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 내용 -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차량 운행 포함) • 영유아를 인계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 ◈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 차량 내부에 소화기, 구급상자, 차량 안전수칙 구비 - 소화기 관리, 구급상자 약품 유효기간 표기 • 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장구 구비, 교사 및 영유아 개별안전띠 착용 ◈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 • 소화기 - 각 층마다 마련, 소화기 충전 관리 • 가스누설경보기 - 어린이집 내에 설치, 작동 가능하도록 관리 • 피난구 유도등 - 작동 가능하도록 관리 • 비상구(1층),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2층 이상) - 비상탈출구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리

3) 자체점검 실시 - 기본사항 확인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면서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항목(9항목) 및 기본항목(2항목)에 대해 최종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항목
필수항목이란?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보육실의 설치기준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 비상대피시설 설치
기본항목이란?	•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항

● 주의해 주세요

필수항목이 준수되어야 자체점검보고서와 참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 미준수 시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참여확정 마지막 달에는 영역별로 최종 점검을 마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① 최종 자체점검 실시 후 평가인증지표에 근거하여 함께 점수 및 작성내용을 협의하기

② 최종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보고서에 객관적으로 작성하기

1)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및 제출

작성된 최종 자체점검보고서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평가인증」 메뉴 중 '자체점검보고서'에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 우리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기간을 꼭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고 입력 기간 내에 입력하세요!

자체점검보고서 입력방법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② 평가인증 메뉴 중 [자체점검보고서] 클릭→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③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후 내용 점검

④ [제출완료] 클릭하여 제출

※ [제출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완료] 전 최종 점검 후 [제출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⑤ 나의 상태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완료]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예시

① 항목별 수준 체크

평가인증지표 및 평가인증 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항목별로 우수한 수준(3점),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 부적절한 수준(1점) 중 해당란에 ☑ 합니다.

②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자 이내)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여 수정·보완 및 개선되었거나 어린이집의 특성상 개선하기 어려웠던 점,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여야 하며, 한 영역 당 1,000자 이내 입력 가능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심의 시 심의점수에 반영되므로 자세하게 입력해 주세요.

※ 적절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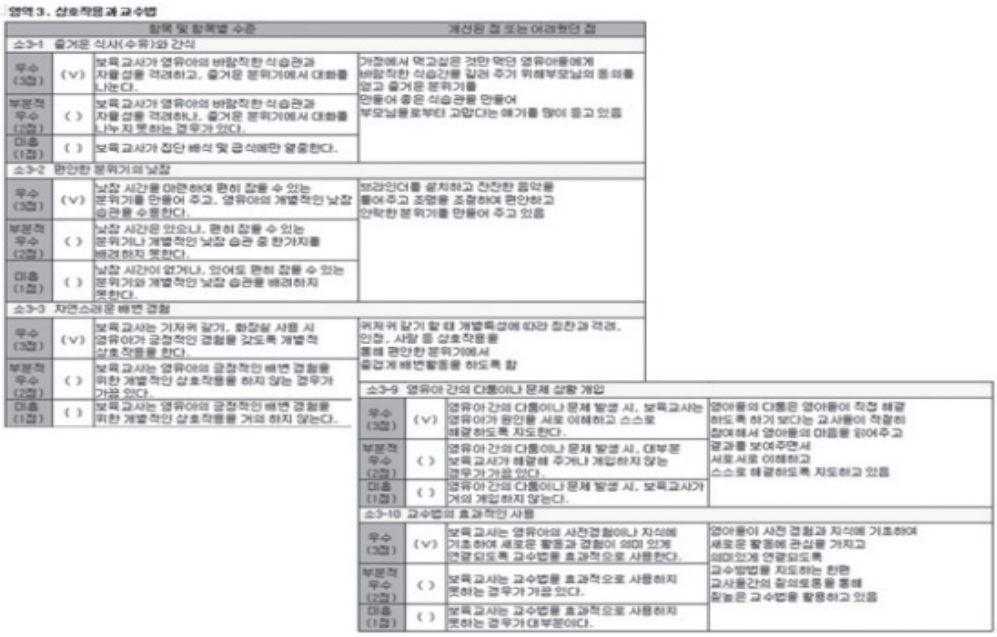

※ 부적절한 예 : 내용을 추상적으로 작성한 경우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대 2-2. 원아에 대한 관리			예시 1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개선함
우수(3점)	○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시 2 전반적으로 어려웠음
부분적 우수(2점)	◑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가 미흡하다.	예시 3 없음
미흡(1점)	◎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원아에 관한 문서가 거의 없다.	

③ 어린이집의 특징 및 장점(1,500자 이내)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의 특징,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의 장점을 기재하시면 어린이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심의 시 심의점수에 반영되므로 자세하게 입력해 주세요.

적절한 예	부적절한 예
• 우리 어린이집의 원훈, 보육목표, 보육방침은... • 보육 프로그램의 강점 (예 : 표준보육과정 적용 등)은... • 지역적 특성 및 시설환경은... • 원장 및 교사의 복지 및 전문성 증진 노력, 근무여건은...	•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

④ 우수사례

○○어린이집에서 우수사례 항목을 검토한 후 실시 여부 항목에 ☑와 구체적 내용에 관련 자료를 입력합니다.

※ 우수사례는 심의 시 심의점수에 반영됩니다(단, 현장관찰 시 확인된 내용 반영).

우수사례		실시여부	구체적내용
1급 교사 비율	전체교사의 50% 이상 (40인 이상)	예 ☐ 아니오 ☐	1급 교사(　　)명
	전체교사의 40% 이상 (39인 이하)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예 ☐ 아니오 ☐	1년 이상 근무교사 (　　)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신고 ☐ 미신고 ☐ 미운행 ☐	신고필증번호 (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예 ☐ 아니오 ☐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예 ☐ 아니오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 없는 어린이집의 옥외놀이터 설치		예 ☐ 아니오 ☐	설치검사번호 (　　)
(39인 이하) 취사부 임용		예 ☐ 아니오 ☐	임용일자 (　　)

2)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 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세션종료) 되므로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분 이내 입력이 어려울 시에는 작성하던 페이지의 입력을 마치고 다음버튼을 누른 후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보고서에 나타나는 보육교직원 관련 정보는 참여신청서에 입력한 정보가 연동됩니다(현장관찰 시에는 관찰당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와 실제 운영상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합니다).
-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어린이집의 특징 및 장점의 내용은 미리 워드프로그램(한글, MS워드, 메모장 등)에 작성 후 '붙이기(붙여넣기)'하면 입력이 편리합니다.
-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등은 심의 시 점수에 반영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완료] 전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오류 체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장하고 이전 이동]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제출완료] 클릭 후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체점검보고서」 예시(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

어린이집 ID				어린이집명	
자체점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설립유형	
어린이집특성	☐ 일반 ☐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방과후통합 ☐ 시간연장형 ☐ 휴일보육 ☐ 24시간				
정부지원	☐ 지원 ☐ 미지원	농어촌 특례여부	☐ 예 ☐ 아니오	정원 / 현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보

구분	이름	총 보육경력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자격구분	최종정기건강검진일자
원장		년 개월			
보육교사 추가		년 개월			
		년 개월			
기타 보육교직원 추가		년 개월			
		년 개월			

어린이집 현원 정보

구분 추가	반명	연령	영유아수	교사수
1		만 세	명	명
2		만 세	명	명
3		만 세	명	명

(재)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입력) 요령

1. 항목별 수준 및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작성

-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항목별로 우수한 수준(3점),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 미흡한 수준(1점) 중 해당란에 ☑ 합니다.

-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자 이내)
  -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여 수정·보완 및 개선된 점을 기록하시거나 개선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대 5-7.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우수 (3점)	☑	영유아와 보육교사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통해 위생과 청결유지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영유아와 보육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영유아와 보육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어린이집의 특징 및 장점(1,500자 이내)
  -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의 특징,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의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2.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상기 모든 내용은 심의 시 점수에 반영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증지표 영역별 점수프로파일
  - [제출완료] 전 평가인증지표 영역별 점수프로파일을 살펴보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입력한 자체점검보고서의 총점 및 영역별 점수와 평가인증 기준 점수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완료] 전 [출력(자체점검)] 클릭 후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오류 체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때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저장하고 이전 이동]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제출완료] 클릭 후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완료 확인방법
  - 자체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된 경우, [나의상태]와 [자체점검보고서작성 상태]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완료]로 자동 변환됩니다.
  - [제출 완료]된 최종 자체점검보고서는 [세부내역(자체점검)] 클릭 후 [보고서 보기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 약 서

_____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평가인증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자체점검보고서는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로 구성된 자체점검위원회에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체점검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후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방문에 동의하며 현장관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자체점검위원회	이 름
원 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위의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원장명 : 0 0 0

영역 1. 보육환경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1-1. 활동영역의 배치			
우수 (3점)	□	어린이집의 공간이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 발달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가 적절하다.	
부분적우수 (2점)	□	어린이집의 공간이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 발달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두 영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흡 (1점)	□	어린이집의 공간이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장 1-2.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우수 (3점)	□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은 있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	
미흡 (1점)	□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다.	
장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우수 (3점)	□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가 있으나, 놀이기구가 3종 미만 있다.	
미흡 (1점)	□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가 없거나, 놀이기구가 없다.	
장 1-4.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우수 (3점)	□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	
미흡 (1점)	□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1-5. 신체활동 자료			
우수 (3점)	□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	대근육활동 자료나 소근육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6. 언어활동 자료			
우수 (3점)	□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	언어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7. 자연탐구활동 자료			
우수 (3점)	□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	수활동 자료나 과학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8. 예술활동 자료			
우수 (3점)	□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	음악·동작활동 자료나 미술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1-9.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우수 (3점)	□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	역할놀이 자료나 쌓기놀이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10.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			
우수 (3점)	□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만,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1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우수 (3점)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미흡 (1점)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거의 없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1-12.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우수 (3점)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미흡 (1점)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없고, 자료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우수 (3점)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있고,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은 있으나, 별도의 공간은 없다.	
미흡 (1점)	□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없다.	
장 1-14. 교사용 참고자료			
우수 (3점)	□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한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	
미흡 (1점)	□	교사용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영역 2. 운영관리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2-1.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우수 (3점)	□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안내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는다.	
미흡 (1점)	□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우수 (3점)	□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가 미흡하다.	
미흡 (1점)	□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원아에 관한 문서가 거의 없다.	
장 2-3.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우수 (3점)	□	모든 반에서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법정 비율을 지키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 이내이나,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반이 있다.	
미흡 (1점)	□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반이 있다.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우수 (3점)	□	보육교직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	보육교직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팀 협력이 가끔 이루어진다.	
미흡 (1점)	□	보육교직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며, 팀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2-5.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우수 (3점)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원장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준다.	
부분적우수 (2점)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원장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이를 알려준다.	
미흡 (1점)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없거나, 원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장 2-6. 원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우수 (3점)	□	원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교사회의를 월 2회 이상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원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교사회의를 월 2회 미만 한다.	
미흡 (1점)	□	원장과 교사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회의를 월 1회 미만 한다.	
장 2-7. 보육교직원의 교육			
우수 (3점)	□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는다.	
부분적우수 (2점)	□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미흡하거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지 못한다.	
미흡 (1점)	□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원장이나 교사가 있다.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우수 (3점)	□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다.	
미흡 (1점)	□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2-9.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우수 (3점)	□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흡 (1점)	□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2-10.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우수 (3점)	□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미흡 (1점)	□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하다.	
장 2-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우수 (3점)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부모에게 안내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나, 부모에게 안내하지는 않는다.	
미흡 (1점)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제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우수 (3점)	□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가끔 이루어진다.	
미흡 (1점)	□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2-13.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우수 (3점)	□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미흡 (1점)	□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없으며,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	

영역 3. 보육과정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우수 (3점)	□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이 장애영유아의 연령, 흥미,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보육계획안은 구체적이나 연령, 흥미, 계절 등의 고려가 미흡하여 연계성이 적다.	
미흡 (1점)	□	보육계획안이 없거나 있어도 구체적이지 않고 연계성도 없다.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우수 (3점)	□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부분적우수 (2점)	□	보육활동이 한두 가지 활동에 치우쳐 계획되어 있거나,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지 않는다.	
미흡 (1점)	□	보육활동이 주로 대집단 활동이나 일상적 양육이 대부분이다.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우수 (3점)	□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매일 2시간 30분 이상이고,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30분 미만이거나, 한두 영역의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	
미흡 (1점)	□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 미만이다.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우수 (3점)	□	실외활동 시간이 주 1회 이상이고, 다양한 실외활동이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	실외활동이 월 2~3회이거나, 한 가지 활동으로만 이루어진다.	
미흡 (1점)	□	실외활동이 월 1회 이하이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우수 (3점)	□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구분하지 않으며,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일과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나누지는 않았으나, 통합성이 적다.	
미흡 (1점)	□	일과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나누어져 있다.	
장 3-6. 사회적응 프로그램			
우수 (3점)	□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자주 제공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가끔 제공한다.	
미흡 (1점)	□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우수 (3점)	□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나,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미흡하게 이루어진다.	
미흡 (1점)	□	보육과정을 평가하지 않거나,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3-8. 신체활동			
우수 (3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을 자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을 가끔 한다.	
미흡 (1점)	□	대근육활동이나 소근육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3-9. 언어활동			
우수 (3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자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을 가끔 한다.	
미흡 (1점)	□	언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우수 (3점)	□	예절과 질서, 규칙 지키기, 정리정돈 등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자연스럽게 보육과정에서 제공한다.	
부분적우수 (2점)	□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가끔 하거나, 활동을 하더라도 교사 지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미흡 (1점)	□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3-11. 사회성 증진 활동			
우수 (3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자주 제공된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가끔 제공된다.	
미흡 (1점)	□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다.	
장 3-12. 자연탐구활동			
우수 (3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자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가끔 한다.	
미흡 (1점)	□	수활동이나 과학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3-13. 예술활동			
우수 (3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자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가끔 한다.	
미흡 (1점)	□	음악·동작활동이나 미술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우수 (3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가 자주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가 가끔 이루어진다.	
미흡 (1점)	□	역할놀이나 쌓기놀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3-15.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우수 (3점)	□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미흡 (1점)	□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우수 (3점)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흡 (1점)	□	교사가 집단 배식 및 급식에만 열중한다.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우수 (3점)	□	낮잠 시간을 마련하여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한다.	
부분적우수 (2점)	□	낮잠 시간은 있으나,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나 개별적인 낮잠 습관 중 한 가지를 배려하지 못한다.	
미흡 (1점)	□	낮잠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한다.	
장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우수 (3점)	□	교사는 기저귀 갈기, 화장실 사용 시 장애 영유아가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개별적 상호작용을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우수 (3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4-5.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우수 (3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장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우수 (3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우수 (3점)	□	교사는 나누기, 협동하기, 도와주기, 사이좋게 지내기, 배려하기 등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한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끔 격려한다.	
미흡 (1점)	□	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거의 격려하지 않는다.	
장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우수 (3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 참여하고, 놀이를 활성화시킨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놀이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미흡 (1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4-9.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우수 (3점)	□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원인을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교사가 해결해 주거나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장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우수 (3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활동과 경험이 의미있게 연결되도록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는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교사는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역 5. 건강과 영양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우수 (3점)	□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다.	
부분적우수 (2점)	□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공간이 한두 군데 있다.	
미흡 (1점)	□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공간이 세 군데 이상 있다.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우수 (3점)	□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5-3. 놀잇감의 청결			
우수 (3점)	□	놀잇감이 전반적으로 청결하다.	
부분적우수 (2점)	□	놀잇감 일부가 청결하지 않다.	
미흡 (1점)	□	놀잇감 대부분이 청결하지 않다.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우수 (3점)	□	화장실과 세면장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나 비품 구비가 미흡하다.	
미흡 (1점)	□	화장실과 세면장이 청결하지 않거나,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장 5-5.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우수 (3점)	□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부분적우수 (2점)	□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 상태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 상태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우수 (3점)	□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5-7.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우수 (3점)	□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통해 위생과 청결을 유지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 5-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우수 (3점)	□	장애 영유아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구 등을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침구의 청결상태가 미흡하다.	
미흡 (1점)	□	장애 영유아가 공동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	
장 5-9.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우수 (3점)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다.	
미흡 (1점)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우수 (3점)	□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지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미흡 (1점)	□	투약의뢰서나 투약일지가 없다.	
장 5-11.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우수 (3점)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나,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하다.	
미흡 (1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우수 (3점)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고, 식단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조리되어 제공된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거나, 식품의 조리 형태가 미흡하다.	
미흡 (1점)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고, 식품의 조리 형태도 미흡하다.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우수 (3점)	□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된다.	
부분적우수 (2점)	□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계획되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된다.	
미흡 (1점)	□	간식이 오전과 오후 중 한 번만 계획되어 있거나, 주로 인스턴트식품이 제공된다.	

영역 6. 안전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우수 (3점)	□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 (2점)	□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우수 (3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 (2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다.	
미흡 (1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군데 이상 있다.	
장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우수 (3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 (2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우수 (3점)	□	어린이집 실내외의 모든 놀잇감에는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 (2점)	□	어린이집 실내외의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어린이집 실내외의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우수 (3점)	□	실내외 위험한 물건은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계속)

(이어서)

항 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6-6.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우수 (3점)	□	교사는 실내외에서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교사는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 외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우수 (3점)	□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잘 수립되어 있고, 이를 잘 지킨다.	
부분적우수 (2점)	□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이를 잘 지키지 못한다.	
미흡 (1점)	□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장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우수 (3점)	□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할 경우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행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차량 운행 시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차량 운행 시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우수 (3점)	□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우수 (3점)	□	보육교직원과 장애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한다.	
부분적우수 (2점)	□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거나,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미흡 (1점)	□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의 특징 및 장점(/ 1,500)

-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의 특징

2)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의 장점

○○ 어린이집의 우수사례

우수사례		실시 여부	구체적 내용
1급 교사 - 전체교사의 50% 이상(40인 이상) - 전체교사의 40% 이상(39인 이하)		예 □ 아니오 □	1급 교사 ( )명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예 □ 아니오 □	1년 이상 근무교사 ( )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여부		신고 □ 미신고 □ 미운행 □	신고필증번호 (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예 □ 아니오 □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예 □ 아니오 □	
놀이시설 설치 검사 여부	40인 이상	예 □ 아니오 □	설치검사번호 ( )
옥외 놀이터 설치	40인 이상 ~ 50인 미만		
취사부 임용 여부	39인 이하	예 □ 아니오 □	임용일자 ( )

※ 2011 평가인증 지표 일부 개정으로 40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05년 이전 어린이집으로서 50인 이상 52인 미만 어린이집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인정합니다.

※ 현장관찰 시에는 어린이집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위 기록 사항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원장명 : 0 0 0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점수 기록표

항 목		점수	(최고점수)
영역 1. 보육환경	1~4. 어린이집 환경		(12)
	5~11. 보육활동 자료		(21)
	12~14. 보육지원 환경		(9)
	합 계		**(42)**
영역 2. 운영관리	1~4.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12)
	5~7. 보육인력		(9)
	8~11. 가족과의 협력		(12)
	12~13. 지역사회와의 협조		(6)
	합 계		**(39)**
영역 3. 보육과정	1~7.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21)
	8~15. 보육활동		(24)
	합 계		**(45)**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1~3. 일상적 양육		(9)
	4~9. 교사의 상호작용		(18)
	10. 교수법		(3)
	합 계		**(30)**
영역 5. 건강과 영양	1~8. 청결과 위생		(24)
	9~11. 질병관리		(9)
	12~13. 급식과 간식		(6)
	합 계		**(39)**
영역 6. 안전	1~5. 실내외 시설의 안전		(15)
	6~10. 장애 영유아의 안전보호		(15)
	합 계		**(30)**
전체 합계			**(225)**

평가인증지표 영역별 점수프로파일(장애아전문)

문항평균	보육 환경	운영 관리	보육 과정	상호 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전체
3.0	42.0	39.0	45.0	30.0	39.0	30.0	225.0
2.9	40.6	37.7	43.5	29.0	37.7	29.0	217.5
2.8	39.2	36.4	42.0	28.0	36.4	28.0	210.0
2.7	37.8	35.1	40.5	27.0	35.1	27.0	202.5
2.6	36.4	33.8	39.0	26.0	33.8	26.0	195.0
2.5	35.0	32.5	37.5	25.0	32.5	25.0	187.5
2.4	33.6	31.2	36.0	24.0	31.2	24.0	180.0
2.3	32.2	29.9	34.5	23.0	29.9	23.0	172.5
2.2	30.8	28.6	33.0	22.0	28.6	22.0	165.0
2.1	29.4	27.3	31.5	21.0	27.3	21.0	157.5
2.0	28.0	26.0	30.0	20.0	26.0	20.0	150.0
1.9	26.6	24.7	28.5	19.0	24.7	19.0	142.5
1.8	25.2	23.4	27.0	18.0	23.4	18.0	135.0
1.7	23.8	22.1	25.5	17.0	22.1	17.0	127.5
1.6	22.4	20.8	24.0	16.0	20.8	16.0	120.0
1.5	21.0	19.5	22.5	15.0	19.5	15.0	112.5
1.4	19.6	18.2	21.0	14.0	18.2	14.0	105.0
1.3	18.2	16.9	19.5	13.0	16.9	13.0	97.5
1.2	16.8	15.6	18.0	12.0	15.6	12.0	90.0
1.1	15.4	14.3	16.5	11.0	14.3	11.0	82.5
1.0	14.0	13.0	15.0	10.0	13.0	10.0	75.0

3

문서 자료집

목 차

Ⅰ. 평가인증 문서 자료집의 이해와 활용

1. 평가인증 문서 자료집의 목적 ····· 396
2. 평가인증 문서 자료집의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 396

Ⅱ. 평가인증 문서 및 서식(안)의 실제

문서1.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 398
문서2. 운영일지 ····· 410
문서3. 생활기록부 ····· 413
문서4. 근로계약서 ····· 418
문서5. 업무분장표 ····· 421
문서6. 가정통신문 ····· 423
문서7. 알림장 ····· 426
문서8. 보육계획안 ····· 428
문서9. 보육일지 ····· 434
문서10. 000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 ····· 442
문서11.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 ····· 444
문서12. 건강검진 서류 ····· 446
문서13. 식단표 ····· 449
문서14. 차량안전수칙 ····· 451
문서15. 비상 시 대처방안 ····· 454

Ⅰ. 평가인증 문서 자료집의 이해와 활용

1. 평가인증 문서 자료집의 목적

☞ **효율적인 평가인증 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평가인증 시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평정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과다한 문서 작성을 지양함으로써 평가인증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간소화·통합된 문서 서식을 제공하고, 평가인증 현장관찰 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문서와 평정기준, 문서작성 방법(TIP)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2. 평가인증 문서 자료집의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 **본 문서 자료집의 서식·문서는 참고용이며, 서식의 활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서식 및 문서는 평가인증 준비를 보다 쉽게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는 서식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활용 중인 서식이 있는 어린이집은 동 자료집의 문서를 활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기존 문서에 '필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반드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료집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각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의 분량 등은 평가 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평가인증 시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은 해당 지표별 문서의 작성 주기, 실시 여부, 실시 내용에 한하며, 문서의 구분 작성 여부, 문서의 분량, 문서의 색상, 사진 첨부 여부, 수기 작성 여부 등은 평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자료집 외 법정서식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 동 자료집의 서식·문서는 평가인증의 현장관찰 시 필요한 사항만을 수록하였으며 동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규정된 문서 등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동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현장관찰 시 확인하지 않으나, 지도점검 시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음

Ⅱ. 평가인증 문서 및 서식(안)의 실제

문서1. 어린이집 운영안내서(문서(안))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안내서」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2-1. 소 1-4. 장 2-1.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 운영방침 - 필수기재사항 :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보육목표,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보육시간, 보육료, 연령별 집단크기와 교사 수, 보육교직원의 구성, 어린이집의 환경,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등하원 절차, 안전지침, 신입원아의 초기적응을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
대 2-6. 소 1-8. 장 2-7. 보육교직원의 교육	• 신입인력 오리엔테이션 자료
대 2-7.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 필수기재사항 :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보육목표,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보육시간, 보육료, 연령별 집단크기와 교사 수, 보육교직원의 구성, 어린이집의 환경,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등하원 절차, 안전지침, 신입원아의 초기적응을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
대 2-12. 장 2-13.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 전문가 정보
대 5-9. 소 4-9. 장 5-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보호 시 처리절차
대 5-10. 소 4-10. 장 5-11.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감염병 대책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예 : 수두, 볼거리, 홍역, 수족구, 독감, 뇌염 등),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대처방법
대 6-7. 소 5-7. 장 6-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 영유아 인계 과정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예 : 차량운행, 영유아를 직접 데리고 등하원 등),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도록 함,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인계함

● 작성 Tip

1. ‘어린이집 운영안내서’에 포함 가능한 평가인증 문서 목록
 - 운영방침, 개방원칙, 전문가 정보, 감염병 대책,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처리,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 신입 인력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
 ※ 위의 평가인증지표와 관련된 문서들은 각각 개별 문서로 작성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운영안내서’에 포함하여 하나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음
2. ‘어린이집 운영안내서’에 포함된 ‘보육교직원 역할’은 신입인력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단, ‘어린이집 운영안내서’의 내용 중 39인 이하 유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 전문가 정보’에 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어린이집 운영안내서’의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에 맞게 작성한다.

20　　년도

운영 안내서

ooo 어린이집

차 례

Ⅰ. **보육철학 및 목표**
1. 보육철학
2. 보육목표

Ⅱ. **운영현황**
1. 어린이집 연혁
2. 어린이집의 환경
3. 보육시간
4. 보육료
5. 연령별 집단크기와 교사수
6. 보육교직원 구성
7. 보육교직원 역할

Ⅲ. **보육프로그램**

Ⅳ. **하루일과**

Ⅴ. **건강·영양·안전관리**
1. 건강관리
2. 영양관리
3. 안전관리

Ⅵ.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1. 부모참여프로그램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4. 지역사회 전문가 정보

Ⅶ. **공지사항**
1.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2.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3. 감염병 대책
4.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응급처치동의서 작성 안내
5. 등·하원 절차 및 귀가동의서 작성 안내
6.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안내
7.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이 갖는 책임한계에 관한 규정
8. 기타

Ⅰ. 보육철학 및 목표

1. 보육철학

2. 보육목표

Ⅱ. 운영현황

1. 어린이집 연혁

2. 어린이집의 환경(실내·외 보육환경)

3. 보육시간

4. 보육료

연령	생년월일	금액(원)	비고
	~		
	~		
	~		
	~		
	~		

5. 연령별 집단크기와 교사 수

반 명	연 령	정원(명)	교사수

6. 보육교직원 구성

구분							
인원(명)							

7. 보육교직원 역할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따라 대상이 추가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역할 및 자세, 업무, 준수사항 등)
보육교사	
대체교사	
취사부(조리사)	
차량기사	
자원봉사자	

Ⅲ. 보육프로그램 (특색, 연령별 연간보육계획안, 행사계획안 등)

Ⅳ. 하루일과 (반별 하루일과표)

Ⅴ. 건강·영양·안전관리

1. 건강관리
2. 영양관리
3. 안전관리

Ⅵ.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1. 부모참여프로그램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4. 지역사회 전문가 정보

Ⅶ. 공지사항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에 따라 기재)

1.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 신입원아 적응 절차 (일주일 이상의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원의 상황에 따라 수립한다.

2. 어린이집의 개방원칙

(작성 예시)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방문하셔서 자녀들의 활동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관과 관련하여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시면 하루일과표를 드립니다. 참관실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참관시 자녀가 부모님을 보게 되면 일상적인 일과 진행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다시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할 수도 있으니 자녀의 적응정도에 따라 미리 담임선생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3. 감염병 대책

(작성 예시)

〈대처방법〉
감염병이란 감염된 사람과의 직·간접적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환으로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많은 영유아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접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정 감염병이나 계절별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완치된 후 등원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분리 보육하며 부모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작성 예시)

〈영유아기에 발생가능한 법정 감염병〉

병명	증상	예방대책			
		예방접종	환자격리	격리기간	유의점
세균성 이질 -제1군-	- 고열과 구역질, 때로는 구토, 경련성 복통, 후중기(*변이 남은 느낌)를 동반한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전형적인 경우는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나옴 - 경련, 두통, 기면, 경부강직, 환각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 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 배변 후 손씻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교육·홍보 -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크레졸 3%)
디프테리아 -제2군-	- 발열과 함께 코, 인두, 편도, 후두 등의 상기도 침범부위에 염증과 위막을 형성하고, 드물게 피부, 결막 등을 침범함	○	○	- 항생제 치료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채취한 비강 및 인두부위의 검체에서 모두 균이 음성일 때까지	- 환자가 사용하였거나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백일해 -제2군-	- 전구기 : 콧물, 눈물, 경한 기침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이 1~2주간 나타남 - 경해기 : 이후 2~4주간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고 기침 후에 구토를 보임 - 회복기 : 1~2주에 거쳐 회복기에 이르는데 이때 상기도 감염에 이환되어 다시 발작성 기침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음	○	○	-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 항생제 치료 중인 경우 : 치료 5일 후까지	-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홍역 -제2군-	- 전구기(3~5일) : 감염력이 강한 시기로 발열(38℃ 이상),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등이 나타남 - 발진기 : 홍반성 구진성 발진(비수포성)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서로 융합됨.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3일간 38℃ 이상의 고열을 보임 - 회복기 :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김	○	○	- 전구증상이 나타난 후부터 발진 후 5일까지	
일본 뇌염 -제2군-	- 전구기(2~3일), 급성기(3~4일), 아급성기(7~10일), 회복기(4~7주)의 임상증상을 보임 - 현성감염의 경우 급성으로 진행하여, 고열(39~40℃),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등을 보임	○	×		-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환으로 모기 박멸이 중요

병명	증상	예방대책			
		예방접종	환자격리	격리기간	유의점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제2군-	- 전구기(1~2일) :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을 보임 - 이하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85%), 악하선도 흔히 침범하나 설하선은 드물게 침범함 - 발병 초기에는 한쪽 이하선에서 시작하여 2~3일 후에는 양측을 다 침범함 - 약 10~15%는 한쪽만 침범 - 통상 1~3일째 최고조에 도달하였다가 3~7일 이내에 점차 호전	○	○	- 이하선염이나 다른 증상 발현 후 9일까지	- 환자의 코나 목의 분비물로 오염된 물품 소독
풍진 -제2군-	-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됨 - 발진 :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날에는 홍역의 발진과 비슷하며, 둘째날에는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에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 발열, 피로, 결막염, 비카타르 등	○	○	- 발진 후 7일까지	
수두 -제2군-	- 전구기 : 전구기는 발진이 발생한지 1일 내지 2일 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남. 전구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발진기 : 발진은 주로 몸통, 두피, 얼굴에 발생하며 24시간 내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의 순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동시에 여러 모양의 발진이 관찰됨. 수포는 매우 가려움	○	○ (격리 권장)	-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 까지 -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람에게서 가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인플루엔자 -제3군-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	×		
수족구병	-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등으로 시작됨 - 일반적으로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내 통증성 피부병변이 혀, 잇몸, 뺨의 안쪽에 발생하며,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집이 되고, 종종 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함 - 가려움이 없는 피부발진이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타나며 엉덩이와 외음부에 나타날 수도 있음 - 대개 증상이 경미하여 대부분 의학적 치료없이 7~10일 안에 회복	×	○ (격리 권장)	- 발병 후 1주일 까지	-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나, 손씻기를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등 청결유지와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등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동이 중요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2010), 『2013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4.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응급처치동의서 작성 안내

(작성 예시)

- 아픈 영유아는 정도에 따라 교실 내에서 휴식하거나 양호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이한 체질이나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십시오.
-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되어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려 귀가 조치합니다.
- 의사의 검진 결과 감염병에 걸린 경우 완쾌될 때까지 등원할 수 없으며, 집단보육 상황이므로 등원 시 감염성이 없고 완쾌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 후에 등원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해열제 등을 임의로 투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방된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약의뢰서가 없는 경우에는 약을 투약하지 않습니다.
- 투약의뢰서는 지정된 양식으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동의서의 비상연락망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처치동의서는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등·하원 절차 및 귀가동의서 작성 안내

(작성 예시)

- 등·하원 시(차량 이용 시 포함)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어린이집 선생님이 서로에게 직접 인계해 주십시오.

※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더라도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 등하원시 데려오고 데리고 갈 사람을 귀가동의서에 기재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연락 없이는 다른 사람이 영유아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 귀가동의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가동의서는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안내

7.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이 갖는 책임한계에 관한 규정

8. 기타

문서2. 운영일지(서식(안))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안내서」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2-5. 소 1-7. 장 2-6.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 교사회의 기록 - 횟수 : 월 2회 이상
대 2-6. 소 1-8. 장 2-7. 보육교직원의 교육	① 신입인력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 - 대상 : 평가월의 3개월 전부터 입사한 신입인력 - 횟수 : 입사 시 1회 ② 직무·승급교육 - 대상 : 해당자별 해당 시기 ③ 기타 재교육 - 대상 : 임용된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 횟수 : 평가월의 3개월 전부터 기간 내 1회 이상
대 2-7.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
대 2-8. 소 1-10. 장 2-9.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 개별면담 - 횟수 : 년 2회 이상
대 2-9. 소 1-11. 장 2-10. 어린이집에서의 부모 참여	• 실시기록 - 횟수 : 년 3회 이상
대 2-10. 장 2-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 구성 :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 횟수 : 년 2회 이상
대 2-11.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 실시기록 - 횟수 : 월 1회 이상(유아), 두 달에 1회 이상(영아)
대 2-12. 장 2-13.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 문제 파악 기록
대 6-10. 소 5-10.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소방훈련 기록 - 대상 : 모든 영유아, 보육교직원 - 횟수 : 월 1회 이상

● 작성 Tip

1. ‘운영일지’에 포함 가능한 평가인증 문서 목록
 - 출석부, 행사 및 특이사항(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 신입인력 오리엔테이션 실시,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 소방대피훈련), 부모개별면담, 운영위원회 회의, 교사회의, 교사교육 실시 기록 등
 ※ 위의 평가인증지표와 관련된 문서들은 각각 개별 문서로 작성할 필요 없이 ‘운영일지’에 포함하여 하나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음
2. ‘운영일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 중 ‘행사 및 특이사항’, ‘방문자 및 부모 개별면담’, ‘교사회의/교사교육’은 평가인증에서 평정 대상이 되는 실행기록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실시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 평정 시에는 주기에 따른 회의 실시여부 및 간략한 실시내용만을 확인하며, 문서의 양이 많다고 해서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3. ‘운영일지’가 의무 서류가 아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이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 발생 시에만 기록한다.
4. ‘운영일지’의 내용 중 39인 이하 유형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생략 가능하다.

운 영 일 지

결재	담당	원장

일 시	20 년 월 일 날씨:						
행사 및 특이사항*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회의, 신입원아부모오리엔테이션,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 소방대피훈련 등)						
영유아 입/퇴소 관계	입소 영유아						
정원 \ 연령	계	0세					
반							
반별구성							
현 원							
결 석							
출 석							
영양관리** (제공식단)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연월차 휴가				실습교사 및 자원봉사			
방문자 및 부모 개별면담*							
교직원회의*							
교직원교육*	(신입인력 오리엔테이션, 보수교육, 원내·외교육 등)						
당직 시 특이사항							
오전당직	(인)	출근시간		오후당직	(인)	퇴근시간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 2-7. 장 2-8.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 · 대상 : 신입원아 및 중간입소 원아 부모 · 횟수 : 입소 시 1회
대 2-9. 소 1-11. 장 2-10.	- 부모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기록 · 횟수 : 년 3회 이상
대 2-10. 장 2-11.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 횟수 : 년 2회 이상
대 2-11. 장 2-12.	- 지역사회 연계 활동 기록 · 횟수 : 월 1회 이상(유아) / 두 달에 1회 이상(영아)
대 2-12. 장 2-13.	-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 파악 기록
대 6-10. 소 5-10. 장 6-10.	- 소방훈련 기록 · 대상 :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 횟수 : 월 1회 이상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 2-8. 소 1-10. 장 2-9.	- 부모 개별면담 실시 기록 · 횟수 : 년 2회 이상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 2-5. 장 2-6.	- 교사회의 실시 기록 · 횟수 : 월 2회 이상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 2-6. 소 1-8. 장 2-7.	- 신입인력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 · 대상 : 평가월의 3개월 전부터 입사한 신입인력 · 횟수 : 입사 시 1회 - 직무·승급교육 이수 기록 · 대상 : 해당자별 해당 시기 - 기타 재교육 실시 기록 · 대상 : 임용된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 횟수 : 평가월 3개월 전부터 기간 내 1회 이상

* 평가인증에서 평정 대상이 되는 실행기록이므로 반드시 실시하고, 실시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야 함.
**'제공식단'을 기록한 경우에는 식단표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문서3. 생활기록부(보건복지부서식)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생활기록부」 문서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2-2. 소 1-5.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 생활기록부 - 예방접종, 신체발달상황 누적기록 - 횟수 : 최소 2회 이상
	• 입·퇴소 관련 서류

● 작성 Tip

1. 이 문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제공되는 표준서식이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 생활기록부는 법정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단, 필요에 의해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정 서식에 있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로 인정 안 됨.
2. 입·퇴소 관련 서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3. 모든 원아에 대해 '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구비하여야 한다.

생 활 기 록 부(영아)

(앞쪽)

1.인적사항

어린이집명						
아동	이 름	(한글) (한자)	성 별	남·여		사진 (3×4㎝)
	생년월인		입·퇴소일	입소 퇴소		
	주 소					
	전화번호		혈액형			
보호자	아동과의 관 계	부	모	형제(자매)	기 타	
	이 름					
	직 업					
	근 무 지 (전화번호)					
	근무 시간 평 일					
	근무 시간 토요일					
	근무 시간 일요일					
데려오고, 데려가는 사람		(성명 : 관계 :) (성명 : 관계 :)				

※ 비 고 : 보호자란 중 부·모가 있을 경우 양자 모두 기재

2. 기본생활습관 및 발달상황

영역 \ 연령		0세	1세	2세
기본생활습관	수 면			
	배 변			
	식 사			
활동발달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3. 국가필수 예방접종

(뒷쪽)

종류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BCG(피내)	1회		
B형간염	1차		
	2차		
	3차		
DTaP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1차		
	2차		
	3차		
	4차(추가)		
	5차(추가)		
폴리오	1차		
	2차		
	3차		
	4차(추가)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1차		
	2차(추가)		
수두	1회		
일본뇌염(사백신)	1차		
	2차		
	3차(추가)		
	4차(추가)		
인플루엔자	사백신		
	생백신		
장티푸스	고위험군에 한함		
기타 임시예방접종 등	*명칭 기재*		
	명칭 기재		

4. 병력기록

병 명	질병발생 연월일 및 질병의 정도	
	입 소 전	입 소 후

5. 신체발달상황

측정시기 / 구분								
신 장(㎝)								
몸 무 게(kg)								

비고 : 18개월미만의 영아는 2개월마다, 그 이상의 영아는 6개월마다 측정•기록한다.

기록관리자 (인)

생 활 기 록 부(유아)

(앞쪽)

1. 인적사항

어린이집명				졸업대장	
아동	이 름	(한글) (한자)	성 별	남·여	사진 (2.5×3㎝)
	생년월일		입·퇴소일	입소 퇴소	
	주 소				
	전화번호		혈액형		
보호자	아동과의 관 계	부	모	형제 (자매)	기 타
	이 름				
	직 업				
	근 무 지 (전화번호)				
	근무시간 평 일				
	근무시간 토요일				
	근무시간 일요일				
데려오고, 데려가는 사람		(성명 : 관계 :) (성명 : 관계 :)			

※ 비 고 : 보호자란 중 부모가 있을 경우 양자 모두 기재

2. 출결상황

구분 \ 연령	3세	4세	5세
보육일수			
결석일수			
의 견			

3. 국가필수 예방접종

종류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DTaP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4차(추가)		
	5차(추가)		
폴리오	4차(추가)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추가)		
일본뇌염(사백신)	4차(추가)		
인플루엔자	사백신		
	생백신		
장티푸스	고위험군에 한함		
기타 임시예방접종 등	*명칭 기재*		
	명칭 기재		

4. 신체발달상황

구분 \ 연령	3세	4세	5세
신 장(㎝)			
몸 무 게(kg)			
의 견			
특이사항			

(뒷쪽)

5. 활동발달상황

성 명			
연 령 / 영 역 별	3세	4세	5세
기본생활습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종합의견			

문서4. 근로계약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서식)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근로계약서」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2-4. 소 1-7. 장 2-5.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복무규정 포함) - 대상 : 모든 임용된 보육교직원(고용된 원장, 기타 교직원 포함) - 횟수 : 입사 시 1회 ※ 단,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작성해야 함 - 필수기재사항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작성 Tip

1.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날인하여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각각 한부씩 보관한다.

근 로 계 약 서(예시)

* 본 양식은 예시자료로써 어린이집에서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년)

(기관명) 대표 ×××(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담당업무)

"을"의 담당 업무는 (　　)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 장소)

"을"의 근로 장소는 (　　)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일 - 평일, 토요일

나. 근로시간 - 평일 00:00 ~ 00:00 (휴게시간 00:00 ~ 00:00)

토요일 00:00 ~ 00:00 (휴게시간 00:00 ~ 00:00)

제4조(임금)

① "을"의 임금은 월급 총액 (　　)원으로 한다.

(※ 월 급여는 매년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직원의 경력, 능력, 태도,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 필요한 경우 수당별 추가 기재)

② 전항의 임금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일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 ‘국고보조시설’의 경우 아래 조항으로 대체

제4조(임금)

① “을”의 임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 ) 호봉 갑(을) 월급 총액 ( )원으로 시작한다.

(※ 필요한 경우 수당별 금액 기재)

② 전항의 임금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일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제5조(휴일)

① “을”의 유급휴일은 주휴일(매주 0요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② 그 밖의 유급휴일은 “갑”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6조(휴가)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전년도 8할 이상 출근 시 연간 15일, 입사 첫해는 전월 개근 시 월 1일을 주며 실제 사용한 일수는 이듬해 15일에서 차감)를 주며, 그 외 휴가는 “갑”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사용자)		을(근로자)	
대 표 자 :	(인)	이 름 :	(인)
사업장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연 락 처 :		연 락 처 :	

○○ 어린이집

문서5. 업무분장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서식)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업무분장표」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2-5. 소 1-7. 장 2-6.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개인별 업무분장 사항

● 작성 Tip

1.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분장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작성한다.
2. 수시로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업무분장표를 게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본 양식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이며,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업무분장표(예시)

구 분	담 당	업 무 내 용	비 고
주 요 업 무	원 장	- 원의 전반적인 교육 및 운영 계획 / 견학 및 행사계획 - 업무분장, 감독, 근무평정 등 업무관리 - 시설설비 및 재정 관리 / 운영 및 교육 정보 수집 - 행정당국 및 단체와의 관계유지 / 일지 취합 검사	- 전체 청소 구역 관리
	교 사	- 보육활동 진행 및 준비 / 보육일지 작성 - 각 보육실의 환경 구성 및 청결 관리 / 학부모 상담 - 영유아에 대한 관찰 일지 및 보고서 작성 -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 영유아 영양 및 급식 관리	- 담당 교실 관리
기 타 업 무	교 사 000	- 영아반의 전반적인 교육내용 관리 - 연간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 작성 - 원아 관리 및 관찰지도 / 소모성 교재 점검 및 신청 - 시청각 기자재관리(O.H.P, 빔프로젝터, 비디오 카메라 등) - 안전관리 (소화기 점검), 비상 대피 훈련 담당	- 계단 청소 - 외부 청소
	교 사 000	- 입학상담 및 자원봉사자 담당 / 위생 소독 - 식단표작성 및 주문 담당 / 화분 관리 - 게시판(주간보육계획안, 주간식단표, 월행사) 담당 및 관리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수건 관리
	교 사 000	- 유아반의 전반적인 교육내용 관리 - 연간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작성 - 원아 관리 및 관찰지도 / 교재교구 정리 및 관리 - 행사 일지 작성 / 비디오 및 테이프 정리 담당	- 실외 놀이터 청소
	교 사 000	- 사무실 도서 정리 및 관리 / 업무 일지 작성 - 종이, 시트지, 코팅지, 복사지(복사기) 등 지류 정리 및 관리 - 약품장 관리 및 약품사용 대장 담당 / 생일잔치 계획 및 준비	- 현관 청소
	운전사	- 차량안전 준수사항 - 차량내 소화기관리	- 차량청결
	조리사	- 1층 물컵 관리 / 식자재 주문 및 관리 - 2층 정수기 물컵 관리	- 수족관, 화초 - 세탁기관리

문서6. 가정통신문(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서식)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2-1. 소 1-4. 장 2-1.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 운영방침 안내
대 2-8. 소 1-10. 장 2-9.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 의사소통 방법 - 종류 :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등)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의사소통 - 필수기재사항 : 보육계획안, 급·간식 식단
대 2-10. 장 2-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에 대한 부모 안내 확인

● 작성 Tip

1. 부모에게 어린이집 생활과 보육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정통신문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
2. '가정통신문'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예시1, 예시2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정통신문 (예시1)

3월 2주 가정통신문

부모님께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을 돕고자 가능한 시간을 서로 의논하여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께 보육일과를 지켜보거나 활동의 일부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이러한 보육경험은 자녀의 행동 및 어린이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별 보육실 개방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의 보육실 입실과정에서 영유아들의 안정된 생활과 선생님들의 보육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특히, 영아반 부모님께서는 보육실 입실시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과 청결한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영유아의 침구(개인이불 및 베개)를 세탁하여 0월 0일 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예시2)

〈 20　　년도〉

기 간 :　3월 1주-2주 〈 3월 2일 ~ 3월 10일 〉　　교사 : 윤**, 이**

주 제		나는 슬기반이예요					
목 표		슬기반 교실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된 어린이집 환경을 살펴본다.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등원 및 맞이하기							
실내 자유 선택 활동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영역						
대·소집단 활동							
실외놀이							
기본생활 및 안전교육							

■ 알려드립니다. ■

1. 안녕하세요. 슬기반 담임교사 윤***, 이**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안정되고 바람직한 발달을 돕는데 성심 성의껏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학기 준비기간 동안 가정학습에 협조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일일보고서 안내

등원 시 현관에 비치된 일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어 아이들의 하루일과가 보다 교육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가 시에는 기재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약안내

약을 먹이는 어린이의 경우 일일보고서 작성 시 투약 의뢰란에 **투약시간과 분량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의뢰서를 기초로 어린이에게 투약하게 됨으로 투약내용을 **기록하지 않으실 경우 투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투약의뢰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 - ○○○○~○

문서7. 알림장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알림장」을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2-8. 소 1-10. 장 2-9.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 의사소통 방법 - 종류 :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스마트 알림장 등)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의사소통
대 5-9. 소 4-9. 장 5-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 투약의뢰서 - 투약의뢰서 시행 여부 - 필수기재사항 :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및 시간, 의뢰자

● 작성 Tip

1. '투약의뢰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고, 본 양식에서와 같이 '알림장'에 통합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 참고사항 : '알림장' 양식은 예시자료로써, '가정에서'와 '어린이집에서'가 반드시 포함되어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알 림 장(예시)

20 년 월 일 요일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원아 상태	기분	좋음 보통 나쁨 (이유 :)	원아 상태	기분	좋음 보통 나쁨 (이유 :)
	건강	좋음 보통 나쁨 (이유 :)		건강	좋음 보통 나쁨 (이유 :)
	체온	열이 있음 많음 정상		체온	열이 있음 많음 정상
식사	저녁		식사	간식	
	간식			점심	
	아침			간식	
배변	저녁	안했음 했음 (딱딱함 보통 설사)	배변	오전	안했음 했음 (딱딱함 보통 설사)
	아침	안했음 했음 (딱딱함 보통 설사)		오후	안했음 했음 (딱딱함 보통 설사)
수면		시 분부터 시 분 까지	수면		시 분부터 시 분 까지 시 분부터 시 분 까지
투약*	약의 종류		투약*	증상	
	약의 용량			약의 용량	
	투약 시간/횟수			투약 시간	
	의뢰자				
전달 내용			전달 내용		

* 가정에서 투약용 약을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한다.
* 각 내용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내용으로 기록한다.

문서8. 보육계획안(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서식)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보육계획안」을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3-1. 소 2-1.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 보육계획안 - 종류 : 연간, 월간(또는 주간) - 주제의 연계성, 구체성, 발달 수준의 적절성 등 고려

● 작성 Tip

1. 연간 보육계획안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2. 연간 보육계획안의 연간 주제와 소주제는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흥미에 기초하며, 표준보육과정의 전 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보육계획안'은 반드시 가정에 안내하도록 한다.

✱ 참고사항

① 연간 보육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과 목표, 흥미, 계절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②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전체적인 보육일과(시간적 구분) 및 보육실의 물리적 공간 구분(실내외, 실내 흥미영역)에 따라 실시 가능한 구체적 활동으로 계획하여 제시한다. 이때 영유아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일상적 양육에 대한 내용이나 휴식시간, 정리 정돈, 등하원지도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③ 연간 보육계획안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서로 연계성 있게 수립하되, 전년도에 실시된 각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수행에 대한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혼합연령반의 보육계획안 수립 시, 서로 다른 연령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활동은 수준별로 계획한다.

연간 보육계획안

월	주 제	소 주 제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월간보육계획안-영아반

실시기간 : _____월

주 제					
소주제					
목 표					
등원 및 맞이하기					
일상생활	식사 및 간식				
	낮잠 및 휴식				
	대·소변가리기				
자유놀이활동	신체·움직임				
	감각·탐색				
	창의적 표현				
	역할·쌓기				
	언 어				
실외활동 및 산책					
기본생활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월간보육계획안-유아반

실시기간 : _____월

주 제					
소주제					
목 표					
자유선택활동	쌓기				
	역할				
	미술				
	언어				
	수·조작				
	과학				
	음률				
대·소집단활동					
실외활동					
기본생활					

주간보육계획안-영아반

주 제 : 소 주 제 :

목 표 : 실시 기간 : 월 주(/ ~ /)

활동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등원 및 맞이하기							
대·소변가리기							
자유놀이활동	신체·움직임						
	감각·탐색						
	창의적 표현						
	역할·쌓기						
	언 어						
실외활동 및 산책							
식사 및 간식							
낮잠 및 휴식							
기본생활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주간보육계획안-유아반

주 제 : 소 주 제 :

목 표 : 실시 기간 : 월 주(/ ~ /)

활동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등원 및 맞이하기							
오전실내자유선택활동	쌓기						
	역할						
	미술						
	언어						
	수·조작						
	과학						
	음률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대·소집단활동							
실외활동							
점심 및 낮잠							
오후 자유선택활동							
기본생활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문서9. 보육일지(서식(안))

보육일지의 개념 및 보육일지 작성 방법

1. 보육일지란?

보육일지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보육계획안에 기초하여 하루일과를 시간대별로 정하여 진행한 활동을 기록한 것

2. 보육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일과의 순서에 따라 등원, 오전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화장실 다녀오기, 대·소집단활동, 실외활동, 점심과 낮잠, 오후자유선택활동,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등

3. 보육일지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점

①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등원시간부터 귀가시간까지 하루 동안 이루어진 활동 사항을 기록

② 각 활동이 진행된 시간을 함께 기록

③ 하루 일과동안 실시된 활동내용을 객관적으로 요약하여 기록하고, 이에 대한 하루 평가나 각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술

④ 사회관계 증진 활동, 지역사회연계활동, 일상생활 관련 활동, 안전교육, 특별활동 등은 일과 중 실행한 시간에 기록

⑤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발달수준에 적합한 일상적 양육과 보육활동을 균형있게 실행하여 기록

⑥ 등하원 시 학부모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거나, 기본생활습관,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영유아 관찰 사항, 전체 어린이집 행사 등과 관련하여 기타 일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원 상황에 맞게 기록 가능

⑦ 보육일지를 통해 하루 동안 이루어진 활동 및 보육교사의 역할 등이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구성

⑧ 보육일지의 양식(형태)는 각 원의 상황에 맞게 작성 가능

4. 보육일지의 평가

① 일일보육계획안에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과에 대한 평가나 각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을 시 보육일지로 인정

② 평가는 일과 후 작성하되 실제 진행된 활동과 추가로 진행된 활동, 진행되지 못한 활동, 영유아의 참여 정도와 흥미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다음의 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반영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보육일지」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3-2. 소 2-2.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보육활동의 균형과 진행 • 하루 일과 중 개별활동과 대·소집단활동, 동적활동과 정적활동, 일상적 양육활동과 놀이활동, 교사 주도 활동과 영유아주도 활동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
대3-3. 소 2-3.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자유선택활동 : 매일 2시간 30분 이상 • 하루 동안 이루어진 자유선택활동 시간 기록을 합산하여 평가 • 영유아 현원의 70% 이상 등원하였을 때부터 남아있는 종일반 영유아의 자유선택활동시간까지 인정 • 다양한 흥미영역의 활동 진행 여부 평가
대 3-4. 소 2-3.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실외활동 : 매일(유아 : 1시간 이상 / 영아 : 30분 이상) • 하루 동안 이루어진 실외활동 시간 기록을 합산하여 평가 • 다양한 활동 운영 여부 평가
대 3-5. 소 2-4.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특별활동 :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진행, 24개월 이상 영유아 대상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시간 및 활동 대상 연령,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여부 평가 • 보육일지 외 부모 동의서 유무 평가
대 3-6. 소 2-3.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상생활 관련 : 월 2회 이상(영아는 월 1회)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횟수 평가
대 3-7.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활동 관찰	보육과정 평가 : 월 1회 이상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횟수 및 개선 내용 반영 여부 평가
대 3-8. 소 2-5. 장 3-8. 신체활동	신체 : 매일(대근육, 소근육 각각)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횟수 평가
대 3-9. 소 2-6. 장 3-9. 언어활동	언어 : 매일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횟수 평가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에 대한 활동의 치우침 평가
대 3-11. 장 3-11. 사회관계 증진 활동	사회관계 증진 : 주 2회 이상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횟수 평가
대 3-12. 소 2-9. 장 3-12. 자연탐구활동	자연탐구 : 주 3회 이상(유아 : 수·과학 각각 / 영아 : 탐색)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횟수 평가 • 활동 자료(실물자료, 학습지 등)의 활용 평가

평가인증 항목별 필수 내용

지표	필수 내용
대 3-13. 소 2-10. 장 3-13. 예술활동	예술 : 주 3회 이상(음악 및 동작, 미술 각각)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횟수 평가 • 활동 방법(창의적 활동, 교사 지시적 활동 등) 평가
대 3-14. 소 2-11.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역할 및 쌓기 : 주 3회 이상 (만 0~1세 : 역할 및 쌓기 / 만 2세 이상 : 역할, 쌓기 각각)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활동 횟수 평가 • 활동 공간 및 시간 평가
대 4-2. 소 3-2.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낮잠 : 낮잠 실시 여부, 만 4세 이하 대상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낮잠 실행 여부 평가
대 2-2. 소 1-5.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적응절차 실시 : 1주일 이상 실시(토, 일 포함)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적응절차 실시 기간 기록 평가
대 6-10. 소 5-10. 장 5-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안전교육 : 세 가지 이상 다양한 교육 실시 - 소방훈련 : 월 1회 이상 실시 • 보육일지 기록을 통하여 실시 횟수 평가

● 작성 Tip

1. 현장관찰 시에는 필수내용에 기재된 실시기록을 확인하며 일지의 분량, 사진 포함 여부 등은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과다하게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2. 일별 보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계획안 옆에 실시기록을 간단히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보육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 참고사항

① 각 반의 계획된 하루일과에 따라 실제 진행한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명과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며, ( )에는 활동시간을 기록한다.

② 사회관계 증진 활동, 지역사회연계활동, 일상생활 관련 활동, 안전교육, 특별활동 등은 일과 중 실행한 시간에 기록한다.

③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발달수준에 적합한 일상적 양육과 보육활동을 균형있게 실행하여 기록한다.

_____반 보육일지 (만 세)

주 제 :
소주제 :
목 표 :

현원	출석	결석

년 월 일( ) 날씨:

결재	담임	원장

일 과 (실시시간)	활 동 내 용	
등원 (: - :)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3-2. 소2-2. 장3-2.	- 보육활동의 균형과 진행
오전간식 (: - :)		
오전자유선택활동 (: - :)	해당 지표	필수 내용
오전실외활동 (: - :)	대3-3. 소2-3. 장3-3. 대3-6. 소2-3. 대3-8. 소2-5. 장3-8. 대3-9. 소2-6. 장3-9. 대3-11. 장3-11. 대3-12. 소2-9. 장3-12. 대3-13. 소2-10. 장3-13. 대3-14. 소2-11. 장3-14.	- 자유선택시간 : 매일 2시간 30분 이상 - 일상생활 관련 : 월 2회 이상(영아는 월 1회) - 신체 : 매일 - 언어 : 매일 - 사회관계 증진 : 주 2회 이상 - 자연탐구 : 주 3회 이상 - 예술 : 주 3회 이상 - 역할 및 쌓기 : 주 3회 이상
전이 및 대소집단활동 (: - :)		
점심 (: - :)		
낮잠 및 휴식 (: - :)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4-2. 소3-2. 장4-2.	- 낮잠 : 낮잠 실시 여부, 만 4세 이하 종일반 영유아 대상
오후간식 (: - :)		
오후자유선택활동 (: - :)		
특별활동 (: - :)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3-5. 소2-4. 장3-5.	- 특별활동 :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진행, 24개월 이상 영유아 대상
오후실외활동 (: - :)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3-4. 소2-3. 장3-4.	- 실외 : 매일(유아 : 1시간 이상 / 영아 : 30분 이상)
통합보육/귀가 (: - :)		
평 가 (일일평가)	해당 지표	필수 내용
	대3-7. 장3-7.	- 보육과정 평가 : 월 1회 이상

※ 보육일지에 추가 기재 가능 사항

<table>
<tr><td>신입원아
적응절차실시/
원아관찰</td><td><table><tr><th>해당 지표</th><th>필수 내용</th></tr><tr><td>대 2-2. 소 1-5.
장 2-2.</td><td>적응절차 실시 : 1주일 이상 실시(토, 일 포함), 평가월의 3개월전부터 입소한 원아 대상</td></tr></table></td></tr>
<tr><td>안전교육/
소방훈련</td><td><table><tr><th>해당 지표</th><th>필수 내용</th></tr><tr><td>대 6-10. 소 5-10.
장 6-10.</td><td>안전교육 : 평가월의 3개월 전부터 기간 내 세 가지 이상,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대상
소방훈련 : 월 1회 이상 실시, 영유아 대상</td></tr></table></td></tr>
<tr><td>영유와
관찰 기록</td><td><table><tr><th>해당 지표</th><th>필수 내용</th></tr><tr><td>대 3-7. 장 3-7.</td><td>영유아 활동 관찰 : 월 1회 이상</td></tr></table></td></tr>
<tr><td>기타 원 상황에
맞게 추가 작성
가능</td><td></td></tr>
</table>

(작성 예시)

_____반 보육일지 (만 3세)

주　제 : 나와 가족

소주제 :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목　표 : 나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현원	출석	결석

년　월　일(　)　날씨 :

결재	담임	원장

일　과 (실시시간)	활동 계획 및 실행
등원 (　:　-　:　)	• 등원하는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한다. • 스스로 옷과 신발 등을 정리한다. • 투약의뢰서 및 가정 전달사항의 유무를 확인한다.
오전간식 (　:　-　:　)	• 간식 먹기 전 차례대로 손을 씻는다. • 맛있게 간식을 먹은 후, 접시와 컵을 정리한다.
오전자유선택활동 (　:　-　:　)	• 개별 적 혹은 소집단으로 원하는 영역에서 놀잇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한다. • 놀이 후 스스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 언어 : 엄마, 아빠 이름 알아보기 (O) - 나를 사랑해주시는 엄마, 아빠의 이름을 알아보고 불러본다. - 엄마, 아빠 이름을 따라 쓴다. ◇ 수·조작 영역 : 가족의 수를 세어보기 / 가족 퍼즐 맞추기 (O) - 가족사진 속에 있는 가족 구성원 수를 세어본다. - 가족사진으로 만든 16조각 퍼즐을 맞춘다. ◇ 과학 : 씨앗 관찰하기 (X) → 나무 열매 관찰하기 (도토리, 솔방울을 관찰하고 비교한다.) -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관찰하고 비교한다. ◇ 음악 및 동작 : 사과 같은 내 얼굴 (O) - '사과 같은 내 얼굴'을 부르며 악기연주를 한다. - 노랫말에 맞추어 율동을 만든다. ◇ 미술 : 가족 얼굴 꾸미기 (O) - 수수깡, 색종이, 모루, 눈알 등을 종이접시에 붙여 가족 얼굴을 만든다. ◇ 역할 :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기 (O) - 장난감 전화기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는 놀이를 한다. ◇ 쌓기 : 우리 집 짓기 (O) - 벽돌블록, 와플블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 크기의 집을 구성한다.

일 과 (실시시간)	활동 계획 및 실행
오전실외활동 (: - :)	◇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기 (O) - 엄마, 아빠 얼굴이 붙어있는 목표물까지 달려간다. ◇ 모래성 쌓기 (O) - 모래와 물, 모종삽, 컵을 이용하여 모래성을 쌓는다. ◇ 자전거 타기 (O) - 친구들과 함께 순서대로 자전거를 탄다. ◇ 배추 크기 재어보기 (O) - 우리가 심은 배추가 얼마큼 자랐는지 줄자로 길이와 둘레를 잰다.
전이 및 대소집단활동 (: - :)	◇「꽃밭에서」손유희하기 (O) - 모든 유아들이 쌓기영역에 모일때까지 「꽃밭에서」손유희를 함께 한다. ◇ 우리 가족 소개하기 (O) - 가족사진을 보며 우리 가족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점심 (: - :)	• 점심 먹기 전 차례대로 손을 씻는다. • 맛있게 점심을 먹은 후, 양치질을 한다.
낮잠 및 휴식 (: - :)	• 화장실을 다녀온다. • '자장가'를 들으며 낮잠을 잔다. • 개인이불을 스스로 정리한다. • 낮잠을 자지 않은 영아는 교실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오후간식 (: - :)	• 간식 먹기 전 차례대로 손을 씻는다. • 맛있게 간식을 먹은 후, 접시와 컵을 정리한다.
오후자유선택활동 (: - :)	• 개별적 혹은 소집단으로 원하는 영역에서 놀잇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한다. • 놀이 후 스스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특별활동 (: - :)	• 튼튼체육교실 : 칼라 유니바 뛰어 넘기 (O) - 두발 모아 뛰어 넘기, 한 발로 뛰어 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균형을 잡으며 뛰어 넘는다. - 유니바를 높이를 다양하게 하여 뛰어 넘는다.
오후실외활동 (: - :)	◇ 우리 집에 친구 초대하기 - 모래 영역에 우리 집을 구성하여 소꿉놀이를 한다. -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여 함께 놀이한다. ◇ 자전거 타기 - 친구들과 함께 순서대로 자전거를 탄다. ◇ 배추 크기 재어보기 - 우리가 심은 배추가 얼마큼 자랐는지 줄자로 길이와 둘레를 잰다. → (X) 실내놀이(볼풀공 놀이, 훌라후프 돌리기)

일 과 (실시시간)	활동 계획 및 실행
통합보육/귀가 (: - :)	• 각 흥미영역에서 개별적 혹은 소집단으로 원하는 놀이를 한다. • 부모님이 오시면 아이의 일과를 부모님께 전한 후 교사, 친구들과 인사하며 귀가한다.
평 가 (일일평가)	- 아이들은 오전실외활동 중 '가족사진이 붙어있는 목표물까지 달려가는 활동'에 많은 흥미를 보였으나, 아이들이 한꺼번에 목표물로 달려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음에는 규칙을 세워 게임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 - 아이들이 가져온 가족사진을 이용하여 '우리가족 소개하기'활동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터로 가족사진을 확대하여 제시함으로써 더욱 많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 과학영역에서 '씨앗 관찰'을 계획하였으나, 아이들은 OO이가 집에서 가져온 도토리와 솔방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관찰대상을 변경하였다. 아이들은 도토리와 솔방울의 생김새를 비교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 꽃샘추위로 오후 기온이 많이 낮아 오후 실외활동은 실내 유희실에서 '볼풀공 놀이', '훌라후프 돌리기'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 (O)는 실행한 활동이며, (X)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된 활동임

※보육일지에 추가 기재 가능 사항

신입원아 적응절차실시/ 원아관찰	
안전교육/ 소방훈련	
영유아 관찰 기록	
기타 원 상황에 맞게 추가 작성 가능	

문서10. 000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보건복지부서식)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000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3-5. 소 2-4.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 000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 - 필수기재사항 : 프로그램명, 영유아 이름, 부모 성명(부모 서명)

● 작성 Tip

1. 이 문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서식이므로 그대로 활용한다.
2. 특별활동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 24개월 이상 영유아
   ② 시간 : 오후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③ 방법 : 부모 동의
   ④ 미참여 영유아 :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3.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000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 양식을 사용한다.

000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

000어린이집에서 20　년도 특별활동 실시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해당란에 참여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과목	실시요일	시간대	비용	신청 여부
(작성예시)	화, 목	15:30~15:55 화, 목이 서로 다른 시간대일 경우 각각 기재	월 5만원	신청
피아노		14:30~14:54	월 4만원	미신청

아동 이름		생년월일	
부모 성명	(서명)		
일　　시			

문서11.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서식(안))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5-9. 소 4-9. 장 5-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 응급처치동의서 - 필수기재사항 : 보호자의 비상연락망, 의료기관
대 6-7. 소 5-7. 장 6-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 귀가동의서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

● 작성 Tip

1. 위의 평가인증지표와 관련된 문서들은 '응급처치동의서'와 '귀가동의서'로 각각 작성할 수 있으나, 본 양식에서와 같이 통합적으로 작성하여 부모의 확인을 받아 관리할 수도 있다.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

■ 원아기본정보

성 명	(남 ,여)	반 이 름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연락처

성 명	관 계	연락처(1)	연락처(2)	비고

■ 응급처치 절차

1. 응급상황 발생시 위의 보호자께 연락해 주십시오.
2. 영유아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험 종류 _____
   번호 _____
3. 필요한 경우 119구조대에 연락하며 (어린이집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가 정한 의료기관) _____으로 응급 수송해 주십시오.

■ 귀가 동의

위 원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더라도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 등하원방법 : □ 통학버스 □ 보호자 동행
- 귀가요청시간 : 시 분

귀 어린이집에서 위의 절차에 따라 귀가 및 응급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서명)

000어린이집 원장 귀하

문서12. 건강검진 서류(병원 발급)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건강검진서류」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5-10. 소 4-10. 장 5-11.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서류 - 대상 :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임용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도 포함) - 시기 : 연 1회(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 구비) ※ 신규입소 원아의 경우에도 반드시 건강검진 확인 서류 필요 (건강검진 예정 서류는 포함되지 않음)

● 작성 Tip

1. 건강검진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한 그대로 비치(별도 서식 없음) 한다.
2.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와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한다.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정기검진 시 누락된 신규 입소 원아도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가 검진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는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영유아검진기관 전문의 확인필)를 비치하도록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해당 월령별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참고)을 안내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준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참고사항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4])

• 검사항목
: ①문진과 진찰 ②신체계측 ③발달평가 및 상담 ④건강교육 ⑤구강검진

• 검진주기: 총 7차에 걸쳐 검진
①생후 4~6개월 ②생후 9~12개월 ③생후 18~24개월 ④생후 30~36개월 ⑤생후 42~48개월
⑥생후 54~60개월 ⑦생후 66~71개월
★ 구강검진의 경우, 3차, 5차, 6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됨
(3차는 18~29개월, 5차는 42~53개월, 6차는 54~65개월까지 검진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2012.1.1. 시행. 다만, 7차 영유아건강검진은 2012.4.1.부터 시행하되, 2012.1.1.~2012.3.31.에 해당하는 월령은 소급적용할 수 있음)

※ 시설의 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협조(검진비 : 무료)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정밀진단비 제공(주소지 관할보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 1577-1000)으로 문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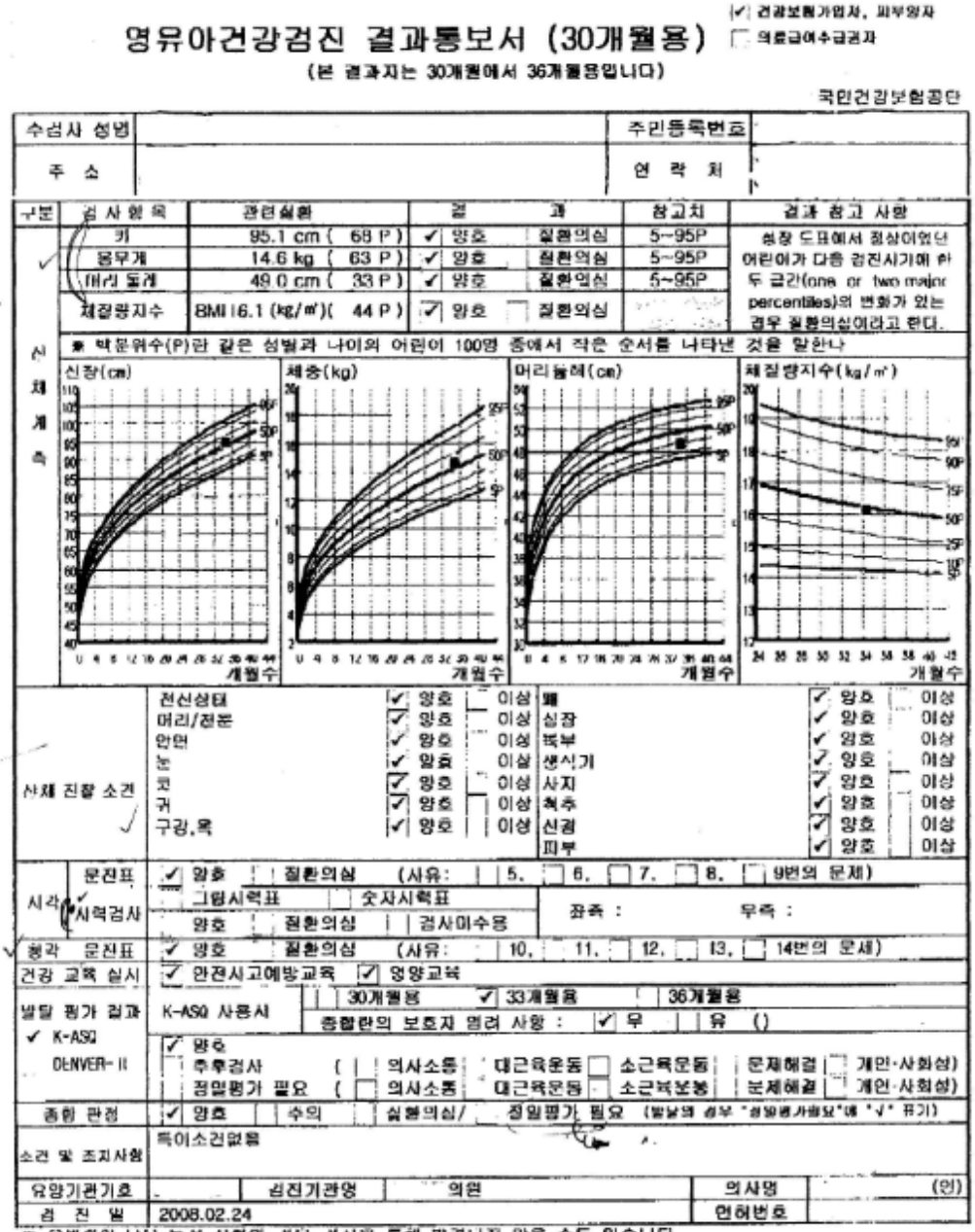

✓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30개월용)

(본 결과지는 30개월에서 36개월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구분	검사항목	관련실환	결과		참고치	결과 참고 사항
신체계측	키	95.1 cm (68 P)	✓ 양호	질환의심	5~95P	성장 도표에서 정상이었던 어린이가 다음 검진시기에 한 두 간격(one or two major percentiles)의 변화가 있는 경우 질환의심이라고 한다.
	몸무게	14.6 kg (63 P)	✓ 양호	질환의심	5~95P	
	머리 둘레	49.0 cm (33 P)	✓ 양호	질환의심	5~95P	
	체질량지수	BMI 16.1 (kg/m²)(44 P)	✓ 양호	질환의심		

※ 백분위수(P)란 같은 성별과 나이의 어린이 100명 중에서 작은 순서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신장(cm) / 체중(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m²) — 개월수

신체 진찰 소견						
전신상태	✓ 양호	이상	폐	✓ 양호	이상
머리/전문	✓ 양호	이상	심장	✓ 양호	이상
안면	✓ 양호	이상	복부	✓ 양호	이상
눈	✓ 양호	이상	생식기	✓ 양호	이상
코	✓ 양호	이상	사지	✓ 양호	이상
귀	✓ 양호	이상	척추	✓ 양호	이상
구강,목	✓ 양호	이상	신경	✓ 양호	이상
			피부	✓ 양호	이상

시각			
문진표	✓ 양호	질환의심 (사유: 5, 6, 7, 8, 9번의 문제)	
시력검사	그림시력표 / 숫자시력표	좌측 :	우측 :
	양호	질환의심	검사미수용
청각 문진표	✓ 양호	질환의심 (사유: 10, 11, 12, 13, 14번의 문제)	
건강 교육 실시	✓ 안전사고예방교육	✓ 영양교육	

발달 평가 결과							
✓ K-ASQ	K-ASQ 사용시	30개월용	✓ 33개월용	36개월용			
DENVER-II		종합란의 보호자 염려 사항 :	✓ 무	유 ()			
	✓ 양호						
	추후검사 (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정밀평가 필요 (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종합 판정	✓ 양호	주의	질환의심/ 정밀평가 필요 (발달의 경우 "정밀평가필요"에 "✓" 표기)
소견 및 조치사항	특이소견없음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의원	의사명	(인)
검 진 일	2008.02.24			면허번호	

※ 유명희이 낮은 확률 질환의 경우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검진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현재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판정 결과가 질환의심인 경우는 주치의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도 발급하여 간단계 요양급여(종합전문요양기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은 영유아건강검진기록지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보관용)

문서13. 식단표(서식(안))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식단표」를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5-11. 소 4-11. 장 5-12. 영유아를 위한 급식	• 식단표 - 필수기재사항 : 오전·오후간식, 점심식사 -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 표시
대 5-12. 소 4-12. 장 5-13. 영유아를 위한 간식	

● 작성 Tip

1.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획과 동일하게 급식,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획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식단표의 '변동 사항란'에 기록한다.
3. 급간식의 실행기록과 관련하여 각 원에서 별도의 양식(예 : 운영일지, 급식일지 등)을 기록하고 있을 경우, 본 양식의 '변동 사항란'에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도 급간식의 계획 및 실제 제공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급간식 식단표'는 반드시 가정에 안내하도록 한다.

20　년　월 식단표(예시)

결재	담　당	원　장

첫째주	일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간식	과일샐러드 우유	배 단호박죽	찐고구마 우유	오곡후레이크 우유	찐감자 우유	찐옥수수 식혜
	점심	잡곡밥 된장국 해물동그랑 땡구이 오이생채 김치	쌀밥 순두부국 쇠고기떡조림 (사태) 브로컬리무침 깍두기	자장밥 계란파국 군만두 수박 김치	차조밥 갈비탕 (갈비) 두부구이/ 양념장 시금치나물 김치	쌀밥 무채국 돈살돈까스 /소스무침 김치	해물굴소스 볶음밥 국 김치
	오후간식	꿀떡 우유	잡채 알로에쥬스	된장수제비	감자 버터구이 우유	과일샐러드	
	변동 사항						
둘째주	일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변동 사항						
셋째주	일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변동 사항						
넷째주	일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변동 사항						
기타 사항							

○○ 어린이집

문서14. 차량안전수칙(문서(안))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차량안전수칙」을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6-8. 소 5-8. 장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차량안전수칙 작성·비치 여부 - 안전수칙의 내용 : 탑승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 작성 Tip

1.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안전수칙'을 차량 내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2. 이 양식에 기재된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추가된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아래 '차량안전수칙'은 예시자료로써, 차량 내에 구비된 차량안전설비를 점검하고, 탑승 시 지켜야 할 수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예시)

차량안전수칙

▸ 운전자 준수사항

운행전

-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한다.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지 확인한다.

운행중

-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영유아는 주의시킨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운행후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가 확인한다.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확인한다.

▸ 교사 준수사항

- 차량에는 영유아를 보호 할 수 있는 교사가 탑승한다.
-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시키고 영유아와 교사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차량에는 탑승하는 영아의 수만큼 영아용 보호장구를 갖춘다.
- 차량내 구급상자의 모든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차량내에 비상소화기의 충전상태를 확인한다.
- 차를 출발 또는 후진시키기 전에 영유아가 어디 있는지 살핀다.
- 운행 중에는 영유아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영유아는 항상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

▸ **영유아 준수사항**

- 차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 유리 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
- 차에서 내릴 때에는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 의자에 등을 대고 바른 자세로 앉아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 앞좌석을 발로 차지 않는다.
- 차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한다.
- 차가 달리고 있을 때에는 차 문을 열지 않는다.

문서15. 비상 시 대처방안(문서(안))

평가인증지표별 필수 내용

○ 「비상 시 대처방안」을 통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지표를 확인하며, 지표별로 '필수 내용'으로 표기된 사항에 따라 현장관찰 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부여

지표	필수 내용
대 6-9. 소 5-9.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 비상 시 대처방안 - 필수기재사항 : 대피요령, 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 작성 Tip

1. 본 예시자료 활용 시에는 대피요령, 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세부 내용은 본 예시자료를 참고로 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예시)

비상 시 대처방안

▶ **대피요령**

○ 침착하게 대처한다.

○ 총지휘자에게 보고한다.

○ 119 등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비상대피로를 확보한다.

○ 교직원은 비상 시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한다.

○ 원아를 신속하게 인솔해서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 남은 원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영유아들을 안정시킨다.

▶ **교직원의 역할분담표**

원 장
총괄

교 사 (　　)	교 사 (　　)	교 사 (　　)	교 사 (　　)	교 사 (　　)
비상벨 및 원내전달 전원차단 관계기관통보	비상문개방 대피로확보	초기진화 원아대피	원아대피 보호자연락	원아대피 응급조치

▶ **비상대피도(※어린이집의 건물 현황에 따라 대피도 작성하여 부착)**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014년 3월 인쇄
2014년 3월 발행

발 행 인 **보건복지부 장관**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代)

사전 승인 없이 지침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52000-000574-10

※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 5, 6층
전 화 • 1661-5666(代) 팩 스 • 02-6901-0195